연구보고서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이철원
박민숙
전봉걸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 이철원 · 박민숙 · 전봉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인 쇄 2019년 12월 24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롬(02-2273-7012)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752-9 94320
978-89-322-1072-8(세트)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 · 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 · 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 · 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manufacturing$)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 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EUboarder$)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차 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2. 선행연구 ····· 22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 25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 29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 30
   가. 지역별 FDI 유입 현황 ····· 32
   나. 주요 국가별 FDI 유입 유형 분석 ····· 44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 58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 58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여건 분석 ··· 61
   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 ····· 77
3. 소결 ····· 85
   가. 체제전환 선도 그룹으로부터의 경험 ····· 85
   나. 체제전환 후발 그룹으로부터의 시사점 ····· 89
   다. 체제전환국의 투자 유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95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 101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 102
   가. 분석자료 및 FDI 유입 결정변수 선정 ····· 102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 110
   가. 전 기간: 1995~2014년 ····· 110
   나. 체제전환 전반기: 1995~2005년 ····· 115
   다. 추가 분석 1: V4와 발트 3국 ····· 118
   라. 추가 분석 2: 비유럽 체제전환국 ····· 121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 124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 129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 130
   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대북 금융지원 확보 노력 ····· 131
   나.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 133
   다.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 134
   라.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 137
   마.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 138
   바. 무역개방도 확대 ····· 140
   사. 민간부문의 확대 ····· 142
   아. 제조업 육성 ····· 143
   자.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 145
   차.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 146
   카. Doing Business 평가요소의 환경 개선 ····· 148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 152
가.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 152
나.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 153
다. 북한이 FDI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남한의 경제특구 경험 전수 ····· 156

참고문헌 ····· 161

부록 ····· 171

Executive Summary ····· 174

표 차례

표 2-1. 지역별 체제전환국 목록 ····· 31
표 2-2.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 54
표 2-3. Doing Business의 주요 평가요소(World Bank) ····· 59
표 2-4. 체제전환국의 Ease of Doing Business 국가별 순위 및 점수 ·· 63
표 2-5.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창업 환경 평가 결과 ····· 64
표 2-6.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납세 환경 평가 결과 ····· 67
표 2-7.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전력수급 평가 결과 ····· 70
표 2-8.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건축 관련 인허가 평가 결과 ····· 72
표 2-9.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계약이행 환경 평가 결과 ····· 74
표 2-10.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재산권등록 환경 평가 결과 ····· 75
표 2-11.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도산처리 환경 평가 결과(2019년) ····· 76
표 2-12. 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경로별 평균 1인당 GDP ····· 88
표 3-1. EBRD의 지표 ····· 106
표 3-2. Economic Freedom Index의 세부항목 ····· 108
표 3-3.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14년 ····· 111
표 3-4.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05년 ····· 117
표 3-5. 비셰그라드 및 발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 120
표 3-6.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15년 ····· 123
표 4-1. 북한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비교 ····· 145

그림 차례

그림 2-1. EU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 33
그림 2-2. 비셰그라드 4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누적) ····· 33
그림 2-3. 비셰그라드 4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 35
그림 2-4. 발트 3국의 FDI 유입 현황(누적) ····· 35
그림 2-5. 발트 3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 37
그림 2-6. 비EU 국가들의 FDI 유입 현황(누적) ····· 38
그림 2-7. 유럽 인접 CIS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 39
그림 2-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 40
그림 2-9. 중앙아시아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 41
그림 2-10.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 42
그림 2-11.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누적) ····· 43
그림 2-12.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FDI 유입 현황(누적) ····· 43
그림 2-13. 폴란드의 FDI 유입 추이 ····· 45
그림 2-14. 에스토니아의 FDI 유입 추이 ····· 47
그림 2-15. 우크라이나의 FDI 유입 추이 ····· 48
그림 2-16.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 추이 ····· 50
그림 2-17. 베트남의 FDI 유입 추이 ····· 55
그림 2-18. 중국의 FDI 유입 추이 ····· 57
그림 2-19. 비셰그라드 4국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78
그림 2-20. 발트 3국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79
그림 2-21. 발칸 EU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80
그림 2-22. 발칸 비EU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82
그림 2-23. CIS 유럽 인접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83
그림 2-24. CIS 중앙아시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84
그림 2-25. 동아시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 85

그림 2-26. 최근 5년간 마케도니아의 비즈니스 환경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 91
그림 2-27. 최근 5년간 조지아의 비즈니스 환경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 92
그림 2-28. 마케도니아의 FDI 유입 현황(누적) ····· 93
그림 2-29. 마케도니아의 FDI 유입 현황(유량) ····· 94
그림 2-30. 조지아의 FDI 유입 현황(누적) ····· 94
그림 2-31. 조지아의 FDI 유입 현황(유량) ····· 95
그림 2-32.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도와 누적 기준 FDI 유입 실적의 관계 ·· 97
그림 4-1. 정부의 효과성과 정치적 안정성 ····· 149
그림 4-2. 북한의 경제자유도 ····· 150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김정일의 급사로 권력을 세습하게 된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주민을 향해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조선중앙방송 등 주요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경제정책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도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연설 이후에도 같은 해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한 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소위 '6.28 경제조치'를 발표했다. '6.28 경제조치'는 대내적으로는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경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력갱생정책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구 확대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바, 북한은 '6.28 경제조치'를 통해 시장 확대와 분권화를 확대 추진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 출범한 김정은 체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수입의 자율처분 및 자체 생산품의 시장판매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시장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하에서도 북한경제의 궁핍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 등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회동과 2018년과 2019년에 네 차례의 북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경제 성장을 위한 대외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경제난 지속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행

동양식 · 생활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의식구조 · 가치체계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주도 사회주의 생산양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 통일되었던 북한 체제에 시장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안정을 담보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후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임무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경제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이래 북한경제 발전에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 FD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3년 5월에는 이를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에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와 북한 전역에 12개의 경제개발구 등 총 13개의 경제개발구 및 특구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도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에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 설치했으며, 2015년에도 양강도 삼지연군의 무봉국제관광특구와 함경북도 경원군의 경원경제개발구 등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2019년 현재 27개의 경제개발구 및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단어는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금기시되는 단어였다. 그러나 향후 북한경제개발의 모델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관심있게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북·베트남 양자회담에서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으로부터 전수받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되었고, 이후 북미 간 핵 협상에 진척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베트남과 같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경제의 밝은 미래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 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 핵포기 대가에 대한 북미 상호 간의 이해가 대립되면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높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해야 하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외국자본인 FDI의 유치정책이다. 북한 당국은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으로 시장적 요소를 도입할 개연성이 높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 재원이 매우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FDI 유치는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저축과 투자 그리고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되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저개발국가의 경우 국내 저축뿐만 아니라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저축과 투자 외에도 지속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의 경우 성장을 위한 기술진보 등 모든 요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체제전환국 모두의 공통상황이며, 따라서 FDI 유치는 자본 이전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이전과 노동자의 교육, 해외시장 개척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형곤 외(2014)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에서도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이면서 체제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1)]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요인에 대한 연구 및 각 체제전환국에서 FDI 유입이 당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1) 정형곤 외(2014).

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체제전환국에 대한 관심은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점진적이나마 개혁 · 개방을 선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투자 유치는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처럼 하나의 민족이 분단된 상태에서 체제가 전환되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분단국인 같은 민족(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예상하건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할 경우 한국기업의 투자가 북한으로 가장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북한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대비해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비교하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 역시 상기 언급한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요인에 대한 연구 및 각 체제전환국에서 FDI 유입이 당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체제전환국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북한이 개혁 · 개방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과거 체제전환국의 정책 경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에게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체제전환국의 시장지향적 개혁 및 개방,[2] 그리고 당해 국가 및 인근 경제권의 시장성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들은 각 체제전환국의 시장잠재력, 비용요인, 정책 및 제도적 개혁수준 등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Castiglione *et al.*(2012)은 구소련 지역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 이후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체제전환국들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체제전환국의 경제 · 사회 · 제도적 특성이 FDI 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체제전환국의 지리적 특징, 인적 · 물리적 자본, 인프라, 정치 · 사회 · 경제적 안정성 등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3]

---

2) 체제전환국의 개혁과 체제전환 속도는 체제전환국별로 상이했다. Beck and Laeven(2005)은 체제전환국의 부존 천연자원 및 공산주의 체제의 기간 등 역사적 요인이 해당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속도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3) 체제전환국의 개혁은 체제전환의 진행단계에 따라 체제전환국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FDI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Mitrović and Ivančev(2010)는 1999~2009년의 기간 동안 27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제전환 초기에는 제도적 개혁이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지만, 체제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별로 개혁의 영향이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EU 가입도 체제전환국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Castiglione *et al.*(2012)과 유사한 결과는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Bevan and Estrin(2004)은 1990년대 동유럽 11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제도 개선과 안정성이 FDI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분석해냈다. 또한 Lansbury, Pain, and Smidkova(1996), Cartensen and Toubal(2004) 및 Botrić and Škuflić(2006) 등의 분석도 민간영역의 확대, 각국의 시장잠재력 및 비용요인 등이 체제전환국 FDI 유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Bevan, Estrin, and Meyer(2004), Globerman, Sapiro, and Tang(2004)[4] 및 Demekas *et al.*(2007) 등의 연구는 사적소유권 확대, 은행 및 금융시장 개혁, 노동정책, 과세정책, 인프라, 외환, 무역자유화, 법체계 개혁 등과 같은 제도적 정책적 요인과 거버넌스 등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Globerman, Sapiro, and Tang(2004)과 Janicki and Wunnava (2004) 등의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시장성, 개방수준, EU 가입 가능성 등도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했다.[5] 나아가 Tinin(2013)은 체제전환국의 경제 자유도, 국가적 취약성(state fragility), 정치적 권리, 시민권리의 자유도 등도 해당 국가로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체제전환국의 FDI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wang(2008)은 체제전환국의 제도적 개혁, 정치적 안정성 및 EU 가입이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황기식, 박선화(2009)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중국과 인도를 포함

있다. 이러한 개혁의 부정적 영향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FDI 유입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Globerman, Sapiro, and Tang(2004), "Govern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merging and transition European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8).

5) 체제전환국 F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종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 Riedl(2010)은 EU에 신규 가입한 8개 체제전환국의 1998~2004년 서비스부문 FDI 유입을 분석하면서 정치적 리스크 이외의 체제전환 요인들(인플레이션, 사유화 수준 등)은 서비스부문 FDI 유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시켜서 분석한 결과 제도적 요인이 FDI 유입에 긍정적 요인임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한희(2012)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체제전환국의 안정성과 민영화 진전이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신성희, 권일숙, 설원식(2015)은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이 체제전환국 FDI 유입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증명하였으며, 나른츠츠끄, 김세영(2017)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정치적 요인이 해당 국가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윤승환, 조정환(2018)이 비셰그라드 4국의 FDI 유입요인을 분석하여 제도와 규제의 질, 사유화, 시민의 참여 성향, 체제전환 수준 등이 FDI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요인에 의해 유입된 FDI는 당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체제전환국으로 유입되는 FDI는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적절한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ampos and Kinoshita(2002)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 FDI 유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6] 하지만 여러 연구들은 유입된 FDI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치국의 인적 자본, 인프라, 금융시장 및 은행 시스템의 확충, 시장성, 무역체제, 정치적/경제적 안정성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7]

---

6) Zhang(2001); Tian, Lin, and Lo(2004) 이상 중국; Vu(2008); Sajid Anwar and Lan Phi Nguyen(2010); Athukorala and Tien(2012) 이상 베트남.
7) 예를 들면 Athukorala and Tien(2012) 베트남; Oztuk(2007) 문헌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체제전환국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과 새로운 기여에 대해서 언급한다. 선행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과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1990년 이후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과 이미 1980년대부터 개혁과 개방을 시도했던 중국과 베트남의 FDI 유입 현황과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들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과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북한과 비교함으로써 FDI 유치에 성공한 국가들이 북한의 FDI 유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에 활용된다.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전환한 34개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FDI의 흐름을 분석했던 제2장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체제전환국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국가별로도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본 계량 분석에서는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FDI 유입의 총유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난 이후, 이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OECD에서는 일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 쌍방의 FDI 유입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중력방정식에 따른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연구에서는 FDI 유치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들 국가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이하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 구간별 분류 외에도 체제전환국들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체제전환국들이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WTO 가입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제4장에서는 북한이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서 분석된 FDI 유입 결정요인을 토대로 각 변수들이 북한의 외자 유치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북한의 외자 유치는 주로 경제특구 위주로 선행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외자 유치정책을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역시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으로 FDI가 활발히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역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한다.

본 연구는 북한을 대상으로 FDI 유입 결정요인을 근거로 투자 유치 제도와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보다 더 객관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투자 유치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럽에 위치한 성공적인 일부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일부 관심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은 극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럽 체제전환국들과 상이하다. 중국과 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베트남 등과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앙아시아 및 구소련 소속 체제전환국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남한과 일본과 인접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셰그라드 국가와 같은 중부유럽의 체제전환국과도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기존 체제전환국들 중 매우 낮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연구를 시도해서 북한 당국에 맞는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을 전제하고 개혁개방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을 앞서 언급한 유형별 분류를 통해 북한에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 역시 북한 당국의 경제개발과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보다 더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대북정책을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의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향후 대북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유럽 및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을 모두 포함하여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 분석을 비롯해서 투자 환경 등 다양한 지표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북한의 제도 개혁에 대한 시사

점 도출을 위한 체제전환국의 설명변수 누락이 다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관측치 손실이 많아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들의 초기 관측치 손실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은 동유럽 국가들과 분리해서 계량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8] 또한 일부 체제전환국가들을 제외하고는 FDI 유입 관련 업종별 구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산업별 분석 및 해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밝히고자 한다.[9]

8)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분석은 어느 정도 관측치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관측치 손실이 많았다.
9) 세계은행의 직접투자통계는 업종 구분이 없으며, OECD 직접투자통계는 업종 구분은 가능하지만 투자국별로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양 통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
   (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018년도 전 세계 FDI 규모는 2017년(1조 5,000억 달러)대비 13% 감소한 1조 3,000억 달러로 나타났다. UNCTAD의 투자보고서[10]에 따르면 2018년도 전 세계 FDI 감소는 M&A 투자(8,160억 달러, 18% 증가)와 그린필드 투자(9,810억 달러, 41% 증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상반기 시행된 미국 다국적 기업들(MNEs)의 해외 누적수익의 대규모 본국 송금과 2017년 말에 도입된 세제개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UNCTAD의 투자보고서는 2018년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FDI 유입 규모가 28%(340억 달러)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체제전환국 중 가장 큰 FDI 유치국인 러시아에 대한 투자 감소[11]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대한 FDI 유입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에 위치한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와 발트 국가 대부분은 EU 가입에 가입한 2004년을 전후로 FDI가 급증하였다. 동 기간 중 전 세계 FDI 총 유입량 가운데 CEE 국가들의 비중은 약 5%, CIS 국가들의 비중은 약 2~3%의 비중을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CEE는 약 8%, CIS는 약 7%나 차지했다.[12]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러시아로 FDI가 가장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특정 시기별 FDI 유입량 및 대상국가들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본 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지역별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 환경을

---

10) UNCTAD(2019a),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7).

11) 2018년 러시아의 FDI 유입규모는 130억 달러로 2017년 FDI 유입규모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러시아의 FDI 유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러시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본사 이전(re-domiciliation; 법인소재지 교체)을 들 수 있다. UNCTAD(2019a),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7), p. 4.

12) 이한희(2012), 국문초록.

분석할 예정이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전환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전환국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이행한 국가를 지칭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IMF의 체제전환국 목록과 World Bank의 목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제전환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목록에 나온 국가들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유럽 체제전환국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 체제전환국의 경우 FDI 유입에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EU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EU 체제전환국과 비EU 체제전환국으로 재분류하였다. 추가로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EU 체제전환국은 다시 CEE, 발트 3국으로 분류하여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2-1 참고).

표 2-1. 지역별 체제전환국 목록

지역			체제전환국
유럽	EU	CEE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비셰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비EU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유럽 인접 CIS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CIS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동아시아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자료: IMF(2000),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Revised in 200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1); World Bank(2002), "Transition: 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1) 중심으로 저자 분류.

먼저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FDI 유입 현황을 지역별 FDI 유입 현황과 주요 국가별 FDI 유입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FDI 유입 현

황 분석에서는 다시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FDI 유입규모와 증가 시기가 상이하며 EU 가입, WTO 가입 등 특정 사건이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인접 지역 내에서도 FDI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법」 제정 여부, 「외국인투자 정책」 시행 등 제도적 요인들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가. 지역별 FDI 유입 현황

1) EU

1992년 이후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FDI 누적유입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를 나타낸다. 이에 EU 권역에 속하고 체제전환에 있어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이었던 CEE와 발트 3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 체제전환국 중 CEE 국가들은 서유럽 EU 국가들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FDI 유입이 활발하였다. 하지만 CEE 국가들 간에도 경제개방 · 개혁의 수준과 경제제도 및 투자 환경에 따라 FDI 유입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중 비셰그라드 4국(The Visegrad Group, 이하 V4)[13]이라고 불리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FDI 유입규모가 다른 CEE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그림 2-1 참고).

한편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모두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완료한 국가들로 다른 CEE 국가들에 비해 개혁개방 수준이 앞서있다. 이와 같은 V4는

13) Visegrad Group은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중부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1991년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만나 외교 · 경제 · 안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창설되었다. 이후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2개 나라로 분리, 독립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비셰그라드 그룹의 회원국이 되었다. Visegrad Group, "About the Visegrad Grou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8).

그림 2-1. EU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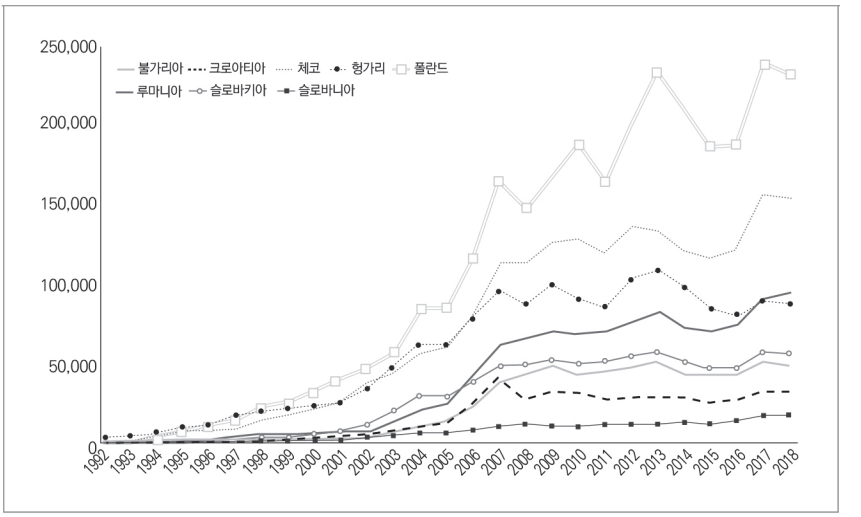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 비셰그라드 4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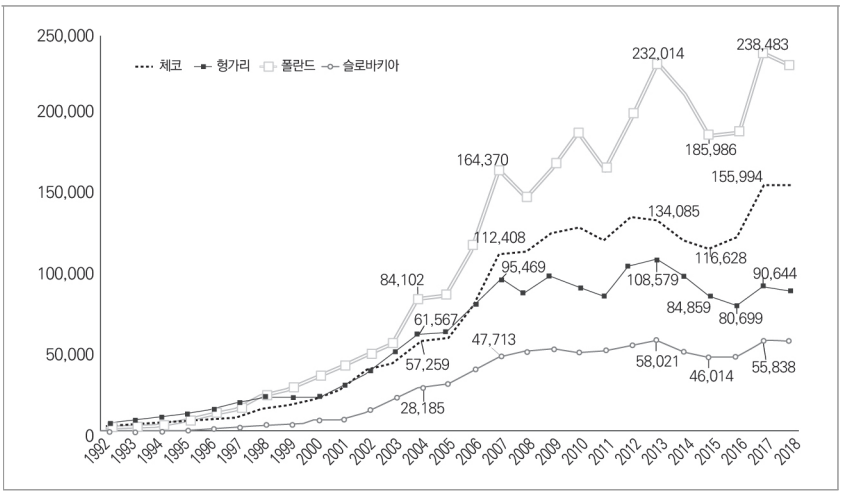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시장경제 도입 초기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그리고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4년도 EU 가입을 계기로 FDI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14] V4국가들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서유럽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 정부의 친(親)기업정책 등에 힘입어 FDI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럽의 신흥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폴란드는 EU 가입 원년인 2004년 FDI 증가율이 전년대비 204.9%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경우도 각각 99.6%, 136.6%, 35.4%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4 국가 중 최대 FDI 유입국인 폴란드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 대규모 내수시장 등의 요인으로 체코, 헝가리에 비해 월등이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15]

하지만 V4국가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세계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시행되면서 FDI 규모가 급감하였다(그림 2-3 참고). 특히 헝가리의 경우 2004년 EU 가입 후에도 러시아와 높은 경제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어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악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러시아가 2014년 헝가리의 원자로 건설에 1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16]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관련 계획이 지연되어 2017년도에 와서야 동 계획이 시행되면서 헝가리 FDI 유입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17]

---

14) 체코는 1995년, 헝가리와 폴란드는 1996년, 슬로바키아는 2000년에 각각 OECD에 가입했다. OECD 가입국의 EU 가입에 따른 FDI 유입 증가는 제3장 3.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의 내용을 참고.

15) 신상협(2007), p. 224.

16) 「EU의 헝가리-러시아 원전 건설 합의 저지 관련 보도」(2015. 3. 13), http://overseas.mofa.go.kr/hu-ko/brd/m_9731/view.do?seq=116220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6(검색일: 2019. 11. 17).

17)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p. 42, 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xmlmain4/DE8DE0F25B45E575492580C4005B8FC2/$file/33_%EB%9F%AC%EC%8B%9C%EC%95%84%EC%A4%91%EC%95%99%EC%95%84%EC%8B%9C%EC%95%84.pdf(검색일: 2019. 11. 17).

그림 2-3. 비셰그라드 4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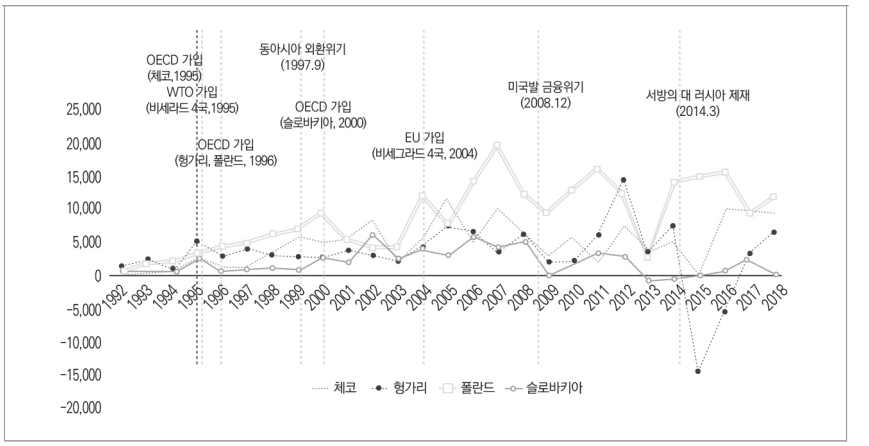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발트 3국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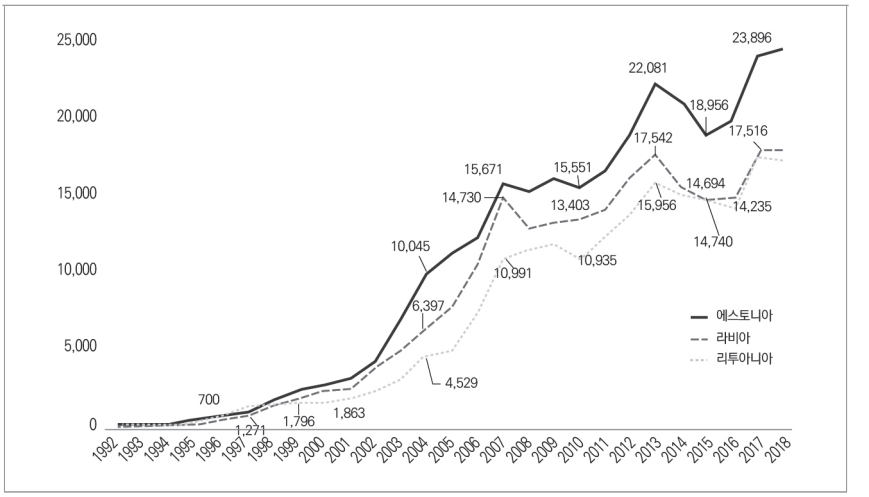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FDI가 유입되었다. 발트 3국은 1990년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 전환에 따른 혼란으로 1991~95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는 경제후퇴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6년도부터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유로지역 평균 2배 이상을 상회하였고 이로 인해 성공적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다.[18]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의 FDI 누적투자액이 가장 높지만,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역시 꾸준히 FDI가 증가하고 있다(그림 2-4 참고).

발트 3국은 200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에 대한 가입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2004년 3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2004년 5월 1일에는 EU에 가입하였다.[19] 발트 3국은 EU 가입을 전후로 FDI 유입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이미 2000년도에 EU 가입이 확정되면서 투자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였다. 에스토니아는 EU 가입을 계기로 FDI 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2003년 FDI 유입규모는 9억 2,800만 달러로 2002년 2억 8,873만 달러에 221.4% 급증했다. 2005년에도 2004년에 비해 192.5%(27억 9,917만 달러)나 증가하였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역시 2004년 FDI 유입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116.9%(6억 720만 달러), 322.5%(7억 6,220만 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참고).

---

18) 박광수, 이영기(2009), 「발트3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요인 분석」에 따르면 발트 3국의 1991~95년 기간 중 평균 경제성장률은 에스토니아가 -6.2%, 라트비아가 -11.8%, 리투아니아가 -10.0%를 기록했으나, 1996~2000년 기간 중 평균 경제성장률은 에스토니아가 5.6%, 라트비아가 5.4%, 리투아니아가 4.2%를 기록하면서 동 기간 유로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2.8%나 상회하였다.

19) NATO, "NATO Member Countries," 온라인 자료; European Union, "Countries," 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7).

그림 2-5. 발트 3국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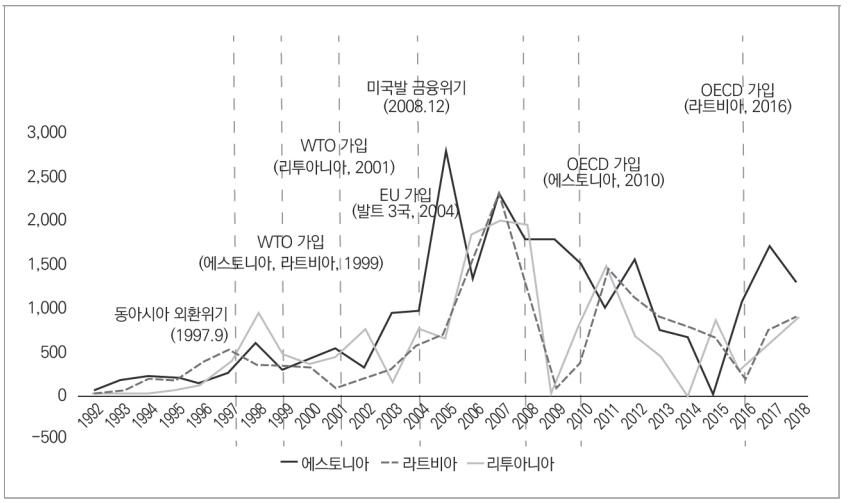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비EU

비EU 국가는 알바니아와 1991년 구(舊)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인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포함한다. 비EU 국가들의 FDI 유입규모는 인근 국가 중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세르비아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나 꾸준하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마케도니아의 경우 2000년 이후 FDI 유입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

마케도니아는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하였으나, 오랜 시간 그리스와 국명(國名) 문제로 분쟁을 지속해왔다.[21] 이런 이유로 그리스가 오랫동안 마

20)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멈춘 1999년 당시 세르비아는 GDP가 184억 936만 달러로 마케도니아 38억 6,374만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경제규모가 큰 국가였다. 통계수치는 CEIC 세르비아 GDP 통계 및 CEIC 마케도니아 GDP 통계(검색일: 2019. 11. 17)를 이용.

21) 마케도니아는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후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국명을 정했으나, 그리스와 27년 동안 국명(國名)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지속해왔다. 이는 그리스 내 북부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케도니아의 NATO 및 EU 가입을 반대하면서 마케도니아 경제발전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리스와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마케도니아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6. 비EU 국가들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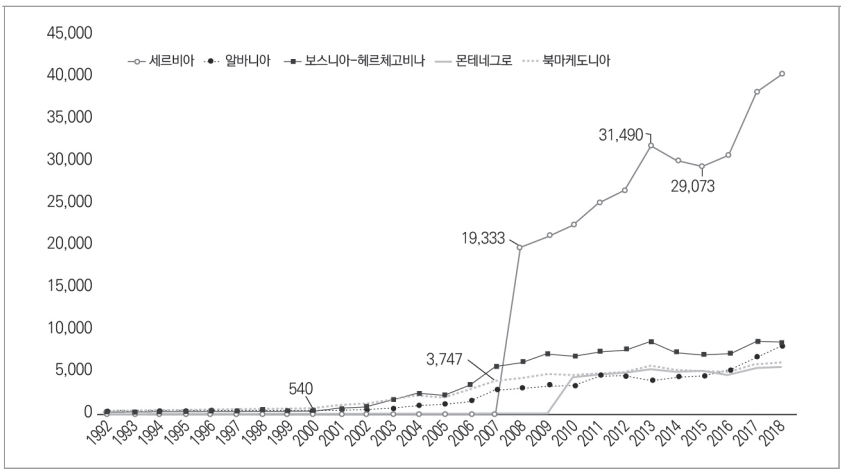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유럽 인접 CIS 국가

유럽 체제전환국 중 러시아에 인접한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가 주도했던 독립국가연합(CIS)에 소속되어 있어서 CEE 국가와 다른 선택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FDI유입은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시장과 자원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FDI 유입의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규모

통치하던 고대 그리스왕국의 이름을 딴 '마케도니아' 주(州)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자국의 오랜 역사와 자국의 마케도니아 주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국명 사용을 반대해왔다. 이에 2019년 2월 마케도니아의 국명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Republic of North Macedonia)'으로 변경되었다. 본문에서는 마케도니아와 북마케도니아 국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 동일한 나라(북마케도니아)를 칭한다.

가 작은 국가들로서 절대적인 FDI 규모는 미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FDI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주목할 국가는 조지아로 2000년대 이후 FDI 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꾀했으나,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도 전에 민족분쟁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이 저하되었었다. 또한 동 시기 러시아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조지아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2003년 11월 장미혁명(Revolution of Roses)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하는 동시에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혁을 시행하면서 이후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2-7. 유럽 인접 CIS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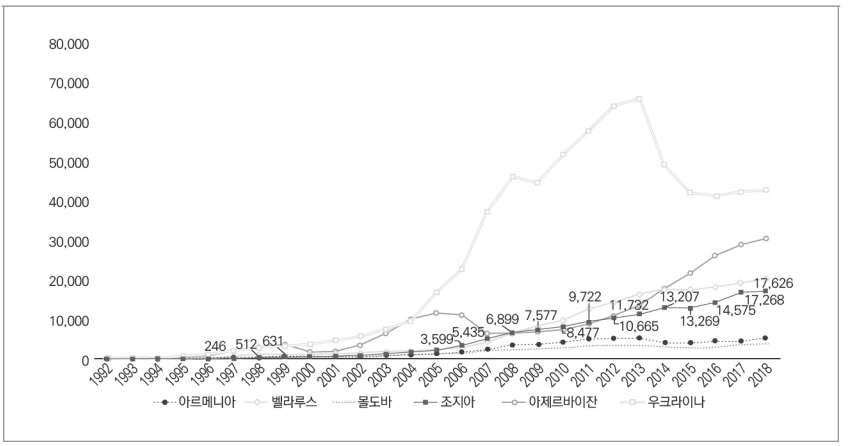

주: 지역 내 주요국의 유입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FDI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러시아 제외.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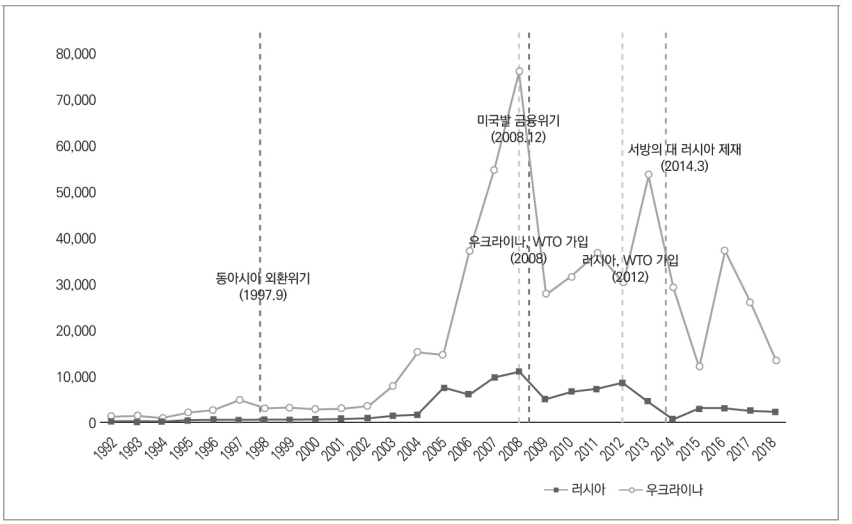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둔화에 따라 급감하였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FDI 유치 활성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Investment in Russia)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2년 WTO 가입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4년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22]가 시행되면서 이후 다시 대러 FDI 투자가 급감하였다(그림 2-8 참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인접 CIS 국가 중 현저하게 높은 FDI 유입세를 보이면서 견조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우크라이나 사태

22) EU의 경우 러시아에 대해 EU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제한(금융제재), 무기금수 조치, 에너지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출통제 등의 경제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보다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례로 미국은 2014년 7월 29일 VTB, Bank of Moscow, 농업은행 및 러시아국영조선사(USC)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pp. 3~4를 참고하여 정리.

를 계기로 FDI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경제침체와 함께 FDI 감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 CIS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경우 지역 내 FDI 유입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중동 및 유럽과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FDI 유입 증가세가 큰 편이다.

그림 2-9. 중앙아시아 국가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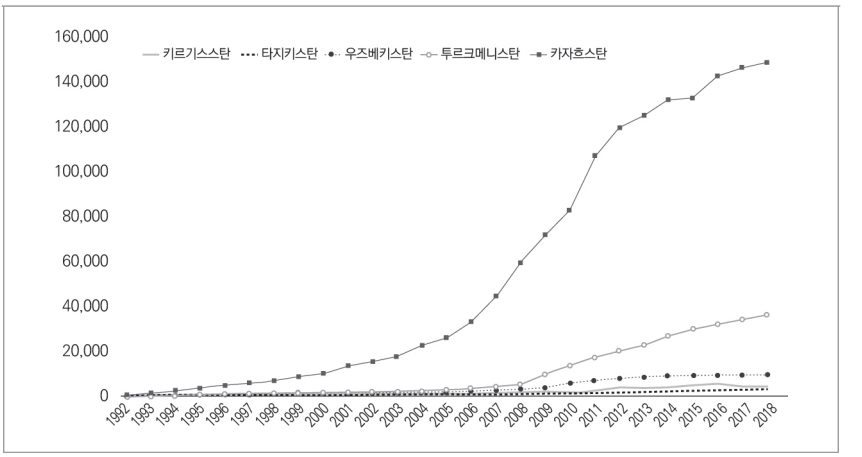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최근 체제전환국 중 외국인투자 3위 유치국인 카자흐스탄 역시 FDI 유입 규모에 감소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풍부한 자원개발 산업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보였으며, 독립 초기인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FDI의 평균 84%나 집중되었던 국가로 되었으며,[23] 2018년에도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 총 FDI의 58%(38억 1,658만 달러)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24]

그림 2-10. 중앙아시아 국가의 시기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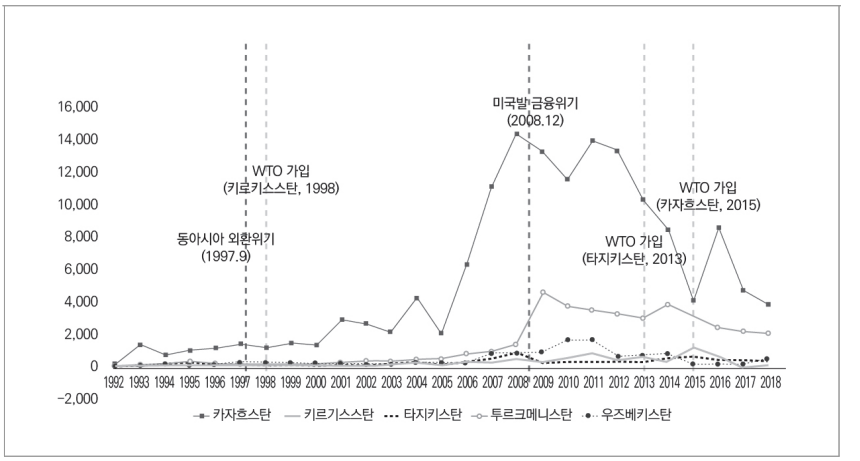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동아시아

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FDI 유입은 중국과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FDI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증가세가 크지는 않다.

23) 나른츠츠끄, 김세영(2017), p. 318.

24)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UNCTAD(2019b), World Investment Report: Annex Tables, Annex table 1. FDI inflows, by region and economy, 1990-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6).

그림 2-11.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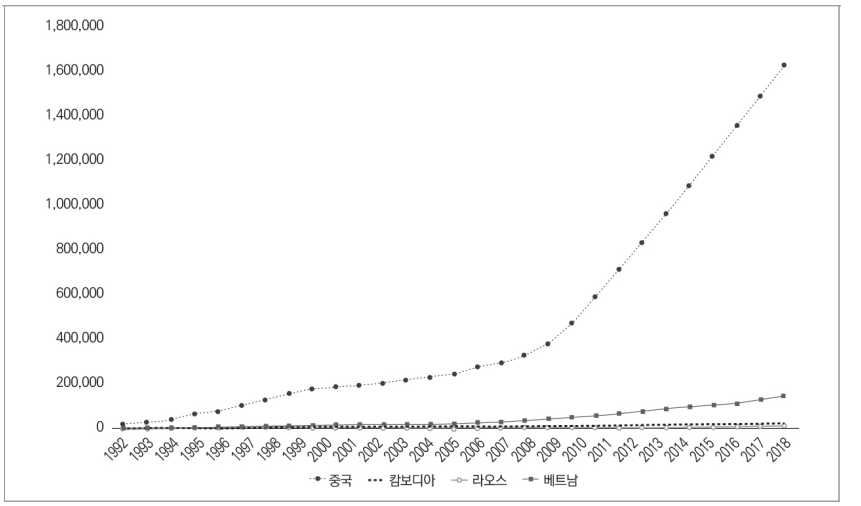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2.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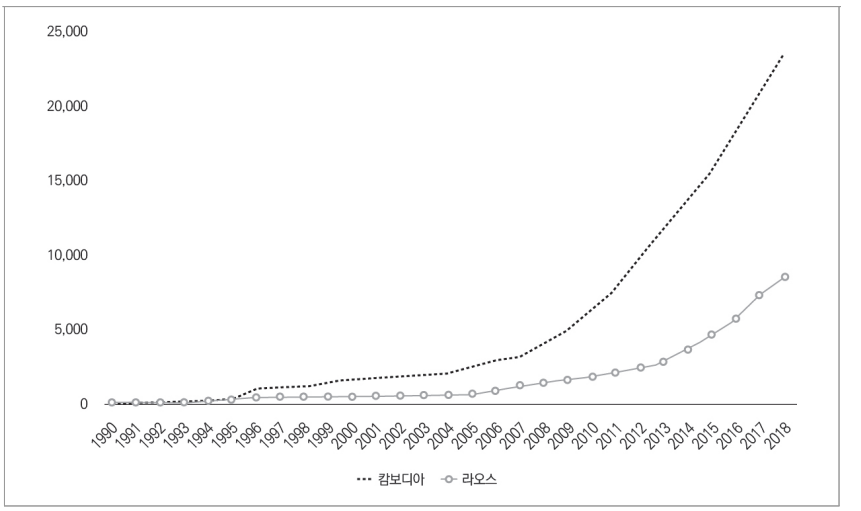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2000년대 이후 FDI 유입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2004년 WTO 가입을 전후로 2003년 56.5%, 2004년 190%나 FDI 유입이 증가하였다. 라오스의 경우 15년 동안 WTO 가입을 추진, 2013년 2월에서야 정식으로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라오스 역시 2013년 WTO 가입을 전후로 2012년에 44.9%, 2013년에 68.9% FDI 유입이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45.6%나 급증하였다.

나. 주요 국가별 FDI 유입 유형 분석

지역별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FDI 유입규모는 각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인접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규모와 자원 부존 정도는 물론 체제전환 진척도, 전환시기 등과 거대시장과의 인접도 측면에서 서로 차별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본 소절에서는 지역별로 FDI 유입규모가 크게 두드러진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로 FDI 유입 유형과 산업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폴란드

CEE 국가 중에서 V4 국가 중의 하나인 폴란드는 1990년대 이후 OECD(1996년), NATO(1999년), EU(2004년)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폴란드는 CEE 지역에 대한 투자 입지상의 이점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조치를 시행하였고, 2004년 EU에 가입하였다. 이에 외국인투자자들은 민영화되는 국유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투자를 통해 폴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였다.

UNCTAD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 폴란드의 FDI 유입 누적액은 1억

900만 달러였으나, 10년 뒤인 2000년에는 334억 8,0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폴란드는 이 시기에 「외국인 경제법」(1991년 7월)을 제정 ·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 이전과 주식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조치를 폐지하는 등 FDI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여 FDI를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1995년에는 경제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각종 세제 및 제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폴란드에 대한 FDI는 2004년 EU 가입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04년 폴란드의 FDI 유입규모는 121억 4,025만 달러로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다. 이는 EU 가입을 통해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경제상황,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폴란드는 2007년 회원국 간 국경 통과 시 출입국 심사를 면제하는 쉥겐(Schengen) 조약에 가입했으며, EU로부터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EU사회기금(EU Social Fund)을 제공받으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

그림 2-13. 폴란드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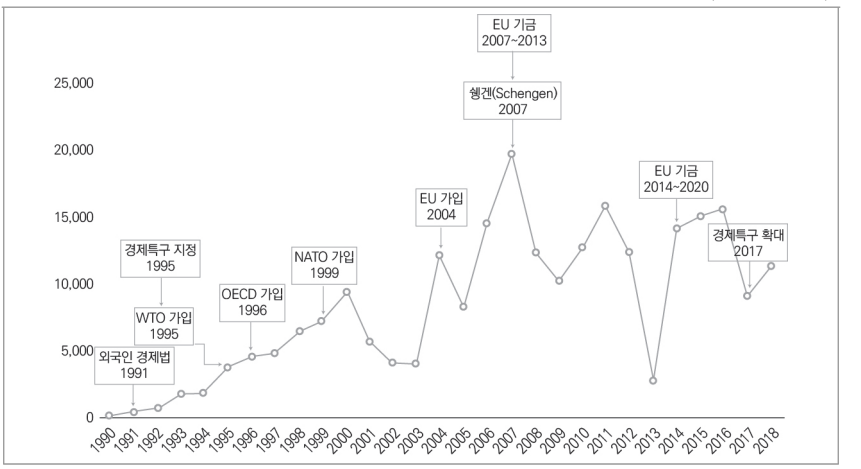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투자 유인 감소, 투자 계획 축소 등으로 인해 폴란드에 대한 FDI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해외투자가 유입되면서 전년대비 70.9%나 증가했으나,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EU기금 중기예산(2007~13년)이 종료되면서 FDI 유입이 급감하는 등 등락세를 보였다(그림 2-13 참고).

한편 폴란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새롭게 EU구조기금(729억 유로)을 지원받아 경제안정화와 투자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존의 경제특구 14개(SSE: Specjalna Strefa Ekonomiczna)에서 제공했던 투자 우대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별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 FDI는 대부분 제조업과 금융업,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에 집중되었다. 특히 초기 10년(1994~2004년)간 산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1994년 22억 8,860만 달러에서 2004년 321억 9,986만 달러로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전체 FDI 투자액을 살펴보면 여전히 제조업에 FDI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FDI의 44.9%에 해당하는 41억 2,800만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그다음으로 금융업 32억 9,000만 달러,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억 4,700만 달러 순으로 많이 FDI가 유입 되었다.

2)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NATO(2004년), EU(2004년), 유로존 가입(2011년) 등 서구 편입 정책을 우선 정

그림 2-14. 에스토니아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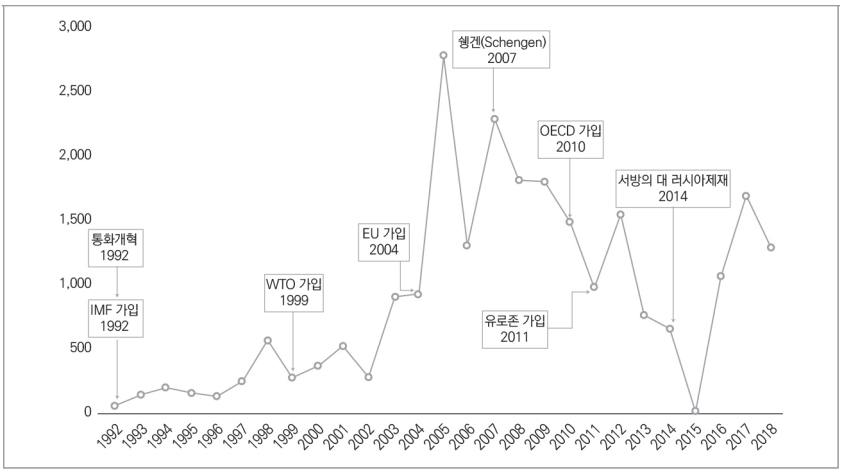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책과제로 설정하고 경제, 외교정책을 시행하였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독립 후 10%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다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세 둔화를 경험하였다.[25]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러 수출 감소, 투자 약세 등으로 인해 2014~16년 평균 2%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 및 정보통신분야 성장세로 2017년 기준 4.9%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26]

에스토니아의 산업별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 제조업, 도소매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초기 10년(1999~2009년)간 산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 1,340억 달러, 제조업 1,484억 달러, 도소매업 1,340억 달러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에도 여전히 전체 FDI 투자액의

25)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2008년 -5%, 2009년에는 -15%로 급락(CEIC, 에스토니아 GDP 통계(검색일: 2019. 11. 17)).

26) CEIC, 에스토니아 GDP 통계(검색일: 2019. 11. 17).

78.8%인 11억 6,400만 달러가 금융업에 투자되었으며, 제조업 2억 4,600만 달러, 도소매업 1억 8,700만 달러 순으로 FDI가 많이 투자되었다.

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철강, 비철금속 등 광물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화학·철강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완성품을 다시 러시아로 수출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곡물 및 농산가공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그 대신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를 저가에 도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가 독립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993년부터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15년간 WTO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08년 2월에 WTO 가입했지만, 가입효과가 나

그림 2-15. 우크라이나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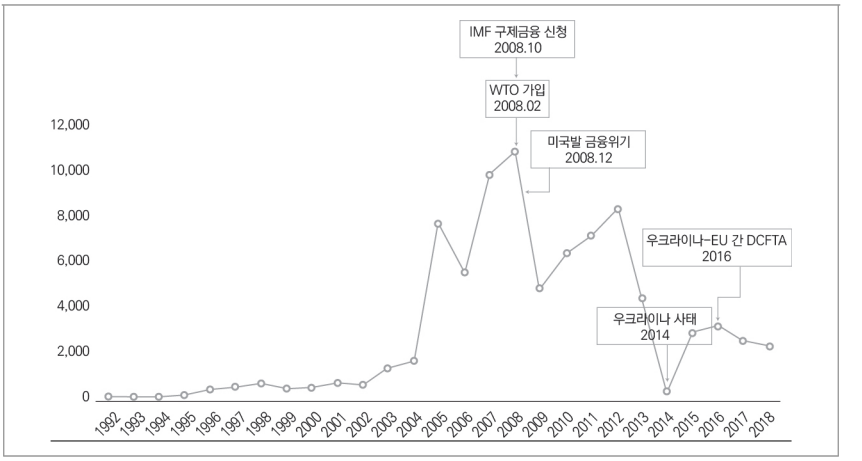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타나기도 전인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위기를 대외적으로 노출하였다.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했던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립 및 갈등과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 정치적 불안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EU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의 발효를 통해 EU와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산업별 FDI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체제전환 이후 2000년까지 주로 식품가공업(20%, 누적)에 가장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FDI 역시 곡물수출 관련 물류기반기설에 집중되었다. 그다음으로는 도소매업(17% 이상, 누적), 기계 공학, 금속(약 11%, 누적)산업 순으로 투자되었다.[27] 2018년 누적기준 전체 FDI 투자액의 25.4%인 82억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도소매업에는 53억 8,300만 달러, 부동산 부문에는 40억 1,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되었다.

4) 카자흐스탄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과 자원개발 산업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보였으며, 독립 초기인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총 FDI 투자규모의 평균 84%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28]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FDI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외국 메이저들의 참여와 카자흐스탄 정부의 개방 지원정책의 효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을 선도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포함하여 2001년에는 아스타나 신도시 건설을

27) OECD(2001), "INVESTMENT POLICY REVIEW: UKRAINE," p. 4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7).
28) 나른츠츠끄, 김세영(2017), p. 318.

그림 2-16. 카자흐스탄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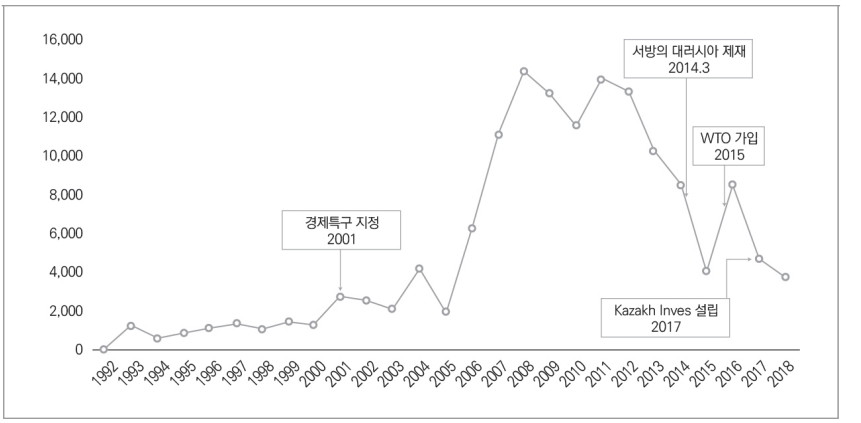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시작으로 부문별 특성에 따라 총 12개의 경제특구를 지정[29]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1998년 석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개발에 외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30] 그 결과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개발을 제외한 제조업은 낙후되고 석유분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2014년부터 석유값 하락,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인한 러시아 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카자흐스탄 경제가 둔화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투자 규모도 감소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2015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2017년에 해외투자 유치 담당 국영기업인 카자흐 투자공사(Kazakh Invest)를 설립하였다.[31] 카자흐 투자공사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파

29) Kazakh Inve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
30) 김학기, 김계환(2010), p. 64.
31)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는 2017년에 설립되어 카자흐스탄의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Kazakh Inve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

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컨설팅부터 투자프로젝트 준비, 투자프로젝트 시행, 유관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one stop shop)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원유 및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에너지 자원 국가로, 대외개방 초기 관련 산업들을 중심으로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에너지자원 이외에 철, 비철금속 등도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별 FDI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FDI 투자액의 38.7%인 19억 6,183만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다. 제조업 중 특히 철, 비철금속을 이용한 기초금속 가공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금융업 14억 2,540만 달러, 전기 가스 및 냉난방 공급부문에 6억 7,834만 달러 순으로 투자되었다.

5) 베트남

베트남은 FDI 유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1986년 공산당 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베트남은 우선적으로 경제 내 가장 비중이 높았던 농업부문 개혁(입찰계약제 도입)[32]을 시작으로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3단계에 걸쳐 외국인투자 규모가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1단계는 개혁을 시작한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개혁 당시 베트남은 주변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32) 농지의 일부를 가족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나머지는 입찰에 의해 배분하는 제도로 영농경험 및 자금력이 있는 농민이 토지를 대량 소유함으로써 토지와 자본의 집약도를 높이고 농기계 사용 및 규모의 경제달성이 가능하다. 한국은행(2018) 참고.

었다. 1인당 GDP 역시 인근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1985년 시행된 화폐개혁[33]으로 1986년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500%에 육박[34]하면서 국내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35]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에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호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하였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정부는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헌법 개정(1992년)을 단행함으로써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국 내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다가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해제(1994년)와 국교정상화 과정이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1994년 2월 미국의 대베트남 엠바고 전면해제, 1995년 7월 미・베트남 국교정상화를 통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을 통한 공적개발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외자가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

33) 당시 베트남에는 북부 베트남 화폐(VND: North Vietnam Dong)와 남부 베트남 화폐(SVD: South Vietnam Dong)가 별개로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인도차이나 은행에서 발행되었던 piastre도 일부 지역에 통용되고 있었다. 이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1978년 5월에 북부 및 남부의 구 화폐를 폐지하고 신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동(dong)貨가 베트남의 공식 화폐로 지정되었다. 임호열 외(2015), pp. 100~101.

34) OECD(2018),"INVESTMENT POLICY REVIEW: Vietnam," 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7).

35) 1984~8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경우 베트남 3.3%, 태국 5.1%, 인도네시아 4.7%, 라오스 5.0%였으며, 1인당 GDP는 베트남 338$, 태국 780$, 인도네시아 510$, 라오스 557$로 가장 낮다. 또한 1986년 기준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율은 390.6%인 반면, 태국 4.1%, 인도네시아 9.4%, 라오스 30.5%를 기록했다.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3). 특히 베트남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985년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결과로 김석진(2010)의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은 구조적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공존하는 이중경제 상황 등을 타개하고자 1985년에 몰수형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2단계는 미국과 국교정상화가 시작된 1995년부터 WTO 가입 전인 2006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대내적으로 국영기업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속하였다. 또한 1995년 ASEAN 가입을 시작으로 1998년 APEC에도 가입하면서 국제기구 가입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 7월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01년 12월 동 협정이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편 2000년에 개정(4차)된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토지이용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동안 통제된 외환분야의 자유화도 시행되었다. 또한 2002년 4월에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도 직접 현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기업법과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 평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하였다.

3단계는 2007년 WTO 가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된 시기이다. 그동안 베트남은 산업 및 경제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왔으며, 2006년 11월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되면서 교역 및 투자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외적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같은 해 미국 의회에서 베트남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로 승인하였다.[36] 이 같은 배경으로 2006년 베트남의 FDI 투자등록금은 120억 500달러에서 2007년 213억 4,880만 달러로 78%나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폭 증가한 717억 2,680만 달러(234%)에 달하게 되었다.[37] 이 시기에 베트남은 WTO 가

36) 미국은 2000년 베트남과 무역협정 체결시 매년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협상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했으나, 2006년 12월 WTO 가입이 확정되면서 영구적으로 베트남에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였다.
37) CEIC, 베트남 FDI 통계(검색일: 2019. 11. 17).

입을 통해 외자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베트남-한국 간 FTA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EU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에 서명했다.

표 2-2.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발전단계	주요 조치
1단계: 1986~94년	- 도이모이 정책 시행(1986년) -「외국인투자법」 제정(1987년) - 외국인투자감독청(국가투자협력위원회, SCCI) 설치(1989년)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1990년) - 수출가공지역(EPZ) 설치 (1991년): 호치민, 하이퐁 - 개정헌법 승인(1992년):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1992년) - 미국의 경제재제 해제(1994년)
2단계: 1995~2006년	- 미국 베트남 국교수립(1995년) - ASEAN 가입(1995년)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1996년): 투자절차 간소화 등 - APEC 가입(1998년) -「외국인투자법」 4차 개정(2000년): 토지이용권 명확화, 외환통제를 자유화 - 미국과 베트남 상호무역협정 발효(2001년) -「노동법」 개정(2002년): 외국투자기업의 직접고용 허가 -「기업법」,「투자법」 제정(2005년): 국영, 민영, 외자기업에 포괄적 적용 - 미의회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승인(2006년)
3단계: 2007년~현재	- WTO 가입(2007년) -「기업법」,「투자법」 개정(2014년) - 베트남-한국 FTA 발효(2015년) - 베트남-EU FTA 서명(2019년)

자료: OECD(2018), "INVESTMENT POLICY REVIEW: Vietnam," pp. 26-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7); European Commission, "EU-Vietnam Trade Agreement,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그림 2-17. 베트남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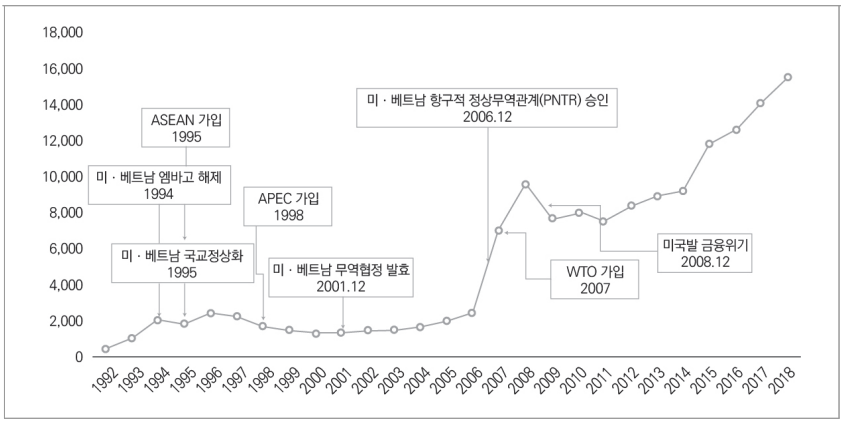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개혁 개방초기 베트남은 1차 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시기 외국인투자는 농림수산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FDI가 제조업으로 유입되기 전(1995~2002년)까지 건설업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체 FDI의 85%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이에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도 FDI가 꾸준히 유입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 제조업으로의 FDI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베트남의 대부분 FDI는 제조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제조업의 누적 FDI 투자금액은 1,886억 달러(52.3%)에 달하고 있으며, 유량기준 역시 FDI의 53.3%인 193억 7,800만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다. 그다음으로 부동산 82억 5,330만 달러, 전력 및 가스 공급업이 18억 1,740만 달러 순으로 많이 투자되었다.

6) 중국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자본 및 기술부족이라는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해주고 기술을 배운다는 '시장환기술(市场换技术)' 전략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다양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 시행[38]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초기 4대 경제특구(선전, 주하이, 샨토우, 샤먼)를 중심으로 개방과 투자 유치를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1979년에 외국인투자 기본법인 「중외합자기업법」을 제정하였고, 그다음 해인 1980년에는 「중외합자기업 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의 법제를 정비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외자기업의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조항(제18조)을 신설하였으며, 1984년에는 「외자기업법」과 1986년 「외국인투자 장려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등을 시행하였다.

중국 역시 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해나갔다. 1991년 7월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법」 통일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2000년에는 외자에 의한 M&A 및 지분참여 허용을 통해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하였고,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 방향 지도 잠정규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초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의 구조조정을 위해 선별적으로 외국인투자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첨단산업, 에너지 절약 및

38)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은 양평섭 외(2018)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보호, 신에너지 등의 관련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전통 제조업에 대한 FDI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중국정부는 2008년 신기업 소득세법을 시행하여, 외자기업의 우대혜택을 사실상 폐지하여,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외상투자지도 목록'을 통해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더욱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제한항목 감소와 2020년부터 통일된 '외국인투자법 시행'을 통해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림 2-18. 중국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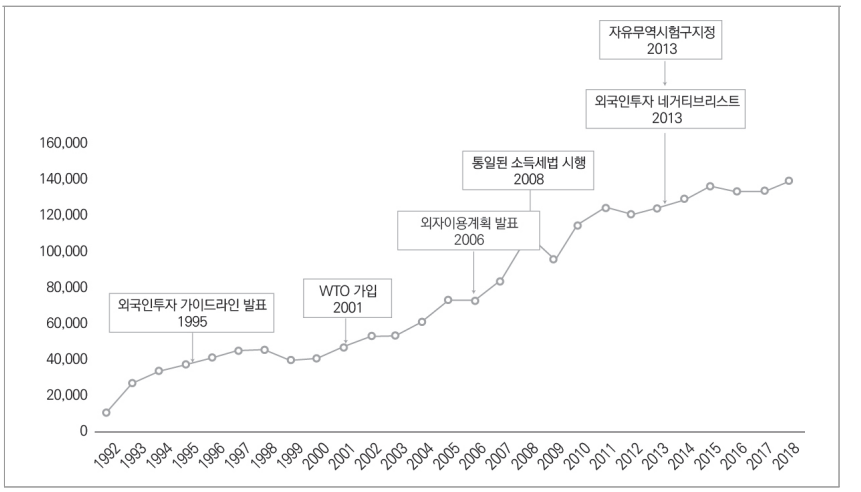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중국은 개방 이후 40년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범위를 점차 확대하였다. 1984년 중국정부가 원자재 가공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래, 가공무역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이 줄곧 외자 유치의 주요 업종이었다. 2000년 기준 중국의 주요 산업 내 외국인투자 비중은 전자·통신 설비제조업이 3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체육관련 제조업(34.7%), 피혁·모피 등 기타 제조업(34.0%), 복장 및 기타 섬유제조업(28.1%) 순으로 나타났다.[39]

2018년 산업별 FDI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액의 30.5%인 411억 7,421만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부동산 부문에 224억 6,740만 달러, 임대 및 상업서비스에 188억 7,459억 달러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이하에서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평가항목을 토대로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Doing Business 순위는 총 10개의 주요 평가요소에 의해 산출된 평가점수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각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2-3]과 같다.[40]

창업 환경 중 창업 절차(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는 창업을 위해 창업가가 수행해야 할 법적 절차 단계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국가가 보유한 절차체계의 간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창업 소요시간(Starting a

39) 隆国强(2017),『构建开放性经济新体制』, p. 130.
40) 정형곤 외(2017), pp. 56~58에서 Doing Business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였다.

Business Time)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각 국가가 창업에 필요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 등의 섭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나타낸다. 창업 지출비용(Starting a Business Cost)은 1인당 경제 소득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창업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를 계산한 값이다. 창업 납입자본(Starting a Business Paid in Capital)은 기업이 은행에 입금하거나 등록 전에 공증인 또는 법인 설립 후

표 2-3. Doing Business의 주요 평가요소(World Bank)

부문(총 10개)	평가 내용 및 주요 세부지표
창업 (Starting a Business)	•기업이 창업하는 데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평가 (세부지표) 창업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규모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기업이 건축을 하는데 요구되는 절차, 시간, 비용 및 행정시스템 효율성 등을 평가 (세부지표) 창고 건축에 필요한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전력수급 (Getting Electricity)	•전력 수급 효율성 및 안정성을 측정 (세부지표) 전력수급에 요구되는 비용, 시간, 절차 및 송전시스템 등을 각각 25%로 평가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토지 · 건물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지표)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자금조달 (Getting Credit)	•채권자의 법적 권리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평가 (세부지표)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준, 신용정보 제공 수준 등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이사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 보호의 정도를 평가 (세부지표) 거래투명성(공시), 이사진의 책임,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편의도
납세 (Paying Taxes)	•기업의 세금(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납부로 인한 부담을 평가 (세부지표) 납부 회수, 소요시간, 실효세율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지표) 상품의 수출입 관련 절차, 소요시간, 비용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s)	•각종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 (세부지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절차, 소요시간, 비용
도산처리 (Resolving Insolvency)	•기업의 지급불능상황, 도산 등에 대한 대처 제도 효율성 평가 (세부지표) 기업회생비율(50%), Insolvency Framework 평가(50%)

자료: World Bank(2016),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ulations, Method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재인용: 정형곤 외(2017), p. 58.

3개월까지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창업납입자본의 평가결과는 1인당 경제 소득을 백분율로 계산한 값이다. 건축 관련 인허가 평가요소 중 건축허가 절차(Construction Permits Procedures)는 건축허가 관련 각 국가가 보유한 절차체계의 간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건축 관련 인허가 소요시간(Construction Permits Time)은 각 국가가 건축인허가 발행에 필요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 등의 섭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나타낸다. 건축 관련 인허가 등록비용(Construction Permits Cost)은 1인당 경제 소득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건축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를 계산한 값이다.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평가에서는 전력수급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전력수급에 요구되는 비용, 시간, 절차 및 송전시스템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은 재산권 등록으로, 재산권 등록절차(Registering Property Procedures)는 재산권 등록 시 창업가가 교류해야 할 법적 체계의 숫자를 의미하며, 재산권 등록 소요시간(Registering Property Time)은 재산권 등록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재산권 등록비용(Registering Property Cost)은 1인당 경제 소득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재산권 등록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를 계산한 값이다. 자금조달(Getting Credit) 항목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준, 신용정보 제공 수준 등을 지수화하여 각종 거래환경 관련 비즈니스 여건을 평가한다.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평가항목에서는 거래투명성(공시), 이사진의 책임,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 편의도 등을 지수화하여 평가, 해당 결과를 제공한다.

납세 환경 평가항목에서 납세대상 서류(Paying Taxes Payments)는 연 단위로 창업가가 납부해야 할 납세항목의 개수를 계산한 것이며, 납세 소요일(Registering Property Time)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

미한다. 세율(Paying Taxes Total tax rate)은 기업이 납부하는 총 세율을 근거로 평가를 한다.

다음으로 무역 환경 평가로, 수출허가서류(Trading Ac. Borders Documents to export)는 각 국가가 보유한 수출입 절차의 간편성, 수출소요시간(Trading Ac. Borders Time to export)은 수출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수출비용(Trading Ac. Borders Cost to export)은 수출에 지출되는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계약이행 환경 평가 항목의 계약이행 소요시간(Enforcing Contracts Time)은 각 국가가 세금 납부에 필요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 등의 섭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日)을 나타낸다. 계약이행비용(Enforcing Contracts Cost)은 등록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를, 그리고 계약이행절차 수(Enforcing Contracts Procedures)는 각 국가가 보유한 절차체계의 총 단계 수를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산처리 환경에 대한 평가로, 기업도산처리비용(Resolving Insolvency Cost)은 도산처리 시 부과되는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 채권회수율(Resolving Insolvency Recovery rate)은 파산 절차와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산된다.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여건 분석[41)]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2017~18년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41) 2019년 5월 1일자 기준 11개의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190개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하고 있는 'Doing Business 2019'를 통해 체제전환 32개국을 중심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의 비즈니스 여건 개선에 대해 우선 검토하였고, Ease of doing Business의 점수가 순위와 함께 발표되기 시작한 'Doing Business 2015'와 비교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비즈니스 여건 개선 실적을 추가 분석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여건 개선을 보인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중국, 아제르바이잔, 인도, 토고, 케냐, 코트디부아르, 터키, 르완다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 국가는 총 21개 항목에서 개선을 이루었으며, 특히 전력수급과 무역부문 등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

비즈니스 환경에 바탕을 둔 Ease of doing Business[42] 국가 순위에서 20위 안에 드는 국가들 중 12개국이 OECD 고소득 그룹에 속하며,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전환국 중에는 조지아(6위), 마케도니아(10위), 리투아니아(14위), 에스토니아(16위), 라트비아(19위) 총 5개국이 20위 안에 들어 있다. 이러한 상위 20위권 국가는 전력분배 사업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전 시 빠르고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제 인프라의 수준이 높고 법제 기관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또한 채권자가 결정 채택에 반대하거나 채권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급불능 소송 수속 시 채권자에게 강력한 세이프 가드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위 20위권은 법원 자동화가 일반적이며, 다른 국가(200일)에 비해 해당 국가의 판결은 평균적으로 약 2배 빠른 95.6일이 소요된다. 또한 해당 국가는 강력한 공시 의무를 통해 법인 자산이 개인 수익으로 불법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상위 20위권 안에 든 체제전환 5개국 중 비즈니스 환경이 최근 5년간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국가는 마케도니아이다. 2014년에 74.11점으로 30위에 불과했던 마케도니아는 2018년도에는 Ease of doing Business 점수가 무려 81.55점까지 개선되어 10위가 되었다.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5년에 81위에 불과한 평가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마케도니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속도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그다음으로 눈부

42) 최근 몇 년간 친 비즈니스 규정을 발전시키고, 종합적인 여건 개선을 통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국가들에 높은 점수와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표 2-4. 체제전환국의 Ease of Doing Business 국가별 순위 및 점수

지역	국가	순위(1-190)			점수(0-100)		인구(명)
		2005	2014	2018	2014	2018	(2018년 기준)
EU (11)	불가리아	62	38	59	71.80	71.24	7,075,991
	크로아티아	118	65	58	66.53	71.40	4,124,700
	체코	41	44	35	70.95	76.10	10,591,323
	에스토니아	16	17	16	78.84	80.50	1,315,480
	헝가리	52	54	53	68.80	72.28	9,781,127
	라트비아	26	23	19	76.73	79.59	1,940,740
	리투아니아	15	24	14	76.31	80.83	2,827,721
	폴란드	54	32	33	73.56	76.95	37,975,841
	루마니아	78	48	52	70.22	72.30	19,586,539
	슬로바키아	37	37	42	71.83	75.17	5,439,892
	슬로베니아	63	51	40	69.87	75.61	2,066,748
비EU (6)	알바니아	117	68	63	66.06	69.51	2,873,45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87	107	89	60.55	63.82	3,507,017
	코소보	n.a.	75	97	64.76	74.15	1,830,700
	마케도니아	81	30	10	74.11	81.55	2,083,160
	몬테네그로	92	36	50	72.02	72.73	622,471
	세르비아		91	48	62.57	73.49	7,022,268
CIS (6)	아르메니아	46	45	41	70.60	75.37	2,930,450
	벨라루스	106	57	37	68.26	75.77	9,507,875
	조지아	100	15	6	79.46	83.28	3,717,100
	몰도바	83	63	47	66.60	73.54	3,549,750
	우크라이나	124	96	71	61.52	68.25	44,831,159
	러시아	79	62	31	66.66	77.37	144,495,044
중앙 아시아 (4)	카자흐스탄	86	77	28	64.59	77.89	18,037,646
	키르기스스탄	84	102	70	60.74	68.33	6,201,500
	타지키스탄	n.a.	166	126	48.57	57.11	8,921,343
	우즈베키스탄	138	141	76	54.26	67.40	32,387,200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91	90	46	62.58	73.64	1,386,395,000
	캄보디아	133	135	138	55.33	54.80	16,005,373
	라오스	147	148	154	51.45	51.26	6,858,160
	베트남	99	78	69	64.42	68.36	95,540,800
	보츠와나	40	74	86	64.87	65.40	2,291,661

주: 순위는 Doing Business 2006년부터 발표되었으나, 점수는 Doing Business 2015년부터 발표.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6,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표 2-5.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창업 환경 평가 결과

지역	국가	창업 절차		소요일		비용		최소납입자본금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4	7	18	23	0.8	1.1	0.0	0.0
	크로아티아	7	8	15	22.5	3.5	6.6	26.6	11.6
	체코	9	8	19	24.5	8.0	1.0	0.0	0.0
	에스토니아	4	3	4.5	3.5	1.4	1.1	18.6	14.6
	헝가리	4	6	5	7	8.3	4.9	54.0	40.1
	라트비아	4	4	12.5	5.5	3.6	1.6	0.0	0.0
	리투아니아	3	4	3.5	5.5	0.7	0.5	0.0	17.5
	폴란드	4	5	30	37	12.9	11.8	12.3	10.0
	루마니아	5	6	8	35	2.1	0.4	0.7	0.5
	슬로바키아	7	8	11.5	26.5	1.5	1.0	19.2	16.4
	슬로베니아	2	3	6	8	0.0	0.0	44.1	36.8
비EU 유럽 (6)	알바니아	5	5	4.5	5	10.0	11.3	0.0	0.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1	13	37	81	14.6	14.9	28.6	11.1
	코소보	5	3	11	5.5	1.2	1.0	0.0	0.0
	마케도니아	2	4	2	14	0.6	0.9	0.0	0.0
	몬테네그로	6	8	10	12	1.6	1.3	0.0	0.0
	세르비아	6	5	12	5.5	6.8	2.2	0.0	0.0
CIS 및 러시아 (6)	아르메니아	2	3	3	3.5	1.0	0.8	0.0	0.0
	벨라루스	5	4	9	9	0.8	0.5	0.0	0.0
	조지아	2	1	2	2	3.4	2.2	0.0	0.0
	몰도바	5	3	6	4	4.6	5.0	0.0	0.0
	우크라이나	6	6	21	6.5	1.2	0.6	0.0	0.0
	러시아	4.4	4	11.2	10.1	1.2	1.1	0.0	0.0
중앙 아시아 (4)	카자흐스탄	6	5	10	5	0.5	0.3	0.0	0.0
	키르기스스탄	2	4	8	10	2.4	1.9	0.0	0.0
	타지키스탄	4	4	39	11	23.3	18.0	0.0	0.0
	우즈베키스탄	7	3	7.5	4	3.3	3.1	0.0	0.0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11	4	31.4	8.6	0.9	0.4	0.0	0.0
	캄보디아	11	9	101	99	139.5	47.4	26.1	76.2
	라오스	6	10	92	174	5.7	6.6	0.0	0.0
	베트남	10	8	34	17	5.3	5.9	0.0	0.0
	보츠와나	10	9	60	48	1.0	0.6	0.0	0.0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신 환경 개선을 보인 국가는 2018년도에 순위 6위로 체제전환국 중 최상위 국가로 평가된 조지아이다. 2014년에 79.46점으로 15위였던 조지아는 2018년도에는 83.28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2005년도에 순위가 100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제전환 이후 가장 크게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 국가이다.

Ease of doing Business 50위권에는 60%가 OECD 고소득 그룹에 속하는 국가이다. 50위권 국가 중 체제전환국은 카자흐스탄(28위), 러시아(31위), 폴란드(33위), 체코(35위), 벨라루스(37위), 슬로베니아(40위), 아르메니아(41위), 슬로바키아(42위), 코소보(44위), 중국(46위), 몰도바(47위), 세르비아(48위), 몬테네그로(50위) 등 총 13개국이다. 이 가운데 조지아, 코소보, 몰도바는 50위권 국가 중 OECD 고소득 그룹이 아닌 중하위 소득 그룹이다. 21~50위권 체제전환국 중 카자흐스탄, 중국, 세르비아 등 3개국은 최근 5년간 가장 두드러진 기업환경 개선을 이루었다. 2014년 64.59점으로 77위에 머물렀던 카자흐스탄은 2018년도에는 비즈니스 환경 점수가 무려 77.89점으로 개선되어 28위까지 순위가 수직 상승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장 최근 평가에서도 눈에 띄는 기업 환경여건 개선을 보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도 최근 5년간 90위에서 46위로 순위가 급상승하였으며, 세르비아도 91위에서 48위까지 순위가 상승하였다.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제전환국 정부는 규제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소한 변화부터 법률의 대폭 수정, 혹은 새 기관 설립까지 다양한 제도적 개선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건물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으며, 키르기스탄은 「민사소송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반영하여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가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평가한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표 2-5]부터 [표 2-11]에 걸쳐 정리하였다.

2017~18년도 Doing Business 평가 국가 중 1/4에 해당하는 국가가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회사 법인화와 연관된 절차, 시간 혹은 비용을 단축하였다. 50개국 중 23개국이 예비 등록이나 등록 순서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중복청약을 개별 등록 템플릿(single registration template)에 통합시키는 것에서부터 현장 점검이나 회사 법인화 전에 은행증서 요구를 폐지시키는 변화를 시행하였다. 조지아는 이전까지 회사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등록을 위해 기업인이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방문해야 했으나,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창업할 때 최고 규제성과(best regulatory performance)의 상대적 격차를 줄였다. 또한 원스톱 상점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업인들이 단일 절차를 통해 회사를 개업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5년간 창업 환경이 가장 크게 개선된 체제전환국은 중국이다. 창업 절차가 11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고 31.4일이었던 창업 소요일은 무려 8.6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창업비용도 축소되었다.

2017~18년도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10위권 국가는 전체 영역 중 총 62가지의 비즈니스 환경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창업, 자금조달 및 납세 부문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상위 10위권 국가 중 유일한 동아시아-태평양 국가인 중국은 비즈니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에 주력하였다. 상해와 북경에 있는 전력회사 소속 배전회사(Utility Distribution Company)는 새로운 전력 연결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감축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에 착수하였다. 중국은 2018년 상반기에 북경과 상해에서 건물 허가 승인 전, 모든 건물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자 통합된 플랫폼을 실행함으로써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책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서류 간편화, 절차 시간 개선, 정보에 대한 일반인 접근 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북경과 상해 두 곳의 지역 부동산 등기소(The District Real Estate Registries)는 새 건물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실행하였다. 또한 중국은 항만 당국, 산업자원부 및 여타 기관들이

표 2-6.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납세 환경 평가 결과

지역	국가	납세대상 서류(연간)		소요일		세율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13	14	454	453	27.0	27.7
	크로아티아	19	34	208	206	18.8	20.5
	체코	8	8	413	230	48.5	46.1
	에스토니아	7	8	81	50	49.3	48.7
	헝가리	11	11	277	277	48.0	40.3
	라트비아	7	7	193	168.5	35.0	36.0
	리투아니아	11	10	175	99	42.6	42.6
	폴란드	18	7	286	334	38.7	40.7
	루마니아	14	14	159	163	43.2	40.0
	슬로바키아	20	8	207	192	48.6	49.7
	슬로베니아	11	10	260	233	32.0	31.0
비EU 유럽 (6)	알바니아	34	35	357	252	30.7	37.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5	33	407	411	23.3	23.7
	코소보	33	10	155	153.5	15.3	15.2
	마케도니아	7	7	119	119	7.4	13.0
	몬테네그로	29	18	320	300	22.3	22.2
	세르비아	67	33	279	225.5	38.6	36.6
CIS 및 러시아 (6)	아르메니아	10	14	321	262	20.4	18.5
	벨라루스	7	7	183	184	52.0	53.3
	조지아	5	5	362	220	16.4	9.9
	몰도바	21	10	185	181	39.7	40.5
	우크라이나	5	5	350	327.5	52.9	41.7
	러시아	7	7	168	168	48.9	46.3
중앙 아시아 (4)	카자흐스탄	6	7	188	182	28.6	29.4
	키르기스스탄	52	51	210	225	29.0	29.0
	타지키스탄	31	6	209	224	80.9	67.3
	우즈베키스탄	33	10	192.5	181	42.2	32.1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7	7	261	142	64.6	64.9
	캄보디아	40	40	173	173	21.0	21.7
	라오스	35	35	362	362	25.8	24.1
	베트남	32	10	872	498	40.8	37.8
	보츠와나	34	34	152	120	25.3	25.1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수출입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무역을 촉진하고자 관세와 세무 행정이 연결된 단일창구(Single window) 무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복잡한 규제와 비용을 축소하거나 법률기관을 강화한 체제전환국 사례 중 2017~18년에 창업에 있어 예비 등록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는 브루나이와 베트남을 들 수 있다. 등록 후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브루나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5개 체제전환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절차를 개선하거나 도입한 사례로는 중국과 베트남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베트남은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통고문을 공개하였다. 몰도바는 one-stop-shop을 도입하거나 개선한 사례를 제공하였는데, 등록에 필요한 파일을 나누어 제출하는 이전 관행을 모두 폐지하였다.

납세 부문에서 조지아와 러시아는 자본이득세 경감 및 세금 공제가능 비용 확대 등을 통해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북경과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은 근로소득세, 의무 분담금 혹은 여타 세금 경감조치를 시행했는데, 특히 베트남은 근무자들의 노동기금 분담금을 1%에서 0.5%로 경감시켰다. 조지아는 세법의 전면적인 대폭 수정을 단행하였으며 아르메니아, 중국, 조지아, 리투아니아, 베트남 등은 납세 절차 간소화 혹은 납세 횟수 감소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메니아는 2017년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관련 회계 소프트웨어를 보다 넓은 범위의 세금계산 방식으로 개선, 세무 기관의 데이터 전송과 저장 시스템을 안전하게 실행하였다. 이밖에도 특정 세금의 폐지 혹은 병합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루어졌고, 코소보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세무조사 절차 등을 개선했으며, 법인세 납부 절차에 있어서도 다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납세환경 개선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베트남이다. 연간 납세대상 서류는 32가지에서 10가지로 대폭 줄어들었고, 소요일도 872일에서 498일로 축소시켰으며, 세율도 40.8%에서 37.8%로 경감하였다. 우즈베키스탄도 최근 5년간 납세대상 서류를 33

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이고, 소요일과 세율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세르비아는 납세대상 서류 종류는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서류와 소요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 5년간 납세대상 서류와 세율에 있어서는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으나, 소요일은 261일에서 142일로 크게 개선하였다.

전력수급 측면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아르메니아, 중국, 러시아 등은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였고 브루나이, 중국, 러시아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연결 비용을 절감하였다. 재산권 등록에 있어 크로아티아는 토지 등록과 토지 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켰으며, 인프라의 신뢰성과 정보의 투명성 증가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었다. 한편 중국은 재산권 등록 시간을 절감시켰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중국, 러시아, 체코 등이 최근 5년간 전력수급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을 보였다. 중국은 전력수급 절차를 5.5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했고, 143.2일에 달했던 소요일을 34일까지 축소시켰으며, 비용도 대폭 개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5.6단계의 전력수급 절차를 최근 5년간 2단계로 축소시켰으며, 비용 축소와 함께 소요일도 179.1일에서 73일로 대폭 줄었다. 체코도 전력수급 절차와 소요일 및 비용 모두 최근 5년간 크게 개선했다.

건축 관련 인허가 부문에서 2018년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축소된 사례가 보츠와나, 중국, 코소보, 러시아 등에서 목격되었고, 절차 간소화 조치가 보츠와나, 중국, 코소보, 세르비아 등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의 북경 지역에서는 건축 관련 인허가의 투명성이 개선되었고 캄보디아, 중국, 마케도니아 등에서는 비용절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마케도니아에서는 토지 개발 비용의 절감이 실행되었다. one-stop-shop 도입 혹은 개선 사례는 벨라루스, 중국, 대만 등에서 목격되었는데, 특히 대만은 국토관리청의 단일 창구

표 2-7.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전력수급 평가 결과

지역	국가	전력수급 절차		소요일		비용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6	6	130	262	320.4	428.8
	크로아티아	5	4	70	65	316.7	276.6
	체코	6	3	129	60	175.8	24.1
	에스토니아	4	5	111	91	169.2	154.2
	헝가리	5	5	252	257	111.5	82.6
	라트비아	5	4	108	107	308.2	258.9
	리투아니아	5	4	137	85	45.5	38.0
	폴란드	3	4	161	122	20.8	17.3
	루마니아	7	9	223	174	496.1	449.7
	슬로바키아	5	5	128	89	56.9	233.3
	슬로베니아	5	5	38	38	119.3	99.5
비EU (6)	알바니아	6	6	177	134	472.6	504.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8	8	125	125	484.4	332.6
	코소보	7	6	46	36	822.5	206.0
	마케도니아	5	3	107	97	255.3	196.1
	몬테네그로	5	7	71	142	467.9	418.7
	세르비아	4	5	131	125	454.9	212.1
CIS (6)	아르메니아	5	3	187	72	92.6	70.3
	벨라루스	7	3	131	105	364.1	97.8
	조지아	4	3	71	71	503.8	157.4
	몰도바	7	6	118	87	865.1	647.1
	우크라이나	10	5	277	281	165.5	402.5
	러시아	5.6	2	179.1	73	321.0	5.7
중앙아시아 (4)	카자흐스탄	6	7	88	77	56.6	43.2
	키르기스스탄	7	7	159	111	1,872.2	717.7
	타지키스탄	9	9	185	133	942.1	893.0
	우즈베키스탄	7	4	89	88	1,688.1	705.2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5.5	3	143.2	34	459.4	0.0
	캄보디아	4	4	168	179	2,495.4	1,837.4
	라오스	5	7	134	105	1,650.4	763.4
	베트남	6	4	115	31	1,432.8	1,087.3
	보츠와나	5	5	121	77	340.4	266.5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카운터(Single Window Counter)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건축 인허가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전자 허가증 시스템을 도입한 세르비아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은 건축 관련 인허가의 전자 플랫폼 혹은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였거나 개선했다. 최근 5년간 건축 관련 인허가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진 국가는 세르비아이다. 건축허가 절차를 16단계에서 11단계로, 소요일도 264일에서 106일로 개선했으며, 비용도 큰 폭으로 축소시켰다. 큰 폭은 아니지만 중국도 건축허가 절차, 소요일, 비용 등 모든 세부항목이 최근 5년 동안 개선되었으며, 특히 소요일이 244.3일에서 155.1일로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다. 이밖에 카자흐스탄과 폴란드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없었으나, 건축허가 절차가 각각 25단계에서 18단계로, 19단계에서 12단계로 소요일이 156일에서 101.5일, 212일에서 153일로 상당 부분 축소, 개선되었다.

브루나이에서는 신용정보기관이 대출 결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은행과 재정기관에 신용점수를 제공하여 신용정보 공유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소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회사경영에 있어서 주주의 역할이 확장된 사례가 아르메니아, 중국, 리투아니아, 중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목격되었다. 또한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이해관계자거래 자격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중국은 주주 행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계약이행 부문에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또는 시행 규칙을 도입하였다. 키르기스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우크라이나는 사건 관리 기법으로 재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 규칙을 도입하였고, 민사소송법도 개정하였다. 또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는 소액사건에 새로운 간소화 규정을 도입하였다. 전자식 결제, 전자 송달, 사건 자동 배정 도입으로 법원 자동화가 확장된 경우는 조지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베트남 등에서 발견되

표 2-8.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건축 관련 인허가 평가 결과

지역	국가	건축허가 절차		소요일		비용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16	18	110	97	4.5	3.8
	크로아티아	21	22	188	146	10.9	10.9
	체코	24	21	143	246	0.3	0.2
	에스토니아	11	10	103	103	0.3	0.2
	헝가리	23	22	91	192.5	0.2	0.8
	라트비아	12	14	149	192	0.3	0.5
	리투아니아	11	13	91	74	0.3	0.3
	폴란드	19	12	212	153	0.3	0.3
	루마니아	14	24	255	260	2.3	2.1
	슬로바키아	10	14	286	300	0.1	0.2
	슬로베니아	11	17	212.5	247.5	1.3	2.8
비EU (6)	알바니아	19	18	228	299	3.3	5.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5	16	179	193	19.7	16.3
	코소보	15	12	152	150	6.7	4.9
	마케도니아	11	9	89	91	8.2	3.7
	몬테네그로	8	8	158	152	12.2	9.6
	세르비아	16	11	264	106	25.7	1.7
CIS (6)	아르메니아	19	20	83	98	1.2	1.4
	벨라루스	14	15	114	160	0.8	1.9
	조지아	8	11	68.5	63	0.3	0.3
	몰도바	27	28	247	276	0.8	1.4
	우크라이나	8	11	64	85	10.2	6.3
	러시아	19.8	15.1	238.4	193.8	1.9	1.2
중앙아시아 (4)	카자흐스탄	25	18	156	101.5	1.5	2.0
	키르기스스탄	10	11	141	142	2.1	1.5
	타지키스탄	24	25	228	182	1.9	2.0
	우즈베키스탄	23	17	160	246	1.7	3.3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22	20.4	244.3	155.1	7.6	2.9
	캄보디아	20	20	652	652	6.7	3.3
	라오스	22	12	107	92	0.6	4.9
	베트남	10	10	114	166	0.7	0.7
	보츠와나	20	15	110	102	0.3	0.4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었다. 조지아, 폴란드는 법원 전체에 무작위식과 자동식 사건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슬로바키아는 전자 송달 방식을 시행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상업 사건을 공개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전자식 사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키르기스탄은 대안적 분쟁 해결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중재(mediation)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법을 도입함으로써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확장시켰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적용 측면에서 최근 개선 사항이 다소 있으나 최근 5년간 계약이행 환경 평가 결과, 소요일과 비용 측면에서는 별다른 개선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소폭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체제전환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최근 5년간 계약이행 소요일과 비용 측면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역 부문에서는 전자식 제출과 수출 서류 절차 개선 혹은 도입이 카자흐스탄, 코소보, 리투아니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목격되었는데,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전자 관세신고 시스템(ASTANA-1 IS)을 도입하였고, 세관 수수료를 경감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자식 제출과 수입 서류 절차를 도입 혹은 개선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국은 수출 및 수입 국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출입 관세행정과 세관검사 향상 사례가 중국, 카자흐스탄, 코소보, 라오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목격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동차 부품 검증요건을 삭제하였고, 코소보는 알바니아 국경통제를 완화하였고, 통관수속 시 신체검사 횟수를 축소하였다.

2014~18년 최근 5년간 재산권등록 환경 평가결과, 등록절차와 소요일 및 비용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국가는 루마니아와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루마니아는 재산권 등록절차가 8단계에서 6단계로 소폭 개선되었고, 소요일도 19일에서 14.5일로 축소되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소폭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등록절차가 13단계에

표 2-9.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계약이행 환경 평가 결과

지역	국가	소요일		비용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564	564	23.8	18.6
	크로아티아	572	650	13.8	15.2
	체코	611	678	33.0	33.8
	에스토니아	425	455	21.9	21.9
	헝가리	395	605	15.0	15.0
	라트비아	469	469	23.1	23.1
	리투아니아	300	370	23.6	23.6
	폴란드	685	685	19.4	19.4
	루마니아	512	512	28.9	25.8
	슬로바키아	545	775	30.0	20.5
	슬로베니아	1,270	1,160	12.7	12.7
비EU (6)	알바니아	525	525	34.9	34.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95	595	34.0	36.0
	코소보	330	330	33.0	34.4
	마케도니아	604	634	28.8	28.8
	몬테네그로	545	545	25.7	25.7
	세르비아	635	635	34.0	40.8
CIS (6)	아르메니아	570	570	14.0	16.0
	벨라루스	275	275	23.4	23.4
	조지아	285	285	29.9	25.0
	몰도바	567	585	28.6	28.6
	우크라이나	378	378	46.3	46.3
	러시아	267	337	14.9	16.5
중앙아시아 (4)	카자흐스탄	370	370	22.0	22.0
	키르기스스탄	260	410	37.0	47.0
	타지키스탄	430	430	25.5	25.5
	우즈베키스탄	195	225	20.5	20.5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452.8	496.3	16.2	16.2
	캄보디아	483	483	103.4	103.4
	라오스	443	828	31.6	31.6
	베트남	400	400	29.0	29.0
	보츠와나	625	660	39.8	39.8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표 2-10.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재산권등록 환경 평가 결과

지역	국가	재산권 등록절차		소요일		비용	
		2014	2018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7	8	10	19	2.9	2.9
	크로아티아	5	5	72	47	5.0	4.0
	체코	3	4	24	27.5	4.0	4.0
	에스토니아	3	3	17.5	17.5	0.4	0.5
	헝가리	4	4	16.5	17.5	5.0	5.0
	라트비아	5	4	18	16.5	2.0	2.0
	리투아니아	3	3	2.5	3.5	0.8	0.8
	폴란드	6	6	33	33	0.3	0.3
	루마니아	8	6	19	14.5	1.5	1.3
	슬로바키아	3	3	16.5	16.5	0.0	0.0
	슬로베니아	5	7	109.5	50.5	2.0	2.2
비EU (6)	알바니아	6	5	22	19	9.9	9.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7	7	24	24	5.2	5.2
	코소보	6	6	27	27	0.3	0.3
	마케도니아	7	7	31	30	3.3	3.2
	몬테네그로	6	6	69	69	3.1	3.2
	세르비아	6	6	54	21	2.7	2.8
CIS (6)	아르메니아	3	3	7	7	0.2	0.1
	벨라루스	2	2	4	3	0.0	0.0
	조지아	1	1	1	1	0.1	0.0
	몰도바	5	5	5.5	5.5	0.9	1.1
	우크라이나	7	7	27	17	2.0	1.8
	러시아	3	4	19	13	0.1	0.1
중앙아시아 (4)	카자흐스탄	4	3	11	3.5	0.1	0.1
	키르기스스탄	3	3	5	3.5	0.3	0.2
	타지키스탄	6	5	37	36	3.7	2.9
	우즈베키스탄	13	9	55	46	1.3	1.1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4	3.6	19.5	9	3.6	4.6
	캄보디아	7	7	56	55	4.4	4.3
	라오스	5	6	98	28	1.1	3.1
	베트남	4	5	57	53.5	0.6	0.6
	보츠와나	4	4	15	27	5.1	5.1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표 2-11. 지역별 체제전환국의 도산처리 환경 평가 결과(2019년)

지역	국가	소요비용		채권회수율	
		2014	2018	2014	2018
EU (11)	불가리아	9	9.0	33.2	37.2
	크로아티아	15	14.5	30.5	34.8
	체코	17	17.0	65.6	67.4
	에스토니아	9	9.0	39.3	40.7
	헝가리	15	14.5	40.2	44.2
	라트비아	10	10.0	48.2	41.1
	리투아니아	10	15.0	43.6	40.6
	폴란드	15	15.0	57.0	60.8
	루마니아	11	10.5	30.7	35.8
	슬로바키아	18	18.0	54.4	48.8
	슬로베니아	4	4.0	50.1	88.7
비EU (6)	알바니아	10	10.0	41.5	44.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	9.0	35.9	38.9
	코소보	15	15.0	36.5	39.4
	마케도니아	10	10.0	44.1	48.0
	몬테네그로	8	8.0	48.4	50.0
	세르비아	20	20.0	29.2	34.5
CIS (6)	아르메니아	11	11.0	37.2	38.2
	벨라루스	22	17.0	37.3	39.6
	조지아	10	10.0	38.7	40.2
	몰도바	15	15.0	29.4	30.9
	우크라이나	42	40.5	8.6	9.6
	러시아	9	9.0	43.0	42.1
중앙아시아 (4)	카자흐스탄	15	15.0	43.3	38.9
	키르기스스탄	15	15.0	19.2	36.2
	타지키스탄	9	9.0	36.9	34.2
	우즈베키스탄	10	10.0	39.9	37.6
아시아 및 아프리카 (5)	중국	22	22.0	36.0	36.9
	캄보디아	28	18.0	8.2	14.5
	라오스	no practice	no practice	0.0	0.0
	베트남	15	14.5	18.6	21.3
	보츠와나	18	18.0	62.7	65.9

주: 점수, 순위, 기초 통계 구성, 지수, 단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ilations, Methodology(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 참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5).

서 9단계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소요일도 9일 축소된 46일로 개선되었으며 비용도 축소되었다. 소요일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진 국가는 라오스로 98일에서 28일로 축소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슬로베니아가 109.5일에서 50.5일, 크로아티아가 72일에서 47일, 그리고 세르비아가 54일에서 21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재산권등록 환경 평가에서 최근 5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조지아의 경우는 재산권 등록절차는 1단계, 소요일 1일, 비용 0으로 이 부문에서 가장 훌륭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5년간 도산처리 환경 평가결과를 보면 체제전환국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캄보디아와 벨라루스의 도산처리 소요비용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슬로베니아의 채권회수율이 50.1%에서 88.7%로 대폭 개선된 것을 비롯하여 폴란드와 체코의 채권회수율도 다소 개선되었다. 체제전환국 중 도산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국가는 슬로베니아이며, 그다음으로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의 도산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

“Doing Business 2019”에서 10개 주요 평가요소의 각 지역별 특징을 비교 분석함에 따라 체제전환국이 지역별로 어떠한 비즈니스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비즈니스 여건의 특징 분석을 위해 각 지역 자체의 특성, 체제전환의 시기 및 방법, 제도 개선 과정, 국별 특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초기조건 측면에서 가장 앞섰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V4

는 가장 빠른 시점에 전면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였고, 체제전환국 중에서 개혁·개방 관련 모든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유럽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EU 가입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가장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V4는 현재 체제전환국 중 소득수준을 비롯한 경제수준이 가장 선진적이다. 1990년대 후반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즈니스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이로 인해 EU 가입이 확정된 이후 가장 많은 FDI가 유입되었다.

그림 2-19. 비셰그라드 4국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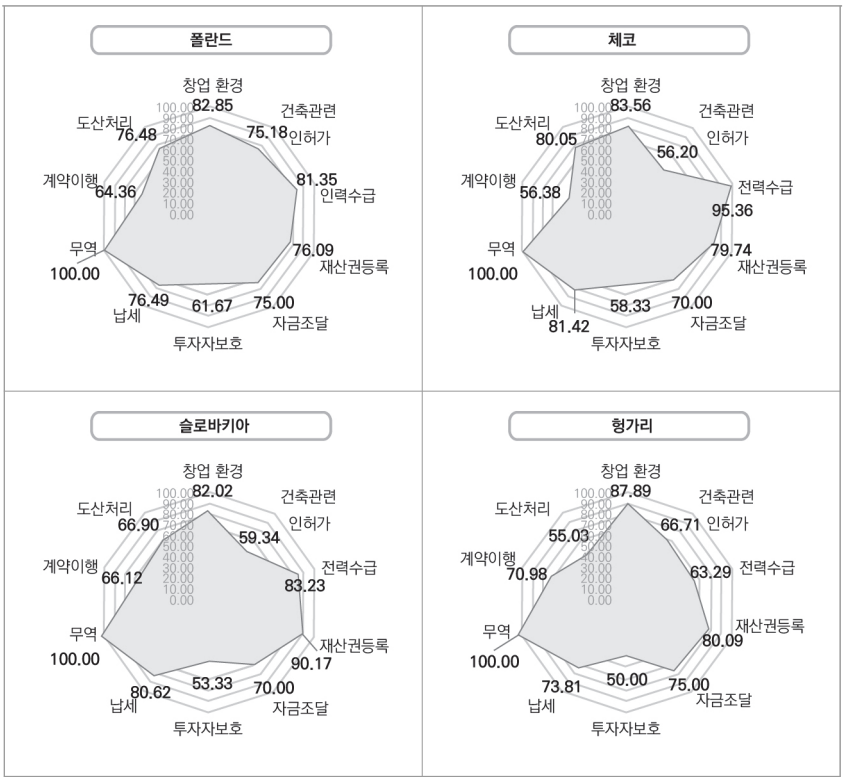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Doing Business의 10개 주요 평가요소 중 V4 국가들은 창업 환경,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납세, 무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기업이 V4에 투자 진출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여건과 V4와 인접 서유럽 국가의 무역 여건이 가장 일찍부터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 여건도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V4 국가는 상대적으로 훌륭한 편이며, 체코와 폴란드는 도산처리 여건도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20. 발트 3국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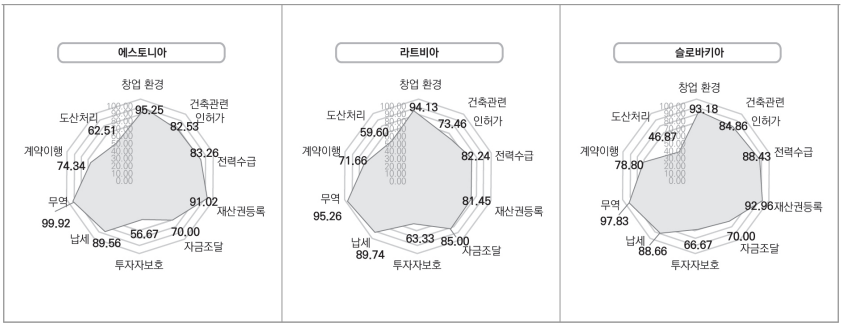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과거 15개 구소련 구성원이었던 발트 3국은 연방 탈퇴 선언과 함께 서방세계 편입을 위해 EU 가입에 주력하였다. V4 국가보다는 늦게 체제전환과 EU 가입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개혁의 추진 속도나 성과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V4처럼 제조업 기반을 구축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발트 3국은 극단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비즈니스 여건 개선에 집중한 결과 2004년 EU 가입 시점에는 이미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창업 환경, 전력수급, 재산권등록, 납세, 무역 등은 Doing Business로부터 거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건축 관련

인허가, 자금조달 및 계약이행 여건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EU 가입 초기에 형성된 훌륭한 비즈니스 환경에 힘입어 발트 3국은 최근까지도 꾸준한 FDI 유치에 매우 성공적이며, 이는 경제성장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림 2-21. 발칸 EU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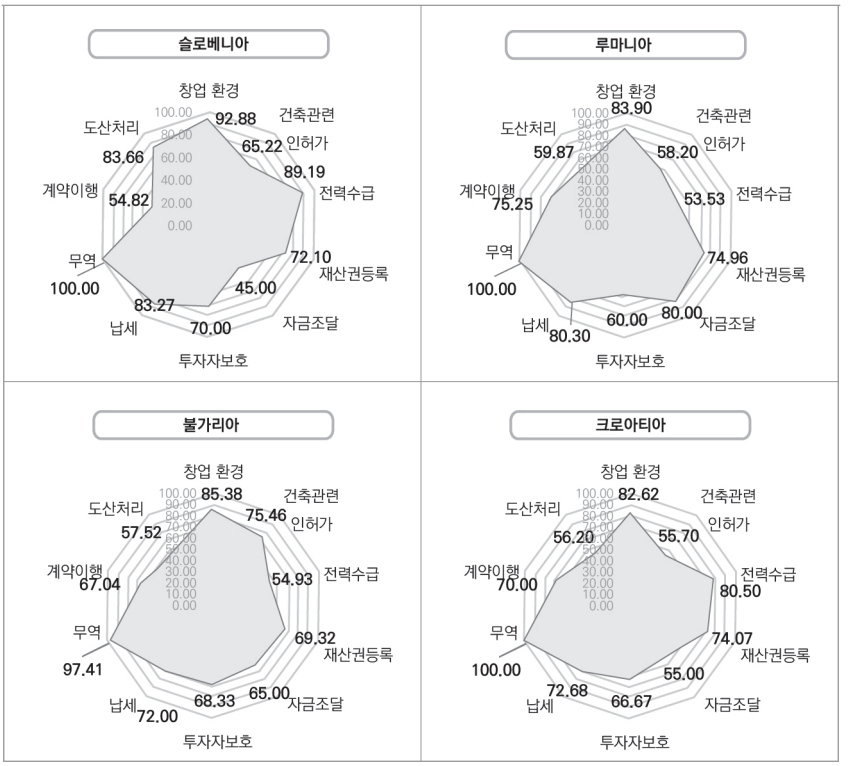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발칸 지역의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은 초기조건, 체제전환 시점, 개혁 · 개방 정도 및 성과 등이 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 초기에 소득수준이 제일 높았던 슬로베

니아는 발칸 국가 중 EU 가입 준비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져 전술한 V4와 함께 체제전환 선도그룹인 중부유럽 5개국으로 분류된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V4와 비슷한 시기에 EU 가입 준비를 시작했으나,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부패 만연으로 EU 가입이 2007년으로 연기되었고, 이후 EU 가입에 따른 경제개발 성과가 부진한 편이다. 2013년 7월에 28번째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신규 회원국으로 개혁 · 개방과 인프라 구축 등을 부지런히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비즈니스 환경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슬로베니아는 창업 환경, 전력수급, 납세, 무역, 도산처리 등의 구성 요소가 비교적 훌륭하며, 무역은 100점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창업 환경과 무역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루마니아의 자금조달과 납세, 불가리아의 투자자보호도 비교적 양호하나 여타 구성 요소에서는 다소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창업 환경, 전력수급, 무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전쟁과 내전, 극심한 민족 및 종교 갈등을 경험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 등은 아직 EU 회원국이 아닌 가입후보국이다. 이 가운데 마케도니아가 최근 국명을 북마케도니아로 변경, 그리스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EU 가입 준비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Doing Business 10위의 마케도니아는 90점 이상을 기록한 창업 환경과 무역은 물론 건축 관련 인허가, 전력수급,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납세 등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최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데, 창업 환경과 무역 부문은 물론 몬테네그로의 자금조달과 세르비아의 건축 관련 인허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일정부분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전히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림 2-22. 발칸 비EU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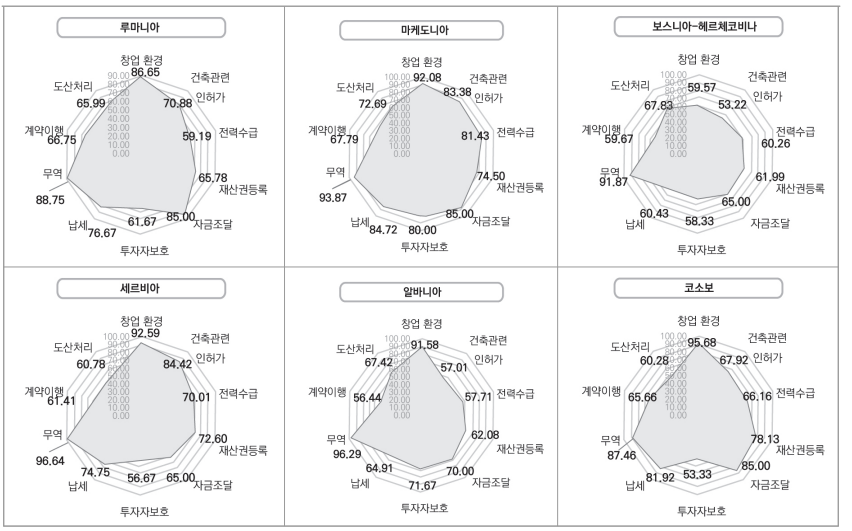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구소련 해체 이후 발트 3국을 제외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나머지 12개국으로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은 조지아 등의 탈퇴로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분류이지만 아직도 지역구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CIS 국가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등은 EU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흑해를 사이에 두고 EU와 인접해 있다. 자원부국이며 CIS 지역 패권국인 러시아는 창업 환경, 전력수급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납세 등에 있어서도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러시아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비즈니스 여건도 창업 환경을 제외하고는 좋지 않다. 오히려 나머지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조지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몰도바 등의 비즈니스 환경이 우크라이나보다 양호한 편이며, 특히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는 조지아는 2018년 기준 Doing Business 6위로 체제전환국 중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하다. 조지아는 창업 환경, 재산권 등록, 무역 부문에서 90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력수급,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납세 등의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2-23. CIS 유럽 인접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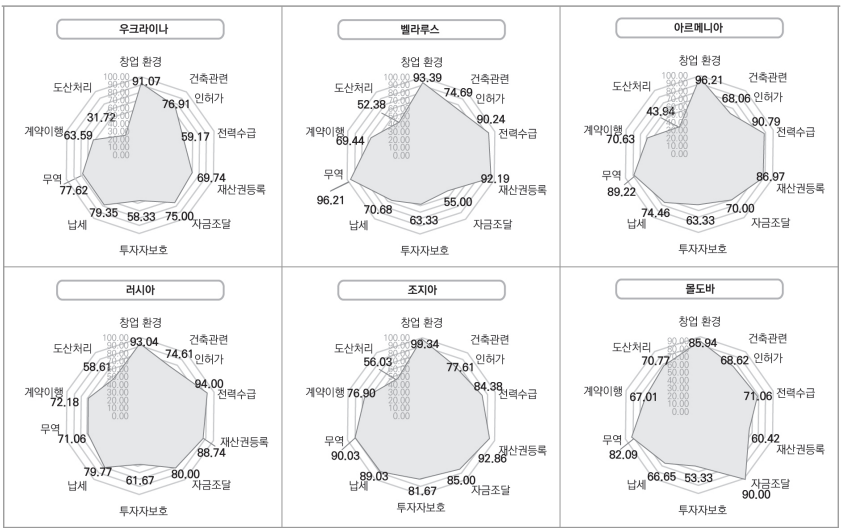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은 자원부국과 자원빈국,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등이 혼합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원부국이고 소득수준이 제일 높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경제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비교적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Doing Business 28위를 기록한 카자흐스탄은 창업 환경,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계약이행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들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림 2-24. CIS 중앙아시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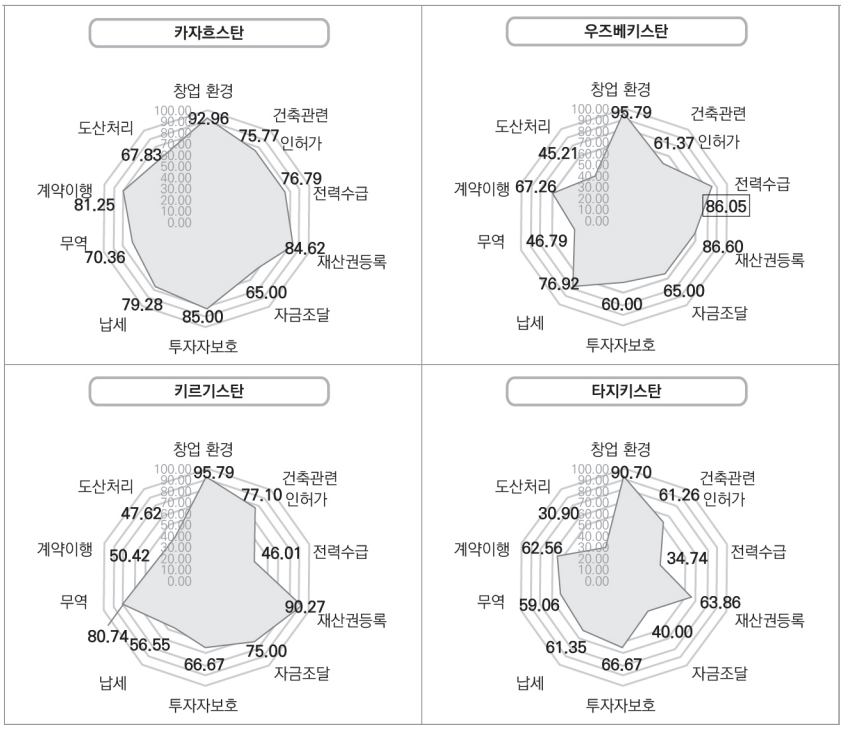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근 5년간 중국의 비즈니스 여건 개선이 가장 두드러지며, 2005년 대비 베트남의 여건 개선도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여전히 비즈니스 여건이 열악한 국가 군에 속해 있다. 중국은 창업 환경과 전력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그리고 재산권 등록, 무역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창업 환경과 전력수급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비즈니스 여건을 보여주고 있고 건축 관련 인허가 여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여건이 열악하며, 특히 도산처리, 투자자 보호, 계약이행 부문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25. 동아시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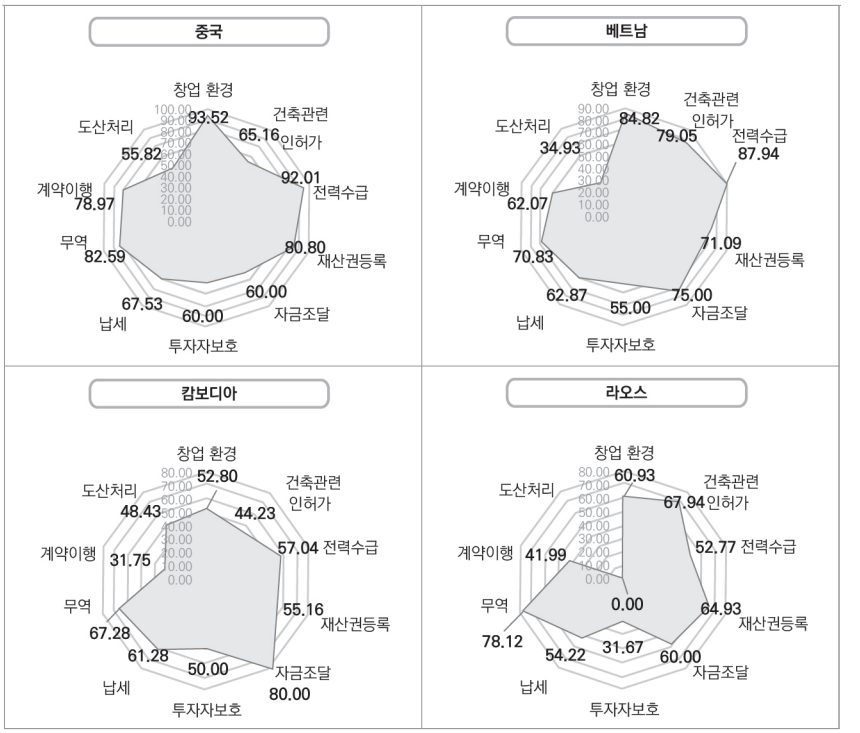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3. 소결

가. 체제전환 선도 그룹으로부터의 경험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체제전환국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개혁 및 개방을 추진,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주로 추진한 반면, 중동부 유럽(CEE)[43] 국가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들어 구체제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혁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헝가리가 1989년 CEE에서 처음으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뒤를 이어 체제전환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동(東)발칸지역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후발 주자로 체제전환 대열에 뛰어들었다.

어느덧 CEE 지역의 구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단행한지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성공적인 체제전환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44]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 체제전환의 후유증으로 급격한 경제침체를 경험했던 CEE 국가들은 1994년 헝가리와 폴란드를 시작으로 EU 가입 신청을 통해 이와 같은 침체기를 벗어나려 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들어 실제로 경제상황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거하여 CEE 국가들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전후로 하여 전면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추진되었다. 또한 CEE 8개국은 2004년 공식적인 EU 가입을 전후로 체제전환 이후 최고의 경기호황기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체제전환 이후 CEE 국가들의 경제성장 경로는 EU 가입 과정과 밀

---

43)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동서냉전시대의 정치적 산물로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주 모호한 지역 분류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CIS 지역을 제외한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이라는 지역구분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를 포함하기도 하며, 터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부유럽 현지인들에게 동유럽이라는 표현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CEE 국가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8개국, 2007년 1월 EU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2개국, 2013년 7월 가장 최근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발칸지역의 6개국을 포함하여 총 17개국이다. 박해선, 이철원, 이상직(2009), pp. 251~277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정의를 한 바 있다.

44)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8개국이 지중해 연안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와 몰타와 함께 2004년 5월에 정식으로 EU에 가입했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 1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EU에 가입,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CEE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코메콘(COMECON)[45]의 해체로 체제전환기동안 산업기반이 급격하게 붕괴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붕괴된 산업의 재건을 위해 서구 경제권 편입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즉 CEE 국가의 산업 재건 조치들은 EU 가입을 위한 첫 걸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 이후 CEE 국가들의 거시경제변화를 성장 경로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분석대상 범위는 모범적인 체제전환 및 경제개혁 추진으로 2004년 EU 가입에 성공한 선도그룹으로 한정하여 그 경험을 중점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CEE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체제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한 1990년대 중반과 CEE 국가들의 2004년 EU 가입을 전후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의 EU 가입이 10년을 맞이하는 2014년에 다시 다각적으로 조명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연구로 Friesenbichler, Böheim, and Laster(2014)를 들 수 있다.[46] 이 논문에서는 중동부유럽 및 중앙아시아 등 체제전환국에서 시장의 경쟁 정도가 그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체제전환의 진척도와 제도적 여건 차이가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1980년대 말 헝가리로부터 시작된 CEE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EU 시장 편입이 궁극적인 목표였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개혁과 개방은 EU 가입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EU 가입 과정에서 확립된 선진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CEE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선진경제 제도의 구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45) 코메콘은 1949년 소련의 주도하에 결성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경제통합 조직이다. 그러나 코메콘은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에 불어 닥친 민주화 및 개혁·개방 열풍으로 와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1년 6월에 공식 해체되었다. 박해선, 이철원, 이상직(2009), p. 255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상기 정의 재인용.

46) Friesenbichler, Böheim, and Laster(2014).

가속화되었다. 즉 CEE 선도그룹 국가들은 EU 가입 협상이 시작된 1997년 무렵부터 제도의 선진화를 빠르게 추진하였으며,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CEE 선도그룹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후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가장 기대한 것은 자국 경제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즉 거대 EU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비즈니스 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을 크게 기대하였다. FDI 유입 급증과 교역증대 등과 같은 편익들은 2004년 공식적인 EU 가입 이전인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미 실현되기도 하였다.

표 2-12. 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경로별 평균 1인당 GDP

(단위: US 달러)

국명		체제전환 (1991~95년)	EU 가입 협상 (1996~2002년)	EU 체제 확립 (2003~07년)
선도그룹	체코	3,650	6,055	12,527
	에스토니아	1,506	4,065	11,035
	헝가리	3,766	4,918	10,861
	라트비아	1,411	3,043	7,797
	리투아니아	1,227	3,070	7,999
	폴란드	2,518	4,486	8,068
	슬로바키아	2,668	4,028	9,431
	슬로베니아	6,258	8,894	18,384
후발그룹	루마니아	1,225	1,722	4,855
	불가리아	1,250	1,572	3,705
	크로아티아	3,759	5,257	10,448
EU 가입 후보그룹	알바니아	431	1,095	2,72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n.a.	1,422	3,174
	코소보	2,653	1,421	2,256
	마케도니아	1,735	1,858	3,042
	몬테네그로	n.a.	1,736	3,997
	세르비아	2,987	1,822	3,679

자료: IHS Markit,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Updated: 15 September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참고하여 저자 측정.

선도그룹과 후발그룹의 성과 비교를 통해 경제 개방과 개혁 과정이 이후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47] 즉 경제의 개방도가 높은 발트 3국과 중부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표 2-12]에서와 같이 1990년대 초반 1인당 GDP가 유사했던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오늘날의 경제적 명암에서도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이 그 후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체제전환 후발 그룹으로부터의 시사점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은 누적 기준으로는 내수시장규모나 부존자원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까지 꾸준하게 FDI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최근 들어 FDI 유입이 본격화된 국가는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비즈니스 환경이 탁월한 경우도 많다.

누적 기준 FDI 유입규모 면에서 중동부유럽(CEE) 국가 중에는 폴란드, 유럽계 CIS 국가 중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등이 대표적으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권역별 혹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내수시장이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발트 3국과 조지아, 마케도니아의 경우는 FDI 누적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체제전환 이후 최근까지 꾸준하게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거나 최근 들어 FDI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체제전환국이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환경에 바탕을 둔 국가 순위 Ease

47) 김홍종, 이철원(2007), p. 2, p. 4, p. 11에서 CEE 선도그룹과 후발그룹으로 구분하는 유사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할 것.

of doing Business에서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 조지아(6위), 마케도니아(10위), 리투아니아(14위), 에스토니아(16위), 라트비아(19위) 등 총 5개국이 체제전환국이다. 국가 랭킹이 상위 20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는 국가는 대체로 전력분배 사업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전 시 빠르고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제 인프라의 수준이 높고 법제 기관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또한 채권자가 결정 채택에 반대하거나 채권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급불능 소송수속 시 채권자에게 강력한 세이프 가드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 자동화가 일반적이며, 다른 국가 평균(200일)에 비해 해당 국가의 판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배 빠른 95.6일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국가는 강력한 공시 의무 규정 제정을 통해 법인 자산이 개인 수익으로 불법 이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체제전환을 통한 FDI 유입에 있어 시장규모 면에서는 인접한 중국과 경쟁이 어려우며, 자원개발 가능성에 있어서도 러시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작고 자원개발 가능성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제고와 인근 시장으로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 개선한 상기 5개국 사례에 본 연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5개국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북한이 개방 계획을 가지고 있는 특구 간에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비교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수시장이 매우 협소하나 인근 대규모 시장과 인접해 있으며, 인접 강대국과 갈등 혹은 고립 상태에서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선택한 마케도니아와 조지아의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시장개방과 비즈니스 여건 대폭 개선이라는 정책적 카드를 선택해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FDI 유입에 성공해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마케도니아와 조지아는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 채택 및 시행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6. 최근 5년간 마케도니아의 비즈니스 환경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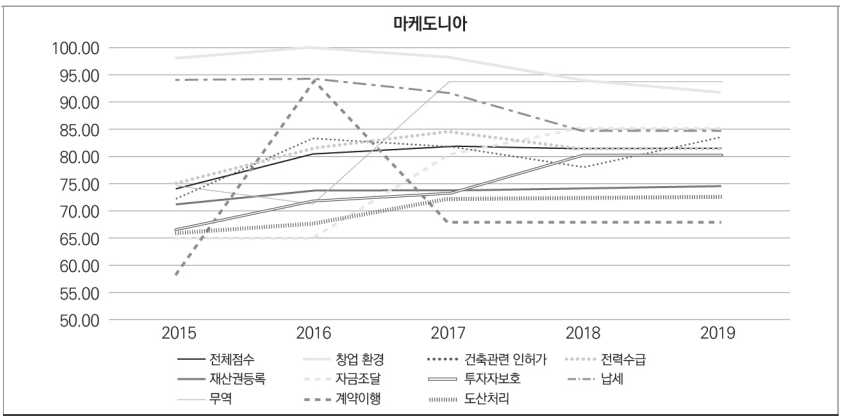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점수	74.11	80.18	81.74	81.18	81.55
창업 환경	98.08	99.86	98.14	93.94	92.08
건축관련 인허가	72.30	83.14	81.71	78.01	83.38
전력수급	74.94	81.33	84.51	81.42	81.43
재산권등록	71.27	73.61	74.05	74.49	74.50
자금조달	65.00	65.00	80.00	85.00	85.00
투자자보호	66.67	71.67	73.33	80.00	80.00
납세	94.17	94.17	91.67	84.72	84.72
무역	74.43	71.39	93.87	93.87	93.87
계약이행	58.31	93.87	67.79	67.79	67.79
도산처리	65.93	67.73	72.38	72.54	72.69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마케도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무역 측면에서 환경 개선이 두드러졌다. 즉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서방의 대규모 FDI 유입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상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EU와의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 결과는 Ease of doing Business 평가에서 81위를 기록했던 2005년도 마케도니아의 1인당 명목 GDP는 3,072달러에 불과했으나, 30위를 기록

한 2014년도에는 5,499달러로, 그리고 10위를 기록한 2018년도에는 6,100달러로 마케도니아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림 2-27. 최근 5년간 조지아의 비즈니스 환경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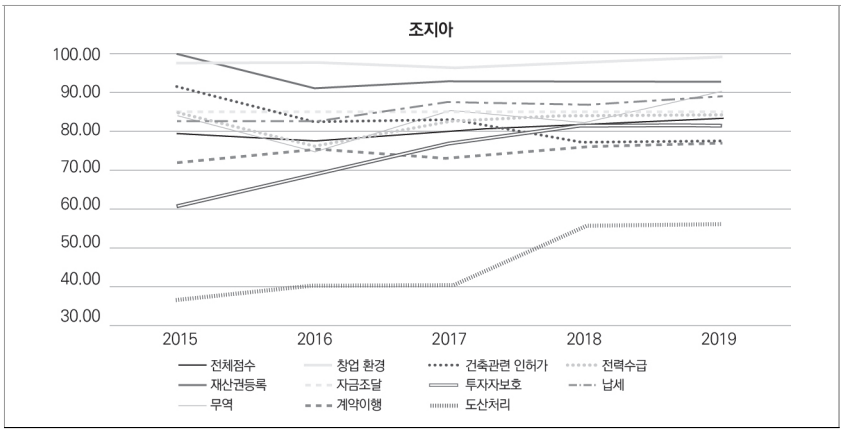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점수	79.46	77.45	80.20	82.04	83.28
창업 환경	97.73	97.76	96.13	97.84	99.34
건축관련 인허가	91.44	82.77	82.84	77.57	77.61
전력수급	84.69	76.15	82.73	84.32	84.38
재산권등록	99.88	91.16	92.85	92.85	92.86
자금조달	85.00	85.00	85.00	85.00	85.00
투자자보호	60.83	68.33	76.67	81.67	81.67
납세	82.76	82.76	87.43	87.14	89.03
무역	84.02	75.06	85.15	82.43	90.03
계약이행	71.82	75.31	73.21	75.97	76.90
도산처.리	36.48	40.24	40.02	55.59	56.03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과거 러시아 중심의 CIS 일원국 중 하나였던 조지아는 남오세티아의 소수민족과 러시아인 집중 거주지역인 압하지아를 두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는 등 오랫동안 러시아와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러시아

중심의 고립에서 조지아가 선택한 경제발전 전략은 CIS 탈퇴, EU 및 미국과의 협력 강화, 비즈니스 환경 대폭 개선이었다. 이를 통해 조지아는 서방의 FDI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제반 경제발전 전략 추진을 통해 Ease of doing Business 평가에서 100위였던 조지아의 2005년도 1인당 명목 GDP는 1,647달러에 불과했으나, 15위로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된 2014년도에는 4,442달러까지 향상되었다. Ease of doing Business 평가 6위로 체제전환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2018년도 조지아의 1인당 명목 GDP는 4,346달러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자국화폐 평가절하라는 환율 변동의 영향이 컸으며 최근 들어 5%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거듭 기록하고 있다.

그림 2-28. 마케도니아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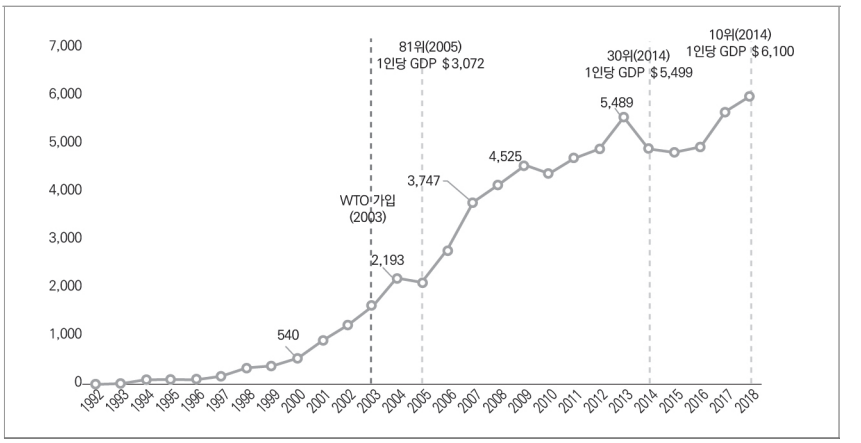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9. 마케도니아의 FDI 유입 현황(유량)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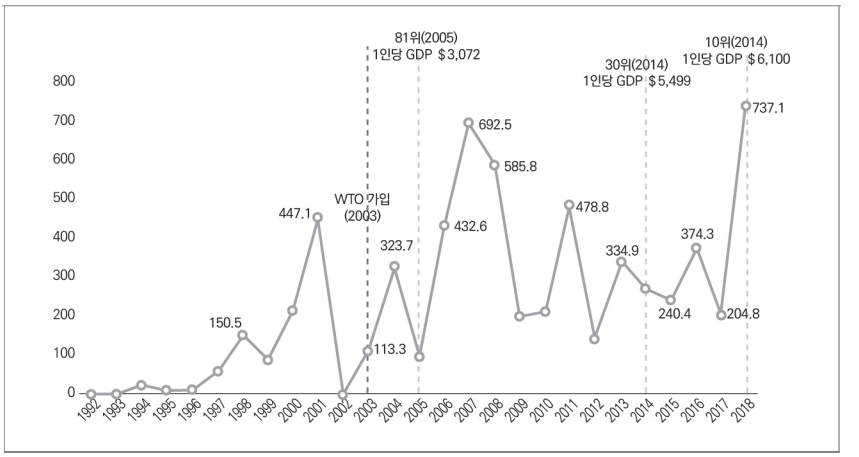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0. 조지아의 FDI 유입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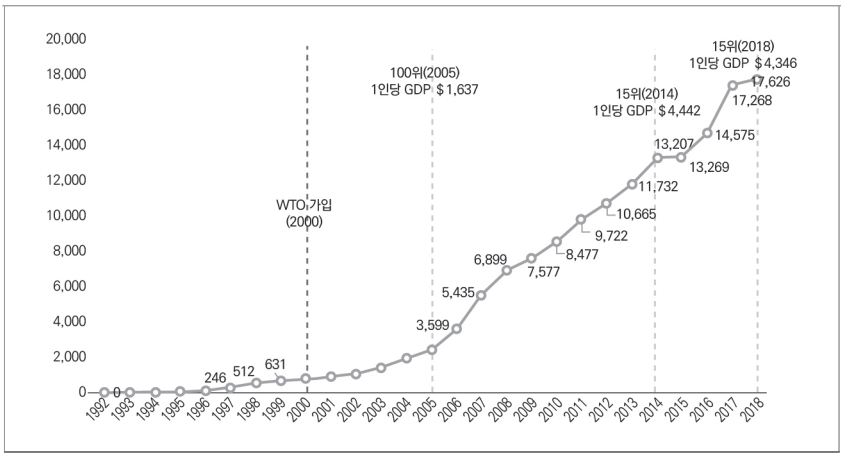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1. 조지아의 FDI 유입 현황(유량)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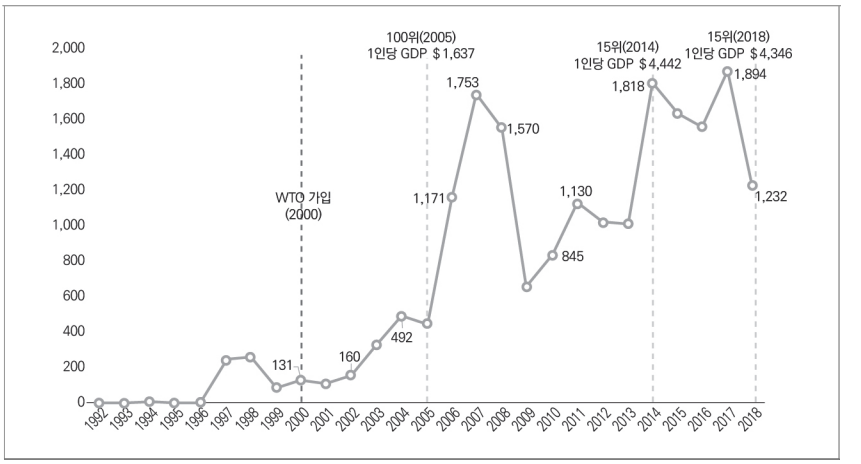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19. 8. 16)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체제전환국의 투자 유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과 투자 환경 분석에서 투자 유치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V4와 발트 3국 등 체제전환 선도그룹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도 1991~2007년의 시기에만 국한된 평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헝가리를 비롯하여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선도그룹 국가에도 FDI 유입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어 이를 현재진행형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개혁 부진과 부패 만연 등으로 상대적으로 뒤처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실패사례로 단정짓는 것도 1991~2007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서만 가능한 분석 결과이다. 반면에 체제전환 후발 그룹 중에서도 마케도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은 최근 10년간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적이며,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도 있다.

V4와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 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반면교사의 예로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잦은 개혁의 후퇴 및 지연과 함께 부패, 거버넌스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결정적인 투자위험요인으로 작용, FDI 유입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 · 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독립적인 FDI 유치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의 아웃라이어가 존재하지만, 비즈니스 환경 개선은 대체로 체제전환국의 투자 유치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순위가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일수록 누적기준 연평균 FDI 유치규모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번거로운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에 대한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전술한 제2절의 '다. 체제

그림 2-32.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도와 누적 기준 FDI 유입 실적의 관계

(단위: %,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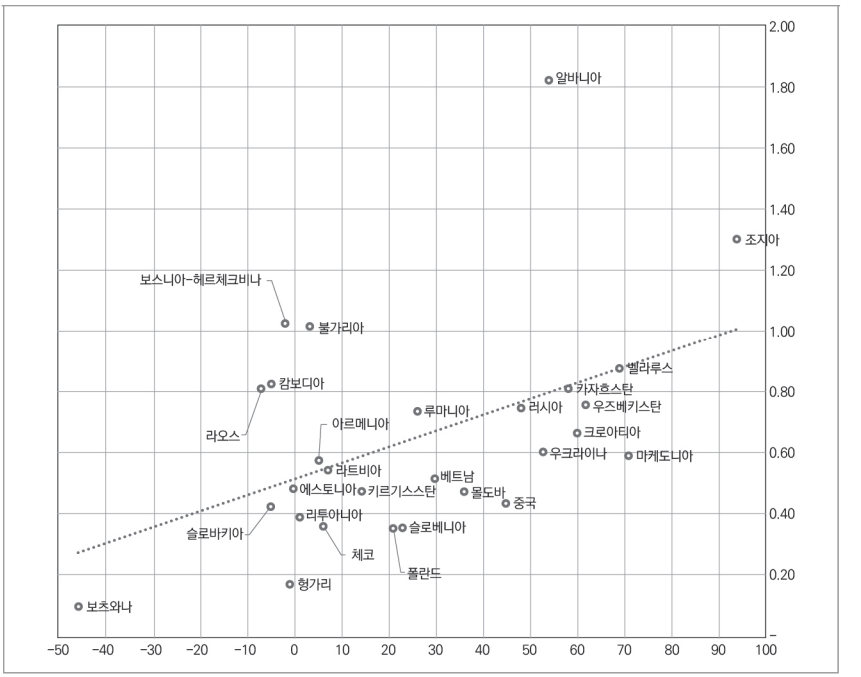

주: 세로축(y)은 2000~18년 누적기준 FDI 유입규모 연평균 증가율(%)이고 가로축(x)은 2005년 대비 2018년 비즈니스 환경 순위 개선 정도임(예를 들면, 2005년 100위였던 국가가 2018년 50위로 개선되었다면 50단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6-2019(검색일: 2019. 11. 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2019(검색일: 2019.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평가에서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많다. 중동부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 국가에 해당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

의 경우 개혁 · 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자원 부존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일례로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EU와의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그림 2-6 참고). 베트남의 경우는 2006년 12월 미국 정부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였다(그림 2-17 참고).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사례에서 초기에는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폭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었고 그 반대가 가장 대표적인 실패요인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새롭게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개혁 · 개방의 속도와 폭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헝가리는 지나친 대외의존도와 과도한 정부부채 등으로 인해 2009년도에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서방 은행이 거시경제에 불안정성을 보인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헝가리는 IMF 체제에서 오랫동안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며, FDI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 다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우크라이나는 밀접한 경제관계에 있던 러시아와의 정

치 · 군사적 대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FDI 유치면에서도 최근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밀접한 경제관계에 있는 인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기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가. 분석자료 및 FDI 유입 결정변수 선정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연구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FDI 총유량(total flow)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법이나, 체제전환국(즉 유입국)과 투자국 간의 쌍방향 직접투자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Gravity 접근법을 흔히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Gravity 접근법을 사용하여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48] 그리고 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14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선택하였다. 체제전환국들이 체제전환에 접어드는 시점을 구소련이 해체된 1992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설명변수로 활용하고자하는 일부 변수의 시작시점이 1995년이기 때문에 1995년을 불가피하게 분석의 시작시점으로 선택하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일부 설명변수의 시계열이 2014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2014년을 분석의 마지막 시점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려는 중력방정식 모형은 식(1)과 같다.

$$FDI_{ij,t} = f\left(Gravity_{ij,t}, E_{i,t}, S_{i,t}, G_{i,t}\right) \qquad \text{식(1)}$$

여기서 $FDI_{ij,t}$는 t년도에 직접투자국인 j국에서 체제전환국인 i국으로 유입된 FDI 유량이며, OECD 직접투자통계에서 확보한 1995~2015년간의 자료들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설명변수의 누락으로 인하

48) Bevan and Estrin(2004)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중력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요인을 분석하여 중력변수들이 FDI 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본 연구와 다르게 체제전환국의 구체적인 체제전환지표를 통제하는 대신 체제전환국의 신용등급을 제도변수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변수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여 분석대상에 포함된 체제전환국은 24개국이다. 그리고 $E_{i,t}$, $S_{i,t}$, $G_{i,t}$는 각각 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전환국 i의 경제적 요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 지리적 요인의 벡터이다. $Gravity_{ij,t}$는 중력방정식 변수의 벡터로서 양 국가 GDP의 로그값, 두 국가간의 거리, 두 국가간의 종교적 동질성 변수를 포함한다.

Gravity 접근법은 투자국과 유입국의 개별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 간 직접투자에 대한 통계 자료가 요구된다. OECD의 직접투자 데이터는 OECD 회원국과 해당국의 상대국별로 FDI 유입량과 유출량을 공개하고 있어서 Gravity 모형을 적용한 분석에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국가별 FDI 유량통계를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Gravity 모형은 양국가 간의 쌍방향 교역량이나 FDI 유량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체제대상국으로의 FDI 유입 요인을 분석하며, 체제전환국에서 OECD 국가로의 직접투자는 규모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쌍방향 FDI 유량 대신 OECD 국가가 체제전환국에 투자한 FDI 유량만을 이용한다.[49] 한편 OECD의 직접투자통계는 2013년까지는 BMD3(Benchmark Definition 3rd edition)에 따라 분류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BMD4(Benchmark Definition 4th edition)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까지는 BMD3에 따른 직접투자통계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BMD4에 따른 직접투자통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2014년을 기준으로 통계편제상의 격차로 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편재상의 차이로 인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1)에 나타난 것처럼 Gravity 모형에서는 양국의 경제규모와 물리적 거

49) 쌍방향 FDI를 종속변수로 두고 중력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여도 본 연구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리가 양국간 교역과 FDI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투자대상국인 체제전환국 i와 투자국인 OECD 국가 j의 GDP (GDP_i, GDP_j)와 물리적 거리($dist_{ij}$)를 로그로 변환한 값을 통제변수로 이용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문화적 유사성을 통제하기 위한 종교적 공통성 ($comrelig$)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Head, Mayer, Ries(2010)에서 분석자료로 구축한 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CEPIL gravity dataset에서 차용하였다. CEPIL gravity dataset에 포함된 양국 GDP는 Worldbank의 자료와 동일하다. 특히 투자대상국인 체제전환국의 GDP는 Gravity 변수이기도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전환국의 경제규모를 통제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 및 제도적 특징은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각 체제전환국의 정확한 체제전환 수준 및 제도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체제전환국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의 제도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체제전환 지표 및 체제전환 보고서이다. EBRD는 1984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구소련 소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여 체제전환 보고서(Transition Report)로 발표하고 있다. 체제전환 보고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제전환 지표(Transition Indicator)는 체제전환국의 사적영역에 있어서의 자유화, EBRD의 체제전환 지표, 체제전환 시적영역의 자유화, 가격 자유화, 정부 및 기업 개혁, 경쟁정책, 무역 및 외환 시스템 자유도 등의 6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

한 바 있다.[50] 또한 EBRD는 체제전환지표와 더불어 체제전환국의 구조변화지표(Structural change indicators)를 2010년까지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표는 기업부문, 시장 및 교역부문, 금융부문, 인프라부문 등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EBRD가 발표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세부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EBRD의 체제전환지표를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6개 체제전환지표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경제적 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6개 체제전환지표를 모두 사용하는 대신 이들 중에서 다른 기관의 통계에서 유사변수를 찾기 어렵고 다른 경제변수와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가격 자유화 수준($pricelib_i$)과 경쟁정책수준($competition_i$) 등 2가지 지표를 EBRD의 체제전환지표에서 차용하였다. EBRD 체제전환보고서의 대상국이 유럽 및 구소련 소속 중앙아시아국가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제전환지표는 2014년까지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분석기간도 2014년을 종료시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가격 자유화 수준과 경쟁정책수준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EBRD의 체제전환지표의 구분에 근거하되, 세계은행과 다른 기관의 지표들로부터 해당 부문을 반영할 수 있는 유사지표를 발굴하여 이용하였다. 먼저 체제전환국의 민간영역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GDP 대비 민간신용의 규모(%)를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dcreditpriv$). 체제전환국에서 사유화(privatization)가 진행이 되면, 민간신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변수는 시장의 사유화 진행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제전환국의 시장구조와 무역 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로서는 GDP 중 제조업의 비중($manufacturing$)과 무역개방도($trade$)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무역개방도

50) Falcetti, Lysenko, and Sanfey(2006); Nath(2009); Shukurov(2016); Sattarov(2012).

표 3-1. EBRD의 지표

구분	세부지표
민간	- Privatization revenues(cumulative, in percent of GDP) - Private sector share in GDP(in percent) - Private sector share in employment(in percent) - Budgetary subsidies and current transfers(in percent of GDP) - Share of industry in total employment(in percent) - Change in labour productivity in industry(in percent) - Investment/GDP(in percent) - EBRD index of small-scale privatization - EBRD index of large-scale privatization - EBRD index of enterprise reform
시장 및 무역	- Share of administered prices in CPI(in percent) - Number of goods with administered prices in EBRD-15 basket - Share of trade with non-transition countries(in percent) - Share of trade in GDP(in percent) - Tariff revenues(in percent of imports) - EBRD index of price liberalization - EBRD index of forex and trade liberalization - EBRD index of competition policy
금융	- Number of banks(foreign-owned) - Asset share of state-owned banks(in percent) - Asset share of foreign-owned banks(in percent) - Non-performing loans(in percent of total loans) -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in percent of GDP) - Domestic credit to households(in percent of GDP) - Domestic credit of which mortgage lending (in percent of GDP) - Stock market capitalization(in percent of GDP) - Stock trading volume(in percent of market capitalization) - Eurobond issuance(in percent of GDP) - EBRD index of banking sector reform - EBRD index of reform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인프라	- Fixed-line(mobile) penetration rate(per 100 inhabitants) - Internet users (per 100 inhabitants) - Railway labour productivity(2000=100) - Residential electricity tariffs(USckWh) - Average collection rate, electricity(in percent) - GDP per unit of energy use(PPP in US dollars per kgoe) - EBRD index of infrastructure reform - EBRD index of Electric power - EBRD index of Railways - EBRD index of Roads - EBRD index of Telecommunications - EBRD index of Water and waste water

자료: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는 각국의 GDP 대비 무역량(%)이며, 각 체제전환국의 시장 개방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체제전환국의 인프라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보급률($mobile$)을 선택하였다.[51] 해당 변수들은 EBRD의 각 항목에 유사한 지표가 있는 변수들이며, 세계은행의 세계발전 지표에서 확보한 자료들이다. 추가적으로 각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인플레이션율($inflation$)을 이용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금융시장제도를 반영하는 지표로는 미국 비영리재단인 Heritage 재단의 경제자유 지표(Economic Freedom Index) 중 금융 자유도($financial_freedom$)를 이용하였다. 해당 지표는 각국 정부에 의한 금융규제 범위, 금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 정보, 신용배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전수준, 해외경쟁에 대한 개방수준 등을 반영하여 Heritage 재단이 0~100까지 부여한 지표이다. 따라서 다른 민간기관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성격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Heritage 재단의 경우 자유도 지표 자체는 주관적이지만, 세부항목 중 객관적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등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Heritage 재단의 지표는 선행연구에서도 체제전환 지표로 활용된 바 있다.[52] 세계은행이나 IMF가 발표하는 자료 중에서는 유사한 지표가 없으며, 금융시장의 규모 등에 관한 다른 지표의 경우 체제전환국에 대한 관련 데이터 누락치가 너무 많아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Heritage 재단의 경제 자유도 지표는 시계열이 데이터의 기간이 길며, 조사대상국이 많은 장점도 있다. 위의 요인 외에도 체제전환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과세부담이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역시 Heritage 재단의 경제 자유도 지표 중 세부항목인 과세부담 지표(tax_burden)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53] Heritage 재단의 과세부담

51) 체제전환국에 대한 전통적인 인프라 변수들은 자료의 부족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으며, 과거에 많이 활용되던 유선전화보급률은 1990년 중반이후 무선전화가 보급되면서 유선전화보급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무선전화보급률도 EBRD의 인프라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52) Falcetti, Lysenko, and Sanfey(2006)와 Tinin(2013) 등은 Heritage 재단의 Economic Freedom Index를 체제전환국의 체제변화 지표로 활용한 바 있다.

53) World Bank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누락치가 너무 많아서 Heritage 재단의 지표(Index of Economic Freedom)를 활용하였다(검색일: 2019. 11. 17).

지표는 각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GDP 대비 총과세액을 각각 1/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0~100의 범위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기업에 대한 과세부담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각국의 전반적인 과세부담 수준을 반영한 지표의 성격을 가진다.

표 3-2. Economic Freedom Index의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제도 및 정부 평가	- 재산권(property rights) - 정부의 청렴도(government integrity) - 사법제도의 효과성(judicial effectiveness - 과세부담(tax burden) -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 재정건전성(fiscal health)
자유도 평가	- 기업 자유도(business freedom) - 노동 자유도(labor freedom) - 통화정책의 자유도(monetary freedom) - 무역 자유도(trade freedom) - 투자 자유도(investment freedom) - 금융 자유도(financial freedom)

자료: Heritage Foundation(2019),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한편 유럽의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EU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체제전환국들이 EU에 가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EU)를 추가하여 각국이 EU에 가입함으로써 FDI 유입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통제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과정에서 체제전환국들은 WTO에 가입하여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되었는데, WTO 가입으로 인한 FDI 유입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역시 WTO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WTO)를 추가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제전환국들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FDI 유입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적 더미($centralasia$)를 통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지리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나아가 유럽 체제

전환국 중 일부는 거대 선진경제권인 EU에 맞닿아 있으며, EU와 비EU 국가 간의 경계는 일부 체제전환국가가 EU에 가입함으로써 확대된 바 있다. EU와 접경여부가 체제전환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U 접경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EUboarder$)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54] 그리고 체제전환국 중 일부는 내륙국이며, 일부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해안국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해당 국가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안선 유무[55]를 더미변수($ocean$)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변수들은 EBRD에서 차용한 체제전환지표들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그리고 EBRD의 체제변환변수들도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지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출처 및 제도 변수간 상관관계는 [부록 표 A3](변수목록)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인 체제전환국의 특성상 미비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에 한계가 있다. 특히 90년대에 있어 A4나 발트 3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체제전환국들의 자료는 누락된 것이 많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못한 일부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은 많은 연구들에서 FDI 유입의 설명변수로 활용되는 변수이지만 1990년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관측치에 누락이 많아서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서는 제외하였다.[56] 체제전환국에 대한 비용절감형 FDI 유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면 해당 변수가 필수적이겠지만, 제

54) 다른 지리적 변수와 달리, EU 접경여부 변수는 EU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시간별로 변화가 발생하는 변수이다.

55) 카스피해는 인접국들간에 바다인지 호수인지 등 바다와 호수의 개념 규정상의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카스피해를 호수로 간주하고 있다.

56) 임금변수의 대용변수로서 1인당 소비지출을 구하여 설명변수에 포함시켜보았지만, 다른 경제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최종적으로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도적 요인에 의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임금변수를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가. 전 기간: 1995~2014년

아래의 [표 3-3]은 중력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1995~2014년 전체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결정 요인을 추정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각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모형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정태적 패널분석 모형이 아닌 동태적 패널분석 모형인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57] 그리고 Arellano-Bond 검증(1991) 결과는 시스템 GMM 모형이 적합한 분석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58] 한편 FDI 유입규모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시점의 해당 체제전환국 경제수준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95~99년 평균 1인당 GDP가 2,000달러 이상인 11개국을 고소득 체제전환국[59]으로 묶고, 나머지 체제전환국들을

57) 동태적 패널분석 방식은 체제전환국의 FDI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 예를 들어, Cazzaillian and Olszewski(2012)는 체제전환국의 금융부문 FDI와 비금융부문 FDI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차분 GMM 모형을 활용했으며, Cartensen and Toubal(2004)은 CEE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게 시스템 GMM을 이용하고 있다. Riedl(2010)도 EU 가입 체제전환국의 서비스부문 FDI 유인을 분석하면서 시스템 GMM 모형을 활용하였다.

58) 본 연구에 사용된 9개의 분석모형에 대한 Arellano-Bond 검증의 결과는 부록 A4에서 보여주고 있다. 부록 A4가 보여주는 것처럼 9개 모형 중 7개 모형에 대해서는 시스템 GMM 모형이 더 적합한 분석모형이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시스템 GMM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분석모형의 결과를 함께 보고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Hausman 검증의 결과로 선택한 임의효과 패널분석의 결과는 시스템 GMM의 분석결과와 큰 틀에서 동일하다.

59) 본 연구 분류 기준에 따른 고소득 체제전환국은 V4국(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11개국이다.

표 3-3.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14년

	전 국가	고소득	저소득
$\ln(inflow_i)_{t-1}$	0.235*** (0.000)1)	0.206*** (0.000)	0.392*** (0.000)
$\ln(GDP_i)$	0.650*** (0.002)	0.847*** (0.003)	0.126 (0.634)
$\ln(GDP_i)$	0.337** (0.033)	0.501*** (0.004)	0.125 (0.637)
$\ln(dist_{ij})$	-0.774* (0.061)	-0.900*** (0.003)	-0.725* (0.079)
$pricelib$	-0.485 (0.270)	-1.184 (0.198)	-0.579 (0.273)
$competition$	0.846*** (0.000)	0.784*** (0.006)	0.450 (0.283)
$trade$	-0.018*** (0.000)	-0.014*** (0.004)	-0.018*** (0.001)
$dcreditpriv$	0.010** (0.010)	0.010** (0.033)	0.020*** (0.005)
$mobile$	0.001 (0.694)	0.005 (0.274)	0.001 (0.844)
$inflation$	0.003 (0.174)	-0.023 (0.239)	0.003* (0.098)
$manufacturing$	0.054** (0.037)	0.086* (0.078)	0.021 (0.507)
tax_burden	0.020* (0.061)	0.028** (0.044)	0.041** (0.011)
$financial_freedom$	-0.009 (0.153)	-0.003 (0.731)	-0.005 (0.601)
$centralasia$	-6.125 (0.138)	-	5.217** (0.031)
WTO	-0.453 (0.108)	-2.104* (0.096)	-0.821*** (0.006)
EU	0.237 (0.195)	0.240 (0.244)	0.199 (0.601)
$EUboarder$	0.027 (0.817)	0.155 (0.302)	0.441* (0.097)
$ocean$	-1.494*** (0.004)	-1.072* (0.093)	2.162** (0.021)
$comrelig$	-2.084* (0.054)	-1.635 (0.115)	-18.441*** (0.000)
constant	-17.476 (0.002)	-23.864 (0.001)	-3.274 (0.736)
$Wald\chi^2$	442.35	313.91	288.48
관측치	1,542	949	593

주: 1) 괄호 안의 값은 p-value.
2)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자료: OECD, "FDI flo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1. 13); Heritage Foundation; Head, Mayer, and Ries(2010)를 활용하여 저자 심층분석.

저소득 체제전환국으로 묶어서 분리 분석도 실시하였다.

[표 3-3]의 두 번째 열은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FDI 유입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전년도 FDI 유입량은 해당연도 FDI 유입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력방정식 변수인 양국의 GDP도 OECD 국가의 FDI 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잘 알려진 것처럼 양국의 시장규모는 FDI를 증가시킨다. 또 다른 중력방정식 변수인 양국간의 거리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체제대상국의 경쟁정책수준($competition$)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FDI 유입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OECD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무역개방도($trade$)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FDI 유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역규모가 적은 체제전환국일수록 FDI 유입이 많음을 의미하며, OECD 국가가 무역개방수준이 높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수출의 형태로 진입했고 무역개방수준이 낮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FDI의 형태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대상 체제대상국의 대부분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 서부 및 중부유럽 OECD 국가들이 교역을 통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역개방도가 높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무역개방도가 낮은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해 진입하는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민간신용의 규모($dcreditpriv$)가 클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의 사유화가 진척될수록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manufacturing$)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체제전환국의 과세부담(tax_burden)은 FDI 유입과 정의 관계를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용한 Heritage 재단의 과세부담지표는 직접투자기업의 과세부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과세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부담은 직접투자기업의 과세비용 부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의 규모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수의 특성으로 판단해볼 때, 과세부담이 가지는 정(+)의 효과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직접투자기업들이 안정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FDI를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안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전환국보다 내륙국에 대한 FDI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교역을 통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한 진입이 선호되며, 교역에 불리한 내륙국에 대해서는 FDI를 통한 진입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유사성을 가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적 유사성을 가지는 유럽 내 기독교 문화권 국가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도 가지기 때문에 FDI 대신 교역이 선호되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각각 고소득과 저소득 체제전환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년도 FDI 유입량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년도 FDI 유입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력방정식 변수인 양국의 GDP는 11개 고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나머지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는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저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해당국가의 시장성이 OECD 국가 기업의 주요한 직접투자유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 다른 중력방정식 변수인 국가 간 거리는 체제전환국의 소득에 무관하게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였다.

한편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은 고소득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일수록 시장지향적 FDI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지기업과의 경쟁상황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쟁정책수준이 개선될수록 이러한 고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현지기업과 경쟁에 노출될 여지가 많지 않으며 시장지향적인 성향도 낮은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해당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국의 무역개방도와 FDI 유입량의 부의 관계는 체제전환국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신용의 규모가 FDI 유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획득하고 있다. 즉 OECD 국가 기업들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해 진입하며 무역개방도가 낮은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진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대상 체제전환국에서 사유화가 진척될수록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에서 FDI 유입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며,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해당국가의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체제전환국 제조업에 대한 OECD 국가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저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제조업 비중과 FDI 유입량의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저소득 체제전환국 중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성향이

높았으며, WTO 가입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FDI 유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TO 가입으로 인하여 교역의 편이성이 확보되면서 수출을 통한 체제전환국 진입의 수월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WTO 가입으로 인해 수출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직접투자의 유인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 체제전환국 중에서 EU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FDI 유입이 더 많았는바, 이는 체제전환국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EU 시장의 접근성을 결합하려는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안국 여부는 고소득 체제전환국과 저소득 체제전환국에서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고소득 체제전환국은 내륙국일수록 FDI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저소득 체제전환국은 해안국일수록 FDI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시장추구형 FDI의 성격이 약하고, 자원추구형 FDI의 성격이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다에 접한 저소득 체제전환국은 물류기능에서 내륙국에 비해 FDI 유치에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중부유럽에 위치한 내륙 고소득 체제전환국들은 OECD 국가인 이웃 중부 유럽국가들과의 원활한 교역이 가능하므로 해안의 존재 유무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유사성을 가지는 체제전환국에 대해서 직접투자가 덜 발생하는 관계는 소득수준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나. 체제전환 전반기: 1995~2005년

[표 3-3]의 분석에서는 1995~2014년이라는 20년 기간에 걸쳐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체제전환국이 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체제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석기간을 좁

혀서 체제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진 체제전환 초기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표 3-4]는 분석기간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1995~2005년의 기간 동안 OECD 국가로부터 체제전환국으로 투자된 FDI의 유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은 앞 절의 모형과 동일하게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시스템 GMM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Arellano-Bond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분석대상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 및 고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시스템 GMM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분석에서는 시스템 GMM은 Arellano-Bond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실증분석은 시스템 GMM 모형이 아닌 임의효과 패널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3-4]는 그러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 3-3]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은 분석대상 24개 체제전환국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각각 11개 고소득 체제전환국과 13개 저소득 체제전환국을 분리 구분한 분석 결과이다.

전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체제전환 전반기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많은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중력방정식 변수들도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체제전환 전반기동안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체제전환국의 GDP와 FDI 유입 간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경제개발수준이 낮은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이 고소득 체제전환국보다 큼을 보여준다. 그러나 저소득 체제전환국만 분리하여 살펴본 분석에서는 저소득 체제전환국 내의 국가별 GDP는 FDI 유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다른 중력변수인 투자국의 GDP는 전 국가와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인 체제전환국간의 물리적 거리는 저소득 체제전환국

표 3-4.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05년

	전 국가	고소득	저소득[2]
$\ln(inflow_i)_{t-1}$	-0.059 (0.526)[1]	-0.059 (0.544)	-
$\ln(GDP_i)$	-1.466** (0.034)	1.072 (0.171)	0.209 (0.529)
$\ln(GDP_j)$	0.946** (0.036)	-0.115 (0.854)	0.676*** (0.000)
$\ln(dist_{ij})$	0.118 (0.891)	-0.838 (0.352)	-1.304*** (0.000)
$pricelib$	0.194 (0.861)	0.636 (0.827)	0.048 (0.895)
$competition$	1.695* (0.068)	4.362** (0.018)	1.094* (0.055)
$trade$	-0.035** (0.027)	0.001 (0.966)	-0.002 (0.813)
$dcreditpriv$	0.037*** (0.006)	0.020 (0.164)	0.030* (0.077)
$mobile$	0.040*** (0.003)	0.009 (0.509)	0.014 (0.284)
$inflation$	0.001 (0.730)	-0.035 (0.534)	0.001 (0.189)
$manufacturing$	0.133 (0.286)	0.144 (0.442)	0.021 (0.687)
tax_burden	0.005 (0.898)	-0.044 (0.555)	0.022 (0.221)
$financial_freedom$	-0.016 (0.470)	-0.016 (0.659)	-0.017 (0.169)
$centralasia$	-22.578 (0.111)	-	1.389 (0.111)
WTO	0.069 (0.916)	-2.604 (0.482)	-0.264 (0.408)
EU	-0.073 (0.874)	-0.596 (0.391)	-
$EUboarder$	-0.430 (0.573)	-3.027 (0.154)	0.109 (0.795)
$ocean$	1.039 (0.529)	0.289 (0.904)	0.325 (0.634)
$comrelig$	3.754 (0.148)	1.451 (0.630)	2.186 (0.328)
constant	2.737 (0.858)	-27.947 (0.234)	-18.585 (0.011)
$Wald\,\chi^2,\ R^2$	67.03	40.84	0.348[3]
관측치	312	197	278

주: 1) 괄호 안의 값은 p-value.
2) 저소득 체제전환국 분석은 임의효과 패널분석, 나머지는 시스템 GMM.
3) R^2.
4)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자료: OECD, "FDI flo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1. 13); Heritage Foundation; Head, Mayer, and Ries(2010)를 활용하여 저자 심층분석.

에 대한 분석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소득과 저소득 체제전환국 모두에서 이러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무역개방도는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다. 즉 OECD 국가 기업들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체제전환국에는 수출을 선호하였으며 무역개방도가 낮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FDI 형태의 직접투자를 선호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역개방도의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이는 분석대상을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유의한 변동이 있지만 각각의 소득군에서는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민간신용의 규모($dcreditpriv$)가 클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신용의 규모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분석대상 체제대상국과 저소득 체제대상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관찰되었지 고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저소득 국가 중에서 민간영역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외국기업이 직접 투자할 유인이 높음을 나타낸다.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는 무선전화보급률($mobile$)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며, 체제전환 전반기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체제전환국이 FDI 유치에 유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득군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각각의 소득군 내에서는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추가 분석 1: V4와 발트 3국

본 소절에서는 앞의 고소득 체제전환국의 범위를 더 좁혀서 V4(체코, 폴

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만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다. 이들 국가는 본 장의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성공적인 FDI 유입 실적을 보였던 국가들이다. 분석방법은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분석기간을 체제전환 초기로 좁힌 분석에서는 Arellano-Bond 검증 결과가 시스템 GMM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의효과 패널 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3-5]는 그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분석에서 중력방정식 변수들은 기대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과 체제전환국의 GDP는 각각 해당 체제전환국으로의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간의 물리적 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에 대한 전 기간 분석에서는 가격 자유화 수준($pricelib$)이 FDI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자유화로 인한 가격변동성의 확대가 OECD기업의 직접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60]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인 영향이며,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격 자유화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전의 다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셰그라드/발트 국가들의 경쟁정책수준은 FDI 유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경쟁정책수준이 개선될수록 해당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경쟁정책수준의 영향은 체제전환 초기에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민간신용의 규모($dcreditpriv$)가 클수록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의 사유화가 진척될수록 해

60) 체제전환국의 개혁이 해당국가의 경제에 체제전환 후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연구로는 Mitrović and Ivančev(2010)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1999~2009년 동안 27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체제전환국의 개혁이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EBRD의 체제전환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나, 체제전환지표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표 3-5. 비셰그라드 및 발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전 기간	전반기[2]
$\ln(inflow_i)_{t-1}$	0.156*** (0.000)[1]	-
$\ln(GDP_i)$	0.927*** (0.006)	1.018** (0.015)
$\ln(GDP_j)$	0.616*** (0.003)	0.564*** (0.000)
$\ln(dist_{ij})$	-0.762** (0.047)	-1.213*** (0.000)
$pricelib$	-2.943*** (0.002)	-2.450 (0.222)
$competition$	0.632** (0.050)	2.552* (0.056)
$trade$	-0.004 (0.429)	0.003 (0.845)
$dcreditpriv$	0.018*** (0.004)	0.026* (0.046)
$mobile$	0.002 (0.767)	-0.002 (0.862)
$inflation$	-0.041** (0.048)	-0.049 (0.198)
$manufacturing$	0.023 (0.665)	0.025 (0.792)
tax_burden	0.023 (0.169)	0.060 (0.349)
$financial_freedom$	-0.011 (0.305)	-0.010 (0.616)
EU	0.352 (0.176)	-0.564 (0.275)
$EUboarder$	0.365** (0.037)	-31.785* (0.064)
$ocean$	-0.326 (0.659)	-0.810 (0.349)
$comrelig$	-1.086 (0.253)	0.568 (0.555)
constant	-23.273 (0.009)	-
$Wald\chi^2,\ R^2$	353.42	0.356[3]
관측치	741	302

주: 1) 괄호 안의 값은 p-value.
2) 전반기 분석은 임의효과 패널분석, 전 기간 분석은 시스템 GMM.
3) R^2.
4)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자료: OECD, "FDI flo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1. 13); Heritage Foundation; Head, Mayer, and Ries(2010)를 활용하여 저자 심층분석.

당 국가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높을수록 FDI 유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체제전환 전반기에서는 관찰되지 않아, 해당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은 EU 가입 이전 EU 접경지역이라는 이점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EU 가입 자체는 FDI 유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추가 분석 2: 비유럽 체제전환국

앞에서 분석하였던 체제전환국들은 유럽과 구소련 소속의 중앙아시아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FDI 유입 결정요인은 유럽국가와 아시아국가간에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소절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비유럽체제전환국(즉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만을 대상으로 FDI 유입 결정요인을 추가 분석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국들은 유럽재건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체제전환 지표를 설명변수로서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을 포함하는 추가 분석에서는 체제전환 지표에서 차용한 가격 자유화 수준($pricelib_i$)과 경쟁정책수준($competition_i$)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추가 분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분석방법은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시스템 GMM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분석기간을 체제전환 초기로 좁힌 분석에서는 Arellano-Bond 검증 결과가 시스템 GMM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의효과 패널분석 방식을 이용하였다.

먼저 [표 3-6]의 두 번째 열이 보여주고 있는 전 기간에 걸친 비유럽 체제전환국들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살펴보자.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비유럽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규모가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대상국의 시장성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직접투자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FDI 유입과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비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비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동남아시아에 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FDI 유입에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WTO 가입은 FDI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ASEAN 가입은 이들 국가의 FDI 유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안국보다 내륙국의 FDI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의 세 번째 열은 비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을 1995~2005년으로 한정하여 체제전환 초기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유일하게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는 인프라수준을 반영하는 무선전화보급률이며, FDI 유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이들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인프라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3-6.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1995~2015년

	전 기간	전반기[2]
$\ln(inflow_i)_{t-1}$	0.470*** (0.000)	-
$\ln(GDP_i)$[1]	1.051*** (0.000)	0.763 (0.370)
$\ln(GDP_j)$	0.240 (0.261)	0.615*** (0.000)
$\ln(dist_{ij})$	0.085 (0.732)	-0.475 (0.434)
$trade$	0.002 (0.750)	-0.006 (0.830)
$dcreditpriv$	0.000 (0.931)	-0.019 (0.274)
$mobile$	-0.002 (0.503)	0.078** (0.038)
$inflation$	-0.017* (0.099)	0.027 (0.324)
$manufacturing$	0.116*** (0.000)	-0.050 (0.671)
tax_burden	0.012 (0.650)	0.035 (0.288)
$financial_freedom$	0.011 (0.292)	-0.007 (0.716)
$centralasia$	4.329** (0.044)	-1.614 (0.592)
WTO	0.634*** (0.006)	-0.155 (0.625)
$ASEAN$	1.457 (0.260)	-0.849 (0.742)
$ocean$	-3.508* (0.039)	0.362 (0.869)
$comrelig$	-4.131 (0.201)	2.536 (0.372)
constant	-38.869 (0.000)	-30.617 (0.097)
$Wald\chi^2,\ R^2$	958.81	0.500[3]
관측치	501	192

주: 1) 괄호 안의 값은 p-value.
2) 전반기 분석은 임의효과 패널분석, 전 기간 분석은 시스템 GMM.
3) R^2.
4) EBRD 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열이 2015년을 포함.
5) ***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자료: OECD, "FDI flo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1. 13); Heritage Foundation; Head, Mayer, and Ries(2010)를 활용하여 저자 심층분석.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본 장에서는 1995~2014년의 20년 기간 동안 유럽 및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OECD 국가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 통계와 중력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스템 GMM 모형과 임의효과 패널자료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체제전환국은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중앙아시아 2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쟁정책, 민간시장의 규모 등과 같은 체제전환국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가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전 기간에 걸쳐 분석대상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체제대상국의 경쟁정책수준이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OECD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량이 늘어났으며, 무역개방도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FDI 유입에 부의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간신용의 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체제전환국의 과세부담과 FDI 유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OECD 국가의 직접투자기업들이 과세수준이 높더라도 안정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과 저소득 체제전환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FDI 유입 결정요인을 가짐을 보여준다.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과 제조업 비중은 고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FDI 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해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제전환국의 무역개방도와 FDI 유입량의 부의 관계는 체제전환국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신용의 규모가 FDI 유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FDI 유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TO 가입으로 인하여 교역의 편이성이 확보되면서 직접투자보다 수출을 통해 체제전환국에 대한 진입 수월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체제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 전반기인 1995~2005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당 기간의 분석결과는 전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한 분석 결과와 달리 많은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은 소득소준과 무관하게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역개방도는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체제전환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저소득 체제전환국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의 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국의 인프라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장에서는 성공적인 FDI 유치국들인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체제전환국에 대한 전 기간 분석에서는 가격 자유화 수준이 FDI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자유화로 인한 가격변동성의 확대가 OECD 기업의 직접투자를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격 자유화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비셰그라드/발트 국가의 경쟁정책수준은 FDI 유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쟁정책수준의 영향은 체제전환 초기에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민간신용의 규모가 크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체제전환 전반기에서는 관찰

되지 않아 해당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장기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EBRD의 체제전환 지표에서 차용한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보았다. 이들 비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도적 변화에 의한 FDI 유입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WTO 가입으로 인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이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제전환 초기에는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인프라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장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잠재적인 체제전환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전형적인 저소득 국가이며, 체제전환을 시도한다면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일본이라는 OECD 소속의 선진 경제권에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의 차이는 크지만 비셰그라드/발트 체제전환국들과도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북한이 체제전환 정책을 채택할 경우 FDI 유치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시도할 때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인프라수준을 개선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적인 시장정책을 도입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WTO 체계로 편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제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은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급격한 제도 개혁은 오히려 경제적 안정성을 해쳐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해서 계량 분석과 함께 체제전환국들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반에 대한 분석을 했다. 계량 분석에서는 체제전환국 그룹을 유럽과 비유럽으로 구분함으로써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적 사례인 V4와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외자 유치 성공요인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중력모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변수들(GDP, 무역량, 국경, 지리적 변수 등)을 중심으로 체제전환국들의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폐쇄경제인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력모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변수들 보다는 인프라, 남북한 간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효과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이의 유효성을 검증 할 수가 없고, 그 결과 북한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확대해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 북한의 외자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에 있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FDI 유입 결정요인을 최대한 반영하되, 제2장에서 분석된 정성분석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한 국가들의 성공요인을 비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의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럽과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상황은 북한과 다른 점도 본 연구는 고려해야만 한다고 판단한다. 다른 체제전환국들과는 달리 북한은 핵문제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결적 구도에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FDI 유치는 요원한 일이

기 때문이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안보적 요인은 앞서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이나 중국, 베트남 등 성공적으로 FDI를 유치한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핵문제 등 안보요인이 기타 앞서 분석한 그 어떤 FDI 결정요인 보다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FDI 유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정치적 안보적 논의가 해결되어 앞서 분석한 경제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 등이 부수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보다 적실성 있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보적 요인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FDI 유입을 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이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는 해결되는 과정 중에서 FDI는 북한에 대한 매우 큰 반대급부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대북 금융지원 확보 노력

북한이 현재 처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 유치는 매우 요원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다만 북한 당국이 북핵문제 등 FDI 유치를 위한 안보적 문제를 해결한다하더라도 당장에 상업베이스에 의한 신규 상업차관이나 FDI를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민간자본은 북한의 전기,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등 산업 인프라시설 미비, 투자에 대한 안전성과 수익성의 불확실성, 시장경제와의 이질적 요소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 등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민간 베이스 외

국인투자 유치에 의한 국제자본 조달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당국은 앞의 체제전환국들 사례 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바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등 기술지원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금 예탁국들이 동의만 한다면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들에도 신탁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의 핵폐기 협상 과정에서 '북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자들이 북한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북경제제재 등이 해제되어야 하고, 북한 당국은 FDI와 국제금융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IMF나 IBRD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한다. 그 밖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국제금융기구에 인식시켜야만 한다.

나아가 상기 언급한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된다면 북한 당국은 FDI나 남한자본 유치에 중점을 두고 해외자본 조달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남한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 및 발전을 유도해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해야 하며, 기업소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국영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특

구에 한해서 인프라 확충과 세금감면과 같은 특혜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이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나.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물론 북미가 북핵 해결 협상 과정에서 다루겠지만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미 간 무역 관계 정상화 관련, 가장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나라는 제2장과 제3장의 아시아국가 체제전환국 FDI에서 분석한 베트남이다.[61]

베트남 상품은 미국과의 정상화 이전에 북한산 상품과 같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른 Column2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1994년 미국은 베트남과의 교역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관세가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미국과의 무역정상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관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에는 큰 효과가 있다. 1994년 미국의 대베트남 교역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미국 상품의 대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고, 1998년 3월부터 대베트남 교역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허용되었다.[62] 이후 미국과 베트남은 2001년 12월에 무역협정[63]을 발효시켜

61)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북제재 및 북미 간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정상화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관해서는 정형곤 외(2018) 참고.
62) 김석진(2007), p. 14.
63)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협정 주요 내용: 베트남-미국 양자간 무역 협정은 7장으로 구성,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투자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양자간 무역 협정 체결로 베트남이 얻게 된 혜택

양국의 무역 관계가 정상교역관계로 격상되었고 2006년에는 항구적 정상교역관계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는 40% 정도에서 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산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쿼터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였고 양국 상호 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는 북미교역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은 △ 안보적으로는 핵폐기, 미사일 등 기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평화체제 전환 △ 경제적으로는 개혁 · 개방 노선을 분명히 하고 광범위한 시장 개방 실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 △ 정치 · 사회적으로는 법 · 제도 · 관행을 개혁,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64)

다.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시장의 규모는 중요하다. 특히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FDI에 있어서는 시장규모로서의 GDP 규모나 GDP 성장률은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앞서 분석된 체제전환국들의 FDI 유입 요인 분석에서도 GDP 규모($\ln(GDP)$)는 FDI 유입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그러나 시장규모로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매력적인 국가는 아니다. GDP규모에 있어서도 북한은 2018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326억 달러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

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하는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 시장개방 혜택 제공이다. ① 지적 재산권 보호: 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 규정된 제도를 18개월에 걸쳐 도입하기로 합의 ② 서비스 시장 개방: WTO의 일반 규칙을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 기업에 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기로 했음. 투자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① 부문에 따라 2년, 6년 또는 9년에 걸쳐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심사절차 폐지 ② 이익의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외자기업은 베트남 기업과 동등한 권리 보유 ③ 종전에는 미국 기업은 베트남 내 합작기업에 최소한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했으나 이 제한사항 폐지 ④ 베트남은 WTO의 '무역 관련 투자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폐지. 김석진(2007), p. 35, p. 37, p. 39, p. 40 참고.

64) 김석진(2007), pp. 37~38, p. 91.

다. 북한주민들의 구매력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 적어도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북한의 내수시장은 매력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북한이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해 이들 국가와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북한은 매우 중요한 투자대상지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 초기의 경우가 그랬고 동유럽 체제전환국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다른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와 같이 초기에 낮은 임금을 활용한 외자 유치로 일종의 노동자원형 투자 유치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후 점차적으로 내수시장이 커지고 고급화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의 내수시장 역시 중요한 FDI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내수시장보다는 주변국의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 유치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앞선 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북한과 같이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저소득 국가의 경우 시장규모를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싼 노동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개혁 · 개방 초기에 주변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주변시장으로 수출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외국인투자 유치가 수월해질 수 있다.

북한 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변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우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북한과 가장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규모만으로 보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이며, 투자 유치국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북중 경제 관계는 전통적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로의 수출보다도 유리한 상황에 있다.

시장진출 대상으로서의 남한은 대북투자 외국인에게는 중국 이상으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시장지향형 투자를 하는 경우 남한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에 인접한 가장 고급시장이면서도 북한으로서는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일본을 어떻게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향후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일 관계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주변국을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실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분석했던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국제기구들이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하면서 이들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에 거대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상징적 존재라는 점에서도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이다.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고[65] 미국과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형성된 2006년에 외자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근본적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도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66]

---

65) WTO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입신청국은 자국의 경제 및 무역정책 중 WTO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 상세한 보고서 제출 △ 신청국의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 △ 가입신청국과 WTO 회원국 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협상 △ 가입 의정서 및 이행 스케줄 작성 △ 가입 의결.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조건부 NTR 지위를 부여받은 지 5년만인 2006년 12월에 PNTR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거의 동시에 WTO에 가입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PNTR 부여와 WTO 가입 지지는 베트남이 시장개방 요구를 비롯해 미국측이 제기한 여러 이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2007), pp. 45~47 참고.

66) 체제전환국들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은 미국의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부여와 해당 국가의 WTO 가입에 의해 완료된다.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드시 PNTR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라.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앞선 분석에서 중력모형의 주요 변수인 무역상대국과의 거리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OECD 국가들과 체제전환국들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FDI가 증가했고 그 반대로 멀수록 FDI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본다면 북한의 인접한 투자국인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이 가장 유력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북한 투자 유치정책에 주요 이슈로 홍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18년 11월에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외자 유치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서는 북한 주변에 인접해 있는 거대한 시장들을 북한에 대한 투자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동 책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1,000km 이내에 6억 명의 인구가 밀집된 거대한 소비시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평양을 중심으로 비행시간 3시간 이내 20억 인구가 존재하고 100만 이상의 도시가 147개나 북한 주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북한 주변의 이러한 거대시장과의 지리적 접근성은 북한 투자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다.

앞서 분석한 시장으로서의 GDP 규모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거대시장에 대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중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투자자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초기에는 북한 내수

아니지만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WTO 가입 협상을 추진한 체제전환국들은 대체로 미국으로부터 조건부 NTR 지위를 부여받고, 이후 협상을 통해 PNTR 지위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이 PNTR을 부여한다고 해도 미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추가 혜택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무역을 정상화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미국의 PNTR 지위 부여는 미국 의회가 해당 국가에 PNTR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성립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2007), pp. 40~44 참고.

시장을 겨냥한 투자이기보다 북한의 낮은 임금과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에 의한 수출 주도형 투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북한의 산업발전 정도가 아직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투자 단계에 있어 3국은 모두 생산기계와 원자재를 자국이나 외부에서 반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수출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한중일 3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원자재의 운송이 용이하도록 남한 및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고, 일본과 기타 세계와 연결하는 남포항 등의 해운 인프라 개선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 및 용수 공급,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인프라 구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FDI 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의 발달, 도로 및 교통 시설의 발달 등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거리가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 수출입과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입을 위한 통관시스템 역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수출입 촉진에도 필수적 사안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주변의 거대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라는 북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가지느냐와 다양한 관세 장벽을 북한 당국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제거하느냐가 핵심적 사안이다. 즉 앞서 언급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FDI 유치에 중요하다.

마.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들의 경쟁정책수준($competition$)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FDI 유입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체제전환국들의 경쟁정책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경쟁정책의 중요성은 체제전환 과정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체제전환 초기 10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FDI 유치에 성공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셰그라드 국가 분석에서도 공통적인 유효변수로 확인되었다.

경쟁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경쟁을 제한해왔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가격 형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권리가 시장 또는 민간 부분에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김정은 체제에 들어 농업과 공업 부문 등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분권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원칙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근간으로 유지하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제한하고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경쟁과 경제정책을 통해서 분야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위 경쟁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7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 이전까지 시도했던 정책들이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을 일부 도입한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67]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사유재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특히 생산재에 대한 사적소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비로소 경쟁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북한 당국이 기업소 등에 생산품목과 물량, 가격과 이윤배분 등의 결정권을 확대한 바 있어 소유제도에 있어서 단계적인 개혁을 한다면 경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한적이나마 선택과 집중에 의해 일부 산업이나 북한 당국이 조성한 주요 경제지대에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한다면 경쟁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

67) 1968년 헝가리, 1980년대의 폴란드 역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제3의 길을 추구했던 유고슬라비아 역시 동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정형곤(2001) 참고.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제전환국가들의 경우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재에 대한 개인 소유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득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북한 당국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진전시킴으로써 경제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급진적 개혁이 어려울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재에 대한 사적 소유를 확대해야 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 자유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북한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FDI 유치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바. 무역개방도 확대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들에서도 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도 빠르고 FDI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68]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무역개방도($trade$)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FDI 유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관세장벽으로 인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경우 무역량이 당연히 적을 것이며, 이들 국가에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의 직접투자를 추구하는 이른바 관세회피투자(tariff jumping investment)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규모가 적은 체제전환국들일수록 FDI 유입이 많음을 의미하며, 관세장벽이 낮아서 무역개방수준이 높은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는 수출의 형태로 이들 국가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분석 대상이었던 체제전환국들들이 대부분 유럽에 위치하고

68) Lee and Jeong(2006).

있고, 서유럽 국가들과 교역을 통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무역개방도가 높은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무역개방도가 낮은 체제전환국들들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진입을 선택하는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경우도 상기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보호관세도 문제이겠지만 비관세장벽 역시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투자 환경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경우 관세회피 투자보다는 재산권 보호를 비롯해 여러 투자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직접투자에 나서지 않고, 투자자들이 북한에 대한 무역을 오히려 선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과 같이 기존의 여러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호 방치가 매우 미흡데다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안보적 갈등으로 직접투자 리스크가 다른 체제전환국들보다 월등히 높다. 앞서 제2장에서 분석된 체제전환국들의 투자 환경 분석에서도 투자자보호(protecting investors)와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등의 요소가 FDI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절차 비용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개방은 물론 무역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나 북한이 체제전환 초기에 WTO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북한도 베트남과 같이 미국과 북미 수교라는 완전한 관계정상화 과정 이행 이후에나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체결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WTO 가입 이전에라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고 각종 개

발 사업과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보증 등이 실현되면 북한의 개방을 비롯해 제도적 안착기로 인식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WTO 가입까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현재 있는 특구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들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사유화와 그로 인한 민간영역의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GDP 대비 민간신용 규모($dcreditpriv$)를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체제전환국들의 민간신용의 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사유화가 진척될수록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 변수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국유재산을 사유화할지, 어느 정도 폭으로 사유재산을 허용할지가 경제적 성과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 재산권은 사용권(usus), 수익권(usus fructus) 처분권(abusus)이 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이 세 가지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용권만 개인 또는 기관에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부문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수익권과 이용권도 경제주체에게 먼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서 언급된 사적소유권의 중요한 세 가지 권리가 제약될수록 사유재산 제도로 얻어질 수 있는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이다.[69] 궁극적

으로 사유화를 통해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성과 효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때 사유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유권의 개혁과 더불어 기업의 구조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소유권만을 국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형식적인 사유화로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북한 내 기존 연합소나 기업소의 경영진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실한 북한 국영기업에 새로운 투자와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남한 기업이나 외국투자자들에게 국영기업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과감한 민영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유화의 효율성도 높이고 FDI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 제조업 육성

앞의 분석에서 체제전환국들이 높은 제조업 비중($manufacturing$)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비중 변수는 체제전환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FDI 유입에 있어서 유의한 변수였으나 체제전환 초기, FDI 유치 성공 국가들인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FDI 유입에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투자대상국가의 제조업 비중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또는 자원추구형(Resource-seeking)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자 유치의 모범적 국가인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경우 체제전환국들들 중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이였고 산업적 기반도 훨씬 발달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9) 정형곤(2001).

초기 단계에 제조업의 비중이 FDI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북한당국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북한 내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새롭게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외국인투자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 평양 또는 남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든가, 북중 접경지역이나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에 제조업의 태동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특구의 유용성과 중요성이 북한에는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계량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제전환 전 과정에서 제조업의 육성과 성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가 발달하고 국내 산업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일종의 특화된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FDI 유입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70]

제조업 육성에 있어서도 남한의 산업과 연계한 수직적 산업구조를 형성해서 육성하는 것이 북한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유리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유는 우선 남한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출산업이 대부분이어서 북한산업 역시 남한과의 분업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계시장을 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남북한은 무관세 민족 내부거래여서 남북기업 모두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남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70) EU 가입을 전후로 서유럽의 역내 국가들은 물론 역외 국가들도 V4에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이는 중동부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V4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구조가 재편되면서 전자 · 기계제조업도 병행 발달하게 됐다.

진출을 위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다. 남한은 FTA 체결과 동시에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상대국과 체결한 FTA에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 제조업의 해외진출에도 매우 유리하다.

자.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일반적으로 조세부담(tax_burden)이 낮을수록 FDI 유치에 유리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 국가들이고 이들 국의 공통적 특징은 경제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조세부담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기본세율이 14%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25%, 20%보다도 낮은 편이며 특히 북한 당국이 장려하는 부분에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교하면 우월한 상황이다.

표 4-1. 북한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비교

세금종류	5개[1]	7개
기업 소득세	- 기본세율 14% (장려부문 10%) - 이윤발생 이후 5년간 면제/ 3년간 50%	- 기본세율 25% - 고도신기술기업 15% - 영세기업[2] 20% (경제특구/상해푸동신구) 하이테크기업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재산세	- 취득가액의 0.1%(생산용 건물), 0.2%(주택용 건물), 0.5%(상업용 건물), 1.0%(오락용 건물) - 건물소유 등 후 5년간 면제	- 건물 가격의 70%에 대해 1.2% 세율 적용 - 건물 소유등록 후 3년간 면제

주: 1) 기업(개인)소득세, 재산세, 거래세(생산) 혹은 영업세(서비스), 지방세(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
2) 영세기업: 매출액 3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 위안 이하의 업체.
자료: 한상국(2009); KOTRA(2013), p. 16;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

앞서 분석한 체제전환국들의 경우 조세부담은 FDI 유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되었지만 본 분석에서 이용한 Heritage 재단의 조세부담지표는 직접투자기업의 조세부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은 직접투자기업의 과세비용부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의 규모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수의 특성으로 판단해볼 때, 조세부담이 가지는 양(+)의 효과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앞선 분석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변수($inflation$)는 체제전환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긴 했으나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었다. 가격 자유화의 영향으로 많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초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을 경험한 바 있으나 이후 시차는 있으나 대체로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앞서 언급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혁 · 개방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차.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인접 선진시장($EUboarder$)과의 접근성은 체

제전환국들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경우 EU 가입으로 직접투자가 증가했는바 이는 선진시장으로 접근성 확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큰 잠재적 투자자이면서 경쟁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접경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FDI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처럼 작용했기 때문에 나온 우려일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중국에 접하고 있지만 체제전환국들 중 개혁초기 대비 최대의 FDI 유치국 이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외자 유치에 있어서 중국과 접하고 있어 중국과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으나 베트남의 사례처럼 개방적인 통상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할 경우 외국자본 유치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해당 국가의 세계무역에로의 개방은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금 등 기타 생산요소 비용의 증가로 중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기업이전 현상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지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중국기업의 한국과 일본 진입을 비롯해 해외기업의 생산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탈중 해외기업들의 상당수를 북한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를 위한 여러 전제조건들, 즉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남북 및 북미간의 관계개선, 기타 앞서 언급한 투자 적격지로서의 조건 성숙 등이 전제되

어야 한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서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EU 회원으로 가입한 것과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이며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의 최대 투자국이 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중국자본의 대북 투자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북중 간 FTA가 아니더라도 상호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높이는 유사한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어 북중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원집약적 FDI 유치에 있어서 러시아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는 지리적 인접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어도 남한의 자원투자에 대해서만은 북한지역이 러시아보다 유리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트3국이나 조지아 마케도니아와 같이 개방과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나 그밖의 나라와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시장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서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카. Doing Business 평가요소의 환경 개선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2장에서 분석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평가요소에서 언급된 투자 환경 개선은 FDI 유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V4국를 비롯한 발트3국,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이들 요소들이 개선되면서 FDI 유입이 결정적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투자 환경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이 동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아직까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자유도, 노동시장 자유도, 금융시장 자유도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반 자유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림 4-1. 정부의 효과성과 정치적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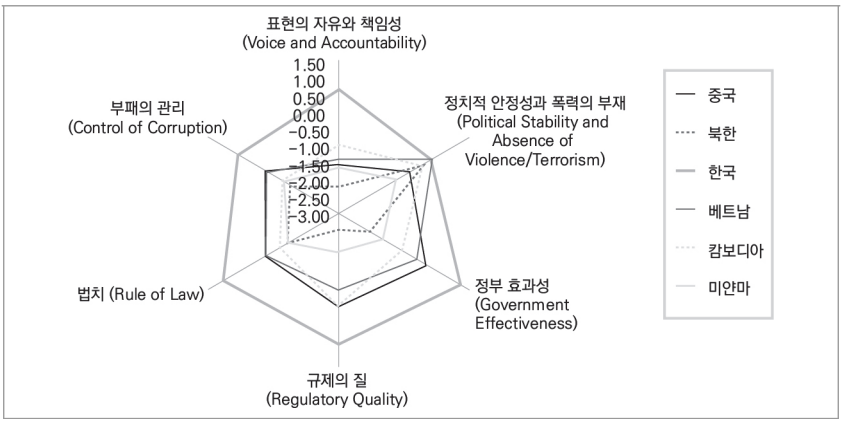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13," http://www.doingbusiness.org(검색일: 2019. 11. 3)을 근거로 저자 작성.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북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우대되는 북한경제특구 내에서도 상기 언급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안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가 될 노동력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나아가 근로자 선택권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르는바, 경제특구 내에서도 필요한 북측 근로자를 북측의 노력알선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며, 이때 투자자는 노력알선기업이 공급하는 북측 근로자를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채용

해야 한다. 근로자의 기능이나 기술 정도, 연령, 학력, 연령, 경력 등을 살펴본 후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채용상의 문제로 조건이 맞지 않은 근로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 투자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71]

또 다른 문제는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자본주의식 노동 관행이 익숙하지 않아 자본주의식 인사관리 제도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임시 도급제방식에 의한 인력배치, 작업 부하에 따른 작업장 재배치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았다.[72] 이렇듯 노동생산성 문제나 고용문제는 북한의 투자 유치 환경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로서 외자 유치 환경조성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은 FDI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그림 4-2. 북한의 경제자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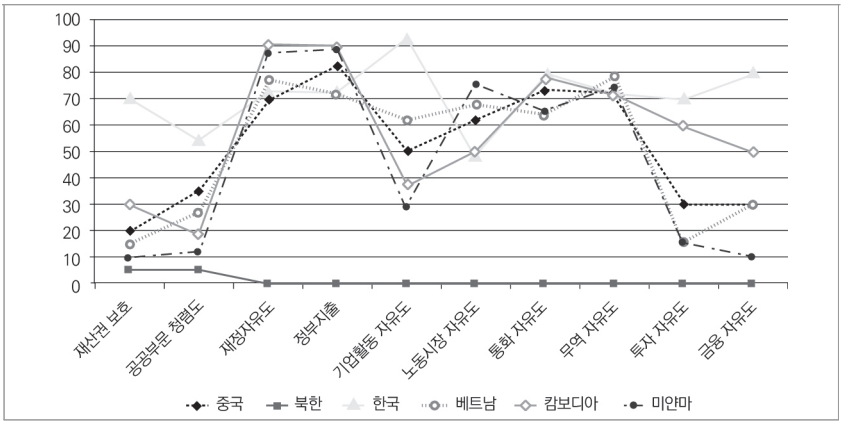

자료: Heritage Foundation,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2017」, Heritage.org/index(검색일: 2019. 9. 19).

71) 송장준(2011), pp. 79~80.
72) 송장준(2011), pp. 79~8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에 편리한 제도적, 물리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FDI유치에 성공한 체제전환국의 경우 대부분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한 경우이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점진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특구위주로 개혁을 추진하고 정주여건, 경제적 자유,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물리적 투자 환경 개선에 큰 공을 들였던 국가들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 역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위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낮추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여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는 단호하게 철폐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현행 규제들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 또한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환경보호, 노동시장, 사업 환경, 거주 환경 등에 관한 법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선호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제, 엄격한 고용해고제도, 실업수당 등의 노동법은 외국인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요소 외에도 안정적인 통화 환전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요관심사이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통화 환전을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그밖에도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행정절차, 금융시스템, 기업구조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져야 한다.[73]

73) 정형곤(2011), pp. 410~411.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북한이 현존하는 핵문제를 해결 또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이 개혁 ·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의 투자자는 남한이 될 것이다. 이는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비롯해서 남북경협이 가지는 여러 장점뿐만 아니라 남북한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분업형성 가능성, 지리적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북한이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혁 등은 모두 북한 당국의 과제이다. 북한이 앞서 언급된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역할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해결하거나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 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 (EAR) 완화 추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자본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따르면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장비 등 공장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도 금지되어 있다. 한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반출입 금지체제 회원국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물자의 반출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우선 미국, EU, 일본 등 수출 통제체제 주요 회원국들에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의 취지 및 성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 사안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출되는 설비와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북한이 아닌 남한기업이며, 심사기구 등을 통해 투명성이 검증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입 문제를 철저히 통제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해야만 한다. 사실 동 사안은 남한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들에 해당되는 공통 이슈이기도 하다.

나.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북한과 미국이 관계개선을 통해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1994년도에 베트남에 대해서 교역금지조치를 해제를 했던 조치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북한에 취해 관세를 대폭 낮춘다면 북한에 투자해 생산된 제품들이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까지 진전이 더딜 경우에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관례상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역시 북한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미 간 관계진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초기단계에는 우리 기업도 대북 직접투자보다는 위탁가공형 투자 등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에 투자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국가들과 관세율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북한에도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북한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중국, 러시아, 태국, 쿠바 등 40여개 국가로 우선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투자기업들에 사전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투자 기업들이 국내 생산 공정과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기 체결된 FTA에서의 개성공단 특례조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법은 역외가공조항을 이용하는 방법과 부가가치기준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생산 부가가치나 중간재를 인정받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100% 적용되지는 않으며 한국 내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공정의 일부를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완성해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 개성공단 및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역외가공 허용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하거나 ② 한-싱가포르 FTA나 한-ASEAN FTA 경우처럼 개성공단 관련 특례조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③ 부가가치기준 적용의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역외가공을 얻어내는 방법

등 3가지가 가능하다.

먼저 역외가공을 이용하는 방법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외가공의 허용범위가 최종재 공장도가격(혹은 FOB 가격, 생산가격)의 부가가치 10%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10%의 부가가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역외가공 허용기준에 대한 상한선을 대폭 올리지 않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관련 특례조항을 FTA 체결 시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이용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허용 품목에 대해 제한하면서 동시에 역외가공 부가가치의 상한선을 40%(한-ASEAN, 한-싱가포르의 경우)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혹은 '한반도' 내의 특정지역을 협정문에서 언급하는 방법은 WTO의 최혜국대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완화하여 개성공단 및 북한에서의 공정을 거쳐 최종 수출되는 수출품목에 대해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의 공정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도입된 방법으로 호주-싱가포르 FTA 협정문 3장의 Article 3에서 생산총비용 중 허용 가능한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품목에 대하여 50%를 적용하는 반면 Annex에 기록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30%까지 인정하여 역외가공 허용기준을 높였다. 또한 30% 하한선을 지니는 품목은 Annex 2C와 2D에 명시되어 있으며 Annex 2C는 최종공정이 수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이 붙는 품목으로 HS 4단위 178개 품목과 8단위 147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Annex 2D에 기록된 품목은 최종공정 역내수행의 조건이 없으며 HS 6단위로 총 114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동 조항에 있어 역외산 공정에 대한 제한(예를 들어 'WTO 비회원국을 제외한다')은 나와 있지 않다.

부가가치기준 완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이나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는 방법은 아직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려된 적은 없으나 WTO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설득 논리 개발 또한 필요하다. 설득 논리로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리 개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도움, 국제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개성공단의 특수한 관계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74]

다. 북한이 FDI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남한의 경제특구 경험 전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자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경험으로 전수되곤 한다. 그중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및 무역 정책으로서의 경제특구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경제특구는 제한된 재원을 한정된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급진적 개혁이나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시험대(test bed) 역할을 하게 하고 이후 특구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정책의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정책이다. 북한의 경우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으로 27개 경제개발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앞 절에서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했으므로 이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성공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정책 운영 방향을 앞서 분석된 내용들에 근거해 제안하고자 한다.[75]

---

74) 상기 언급된 내용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곤(2011), 『한 · EU FTA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p. 169 참고.

75) 체제전환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관련, 성공요인과 정책 방향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 투입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총 27개의 면적은 1,329.17K㎡에 달한다.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나치게 과잉공급 되었다는 인식하에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300K㎡ 이하인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면적은 현재 북한경제 규모와 비교 할 때도 매우 큰 규모이다.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북한의 재원을 총투입하여 하나의 특구 성공사례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7개 경제개발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희소한 재원이 집중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을 의미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역시 분산되어 경제특구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무분별한 지정으로 결국 개발이 장기화되고, 개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지방정부나 기업소, 외국인) 유치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는 차치하고라도 경제특구 정책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구에 우선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지원해하나의 경제개발구라도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북한에는 중요하다.

2) 유사특구의 구조조정을 통한 선별적 개발

북한의 경제개발구 유형은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5개 유형 중에서 공업개발구가 14개이고, 농업개발구가 3개이며, 관광개발구가 6개, 수출가공구가 3개, 첨단기술개발구가 하나이다. 공업개발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14개의 개발구가 외자 유치를 위해 서로 과당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투자 유치 활동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는 다음 두 보고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Jeong and Zeng(2016); Jeong(2016).

북한 당국이 지정한 27개 경제개발구는 FDI를 유치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주변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비교할 때도 기업하기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위치하여 있다.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듯이 경제개발구는 FDI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며 그 목적을 달성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은 필요조건이다. 특히 북한 당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은 국제 교통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업을 촉진 할 수 있는 초기인프라 구축비용이 적게 들며,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지리 · 경제적 장점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76] 현재 지정된 경제개발구 중에서는 개성공업지구가 이에 해당하고 나선경제지구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구가 이러한 지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제개발구의 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지정해제를 함으로써 특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곳만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3) 중앙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별적인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특구 관리기구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 발전 방향과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전담하고 주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 유

76) 정형곤(2011), p. 407.

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행정업무에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계량 분석 등에서 입증되었듯이 외국인 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 등 모든 행정처리가 중앙정부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율권을 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자율권도 국가경제발전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제특구의 성과를 경제특구지역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의 효율적인 분업화와 경제특구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개별 경제특구개발계획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경제개발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 의사소통 체계의 부재는 중앙정부의 경제특구 정책 실행에 장애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체계도 필요하다. 중앙으로 통합된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경제특구 평가관리를 통해 경제특구가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지를 항시 확인하여 중앙관리체계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중앙정부에 경제특구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할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 무역, 과학기술, 혁신 등 관련 모든 영역을 통합 관리해야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제특구개발로 국가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제특구 관리체계를 개혁하여 중앙에서 보다 통합적인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경제특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4) 최고 통치자가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직접 관리

현재의 경제특구관리위원회를 최고통치자의 직속조직으로 이관해서 경제특구의 외자 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고통치자에게 바로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산하에 경제특구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는 경제특구관리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위원회의 결정과 전략을 집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이 실무기구는 성공적인 외자 유치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증진을 위해 탈규제화와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특구 프로젝트에 정해진 정부지원을 관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조정한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위원회에 의해 수립되면, 경제특구업무 실무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비즈니스모델, 투자 유치전략 등 세부적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립한 국가적인 개발전략을 실무기구가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실무기구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조직들을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최고통치자인 김정은 위원장 직속기구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특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략과 결정은 더욱 무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실무기구 역시 행정적 집행에 있어서 각 지역이나 부처의 관료적인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된 체제전환국들의 행정집행력과 안정성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진두지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북한의 FDI 제도에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석진. 2007.『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산업연구원.

_____. 2010.「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화폐개혁」.『KIET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김학기, 김계환. 2010.『중앙아시아 산업구조와 한-중앙아시아 산업협력 전략』. 산업연구원.

김흥종, 이철원. 2007.「중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3주년 평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른츠츠끄, 김세영. 2017.「체제전환국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을 중심으로」.『무역연구』, 제13권 제2호.

박광수, 이영기. 2009.「발트3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요인 분석」.『유럽연구』, 제27권 제1호, pp. 115~141.

박해선, 이철원, 이상직. 2009. "동유럽 국가와 유로존간의 경기 상호의존구조 분석."『동유럽발칸연구』, 23.

송장준. 2011.『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협. 2007.「폴란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에 대한 분석」.『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신성희, 권일숙, 설원식. 2015.「체제전환국들 FDI 유입 결정요인 연구」.『경영컨설팅연구』, 제15권 제2호.

양평섭, 나수엽, 박민숙, 이한나, 조고운, 오윤미. 2018.「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승환, 조정환. 2018.「체제전환국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비셰그라드(Visegrad) 국가를 중심으로」.『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1호.

이한희. 2012.「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 2015.『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2001.『체제전환의 경제학』. 박영사.

_____. 2011.『2010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베트남』. 한국개발연구원.

정형곤, 김병연, 이석, 조남훈, 이정균, 김범환. 2018.『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12.

정형곤, 김병연,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2014.『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01.

정형곤, 방호경, 이보람, 백종훈. 2017.『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4. “Market Intelligence.” *Executive Briefing*, Vol. 2014-23.

한국은행. 2018.「베트남 경제개혁 · 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국제경제리뷰』, 제2018-20호.

한상국. 2009.『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황기식, 박선화. 2009.「환경제국의 제도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중 · 동부유럽과 중국의 사례비교」.『유럽연구』, 제27권 제2호.

KOTRA. 2013.「신흥지역 투자진출 리스트와 기회 포럼」발표자료.

[중문자료]

隆国强. 2017.『构建开放性经济新体制』, 广东经济出版社.

[영문자료]

Athukorala, P. and T. Q. Tien. 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ustrial Transition: The Experience of Vietnam."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17, pp. 446-463.

Beck, T. and L, Laeven. 2005. "Institution Building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1(2), pp. 157-186.

Bevan, A., and S. Estrin. 2004.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 pp. 775-787.

Bevan, A., S. Estrin, and K. Meyer. 2004. "Foreign Investment Loc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 pp. 43-64.

Botrić, V. and L. Škuflić. 2006. "Main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Transition Studies Review*, 13(2), pp. 359-377.

Campos, N. F. and Y. Kinoshita.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Technology Transferred: Some Panel Evidence from the Transition Economies." *The Manchester School*, 70, pp. 398-419.

Cartensen, K. and F. Toubal. 2004.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 Dynamic Panel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 pp. 3-22.

Castiglione, C., Y. Gorbunova, D. Infante, and J. Smirnova. 2012. "FDI Determinants in an Idiosyncratic Country: A Reappraisal over the Russian Regions during Transition Year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5, pp. 1-10.

Cazzaillian, G. and K. Olszewski. 2012. "Interaction between Foreign Financial Servic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An Empirical Analysis with Focus on the Manufacturing Sector." *Research in Economics*, 66, pp. 305-319.

Demekas, D. G., B. Horváth, E. Ribakova, and W. Yi. 200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 The Role of Polic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5, pp. 369-386.

Falcetti, Elisabetta, Tatiana Lysenko, and Peter Sanfey. 2006. "Reforms and Growth in Transition: Re-examining the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4 (2006), pp. 421-445.

Friesenbichler, Klaus, Michael Böheim, and Daphne Laster. 2014. "Market Competition in Transition Economies." WIFO(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No. 477.

Head, Keith, Thierry Mayer, and John Ries. 2010. "The erosion of colonial trade linkages after indepen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1(1), pp. 1-14.

Hwang, K. S. 2008. "Institutional Reform and Locational Advantages of New EU Membe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3 (1), pp. 97-116.

Janicki, H. P. and P. V. Wunnava. 2004.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from EU Accession Candidates." *Applied Economics*, 36, pp. 505-509.

Lansbury, M., N. Pain, and K. Smidkova. 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Europe since 1990: and Econometric Study."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56, pp. 104-113.

Lee, Y. S. and H. G. Jeong. 2006.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of Transition Economies: Economic Reform versus Initial Condition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20, No. 2, pp. 241-252. (June)

Mitrović, R. D. and O. Ivančev. 2010. "Driving fo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second decade of transition." *Economic Analysis*, 55(185), pp. 7-32.

Nath, K. H. 2009.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Evidence from Transition Econom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1(1), pp. 20-50.

Oztuk, I. 2007. "Foreign Direct Investment-Growth Nexu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and Quantitative Studies*, 4, pp. 79-98.

Riedl, A. 2010. "Location Factors of FDI and the Growing Services Economy." *Economics of Transition*, 18(4), pp. 741-761.

Sajid Anwar and Lan Phi Nguyen. 2010.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Vietnam,"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Vol. 16, Nos. 1-2, January-April 2010, pp. 183-202.

Sattarov, K. 201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a case study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Shukurov, S. 2016. "Determinants of FDI in Transition Economies: The Case of CIS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Global Economic Studies*, 9(1), pp. 75-94.

Tian, X, S. Lin, and V. I. Lo. 200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ransition Economies: Evidence from China." *Post-Communist Economies*, 16, pp. 497-510.

Tinin, C. 2013.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6, pp. 287-298.

Vu, T. B.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ndogenous Growth in Vietnam.” *Applied Economics*, 40, pp. 1165-1173.

Zhang, K. H. 2001.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Affect Economic Growth in China?.” *Economics of Transition*, 9(3), pp. 679-693.

[온라인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4호. 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xmlmain4/DE8DE0F25B45E575492580C4005B8FC2/$file/33_%EB%9F%AC%EC%8B%9C%EC%95%84%EC%A4%91%EC%95%99%EC%95%84%EC%8B%9C%EC%95%84.pdf(검색일: 2019. 11. 17).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2015.「EU의 헝가리-러시아 원전 건설 합의 저지 관련 보도」. (3월 13일). http://overseas.mofa.go.kr/hu-ko/brd/m_9731/view.do?seq=116220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6(검색일: 2019. 11. 17).

ASEAN. https://asean.org/(검색일: 2019. 11. 17).

EBRD. 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s.” http://www.ebrd.com/downloads/research/economics/macrodata/sci.xls(검색일: 2019. 4. 20).

European Commission. “EU-Vietnam Trade Agreement,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https://ec.europa.eu/trade/policy/in-focus/eu-vietnam-agreement/(검색일: 2019. 8. 10).

European Union. “Countries.”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검색일: 2019. 11. 17).

Globerman, S, D. Shapiro, and Y. Tang. 2004. “*Govern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merging and Transition European Countries*.”

http://www.cbe.wwu.edu/cib/1recentgloberman/tang. pdf(검색일: 2019. 10. 8).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s://www.heritage.org(검색일: 2019. 11. 17).

_____.「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2017」. Heritage.org/index(검색일: 2019. 9. 19).

_____. 2019.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s://www.heritage.org/index/pdf/2019/book/methodology.pdf(검색일: 2019. 4. 20).

IHS Markit. 2019.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Updated: 15 September 2019). http://connect.ihs.com/insight/economics(검색일: 2019. 11. 28).

IMF. 2000.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Revised in 2009). https://www.imf.org/external/np/exr/ib/2000/110300.htm#VIII(검색일: 2019. 5. 1).

Kazakh Invest. https://invest.gov.kz/(검색일: 2019. 10. 2).

NATO. “NATO Member Countries.” https://www.nato.int/cps/en/natohq/nato_countries.htm(검색일: 2019. 11. 17).

OECD. 2001. “INVESTMENT POLICY REVIEW: UKRAINE.” http://oecd-library.org(검색일: 2019. 11. 17).

_____. 2018. “INVESTMENT POLICY REVIEW: Vietnam.” http://oecd-library.org(검색일: 2019. 11. 17).

_____. “FDI flows.” https://data.oecd.org/fdi/fdi-flows.htm(검색일: 2019. 4. 20).

UNCTAD. 2019a.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https://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2460(검색일: 2019. 11. 17).

Visegrad Group. “About the Visegrad Group.” http://www.visegradgroup.eu/about(검색일: 2019. 7. 18).

World Bank. 2002. "Transition: 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319481468770972868/Transition-The-first-ten-years-analysis-and-lessons-for-Eastern-Europe-and-the-former-Soviet-Union(검색일: 2019. 5. 1).

_____. 2016.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ulations, Methodology." 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org/methodology(검색일: 2019. 11. 28).

WTO. https://www.wto.org(검색일: 2019. 11. 17).

[데이터 베이스]

CEIC. 에스토니아 GDP 통계(검색일: 2019. 11. 17).

_____. 베트남 FDI 통계(검색일: 2019. 11. 17).

_____. 세르비아 GDP 통계(검색일: 2019. 11. 17).

_____. 마케도니아 GDP 통계(검색일: 2019. 11. 1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2019(검색일: 2019. 11. 5).

_____. 2019b. World Investment Report: Annex Tables, Annex table 1. FDI inflows, by region and economy, 1990-2018. https://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Annex-Tables.aspxs(검색일: 2019. 8. 16).

_____. FDI/MNE database. www.unctad.org/fdistatistics(검색일: 2019. 8. 16).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6-2019(검색일: 2019. 11 .5).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9. 11. 13).

_____.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13. http://www.doingbusiness.org(검색일: 2019. 11. 3).

[관련자료 목록]

정형곤. 2011.『한 · EU FTA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지식경제부 연구용역을 참고.

_____. 2014.『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2011.『북한의 투자 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21.

EBRD. https://www.ebrd.com/home(검색일: 2019. 11. 17).

Globerman, S, D. Shapiro, and Y. Tang. 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merging and transition european countries."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016/S1569-3767(05)06017-6/full/html(검색일: 2019. 9. 8).

Jeong, Hyung-gon. 2016. "Special Economic Zones: What Can Developing Countries Learn from the Korean Experience?" *2016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KDI.

Jeong, Hyung-gon and Douglas Zeng. 2016. "Promoting Dynamic and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Policy Analysis* 16-01. KIEP.

부록

부록

부록 표 A1. 체제전환국들의 WTO, EU, ASEAN 참여 연도

국가	WTO	EU	ASEAN
알바니아	2000		
아르메니아	2003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1996	2007	
크로아티아	2001	2013	
체코	1995	2004	
에스토니아	2000	2004	
조지아	2000		
헝가리	1995	2004	
라트비아	1999	2004	
리투아니아	2001	2004	
몰도바	2001		
폴란드	1995	2004	
루마니아	1995	2007	
러시아	2012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1995	2004	
슬로베니아	1995	2004	
우크라이나	2008		
몬테네그로	2012		
마케도니아	2003		
카자흐스탄	2016		
키르기스스탄	1999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2013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2013		1997
베트남	2007		1995
캄보디아	2005		1999
중국	2002		
몽골	1997		

자료: WTO; EU; ASEAN 홈페이지(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부록 표 A2. 제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표

	$pricelib$	$competition$	$trade$	$dcreditpriv$	$mobile$
$pricelib$	1.000				
$competition$	0.380	1.000			
$trade$	0.086	0.415	1.000		
$dcreditpriv$	0.002	0.421	0.305	1.000	
$mobile$	0.096	0.463	0.333	0.697	1.000
$inflation$	-0.144	-0.107	-0.011	-0.210	-0.223
$manufacturing$	0.116	0.284	0.030	-0.092	-0.030
tax_burden	0.143	-0.044	0.115	0.172	0.516
$financial_freedom$	0.094	0.411	0.190	0.357	0.312

	$inflation$	$manufacturing$	tax_burden	$financial_freedom$
$inflation$	1.000			
$manufacturing$	0.116	1.000		
tax_burden	-0.303	-0.309	1.000	
$financial_freedom$	-0.120	-0.050	-0.017	1.000

자료: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1. 13); Heritage Foundation; Head, Mayer, and Ries(2010).

부록 표 A3. 변수목록

	설명	출처
$\ln(GDP)$	로그변환 GDP	Worldbank
$dist_{ij}$	i국과 j국 수도간의 물리적 거리	CEPIL data
$pricelib$	가격 자유화 수준: 1(낮음)~5(높음)	EBRD
$competition$	경쟁정책수준: 1(낮음)~5(높음)	EBRD
$trade$	GDP 대비 무역량(%)	Worldbank
$dcreditpriv$	GDP 대비 민간신용의 규모(%)	Worldbank
$manufacturing$	GDP 중 제조업의 비중 (%)	Worldbank
$mobile$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보급률	Worldbank
$inflation$	인플레이션	Worldbank
tax_burden	과세부담 지표	Heritage 재단
$financial_freedom$	금융자유도 지표	Heritage 재단
$centralasia$	중앙아시아=1	저자 작성
WTO	해당연도 WTO 회원=1	저자 작성
EU	해당연도 EU 회원=1	저자 작성
$EUboarder$	해당연도 EU 접경=1	저자 작성
$ASEAN$	해동연도 ASEAN 회원=1	
$ocean$	해안국=1	저자 작성
$comrelig$	공통 종교=1	CEPIL data

자료: EBRD(2019), "Structural Change Indica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1. 13); Heritage Foundation; Head, Mayer, and Ries(2010).

Executive Summary

Determinants of FDI in Transition Economie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yung-Gon Jeong, Cheolwon Lee, Minsuk Park, and Bong Geul Chun

This study discusses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and tasks ahead of its government to revitalize the economy, based on the premise that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proceed smoothly. First of all, in order to derive policy task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chievements and policies of transition countries in Asia and Eastern Europe to attract FDI, also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FDI inflows, after which we present policy tasks for North Korean authorities. As South Korea may very well become the largest investor in North Korea, our study also discusses task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ursue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to successfully invest in North Korea.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Doing Business project at the World Bank,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each transition economy and compares their investment environment, institutions, and correlations with FDI inflows. During our quantit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DI inflows in transition economies, we came upon many cases where statistics were unstable

or difficult to secure, so this study limits target group to 24 countries. For FDI inflow data, we used OECD statistics and conducted our analysis through system GMM estimation, a method in wide use recently. In addition to the determinants of FDI inflows for all transition economies, we also performed a separate analysis of the Visegrad Group (the "V4") and the Baltic stat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successful in attracting FDI, classified into one group.

In addition, we analyzed the income categories by classifying them as transition economies with per capita GDP less than US$ 2,000 and those above. In the case of transition economies, we postulated that accession to the WTO or EU would have a great effect on FDI inflows for these nations. Based on this premise, we measured FDI inflows by using dummy variables based on when the nation joined the WTO or EU. In the case of the V4 and the Baltic states, the initial conditions were the externally determined independent variables. The most important success factors for investment in the early stages of the transition were the pace of reform and level of openness. This is becaus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inducement policy depends on how wide open the economy has been rendered and reformed rapidly to be incorporated into the world economy.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wa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the inflow of FDI. The Baltic states, Macedonia and Georgia all have limited domestic markets, which has led to these countries attracting investment by carrying out drastic improvements in their business environments, thus positioning themselves as a base for advancing into adjacent and larger markets.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the trade sector were prioritized. In other words, efforts were made to attract investment in sales bases in neighboring large markets to the country by radically improving procedures and reducing the time and costs required in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 I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country's business conditions,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the transition countries adjacent to the EU generally receive better evaluations in the trade sector than any other assessment factor.

There are many instances of transition economies not included among the top 20 nations on the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announced by the World Bank benefiting from a larger market or abundant resources in adjacent regions. This includes Poland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Russia and Ukraine in the CIS adjacent to the EU, Kazakhstan in Central Asia, and China in East Asia. Of course, reform and opening and improvement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were made, but the size of the market and the abundance of abundant resourc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DI inflow compared to neighboring competitors. Kazakhstan has actively attracted FDI through improving its business environment, developing its own resources and utilizing this as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Even in Russia, which is not a rapidly transitioning nation, the rich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abundant resources attracted large amounts of FDI. China, now a "G2" economy, also attracted a huge amount of FDI despite carrying out reform in a gradual manner and opening its market only partially.

In additi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Western world, such as the US and the EU, is one of the major success factors for transition

countries to attract investment. There are many cases in the leading group of transition economies where joining the EU served as a decisive factor to increase FDI inflow, whil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EU added a similar impetus for the late stage group. Serbia, once a leading figure in the former Yugoslavia federation, continued to clash with the UN due to the Baltic Wars and its own civil wars, but is recently seeing a dramatic improvement in its FDI inflow following efforts to join the EU and improve relations with the West. Vietnam's approval of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with the US in December 2006 served as a new opportunity to increase its inflow of FDI.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DI inflows by transition countries, and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vestment and reform in the transition countries, 11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for North Korea, as follows: ① efforts to secure support in advance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② efforts to normalize trade relations with the US ③ efforts to expand market size and location ④ maximum leveraging of geographical proximity with other countries ⑤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through competition-promoting policies ⑥ expansion of trade openness ⑦ expansion of the private sector ⑧ efforts to fost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⑨ stabl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nd macroeconomic stability ⑩ incorpo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through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membership in the WTO, and ⑪ efforts to improve elements evaluated on the Doing Business index will be necessary.

Finally, we sugges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onsider

the following policy tasks: ① ease US export control regulations (EAR)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North Korea ② resolve rules of origin issues to secure export markets for Korean companies, and ③ transfer experiences of SEZs to attract FDI into North Korea.

정형곤(鄭衡坤)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g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공저, 2018)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공저, 2018) 외

이철원(李哲元)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現, E-mail: c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공저, 2018)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공저, 2018) 외

박민숙(朴敏淑)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現, E-mail: ms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공저, 2018) 외

전봉걸(全奉杰)

Michigan 주립대학교 박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bgchun@uos.ac.kr)

저서 및 논문

"Firm-level Inventory Dynamics in Korea: A Production-Augmented (S, s) Inventory Model"(*Asian Economic Journal*, 32(4))(공저, 2018)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경제적 가치 추정』(공저, 2018)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9년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 · 김원기

19-02 남 · 북 · 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이현태 · 최유정 · 최재희 · 김태만 · 림금숙 · 백지운 · 서봉교 · 안국산 · 원동욱 · 이왕휘 · 이현우 · 이현주 · 최필수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 · 윤성욱 · 박지원 · 정은이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권율 · 정지선 · 허윤선 · 송지혜 · 유애라 · 김미림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정민지 · 황규희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김은미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이규엽 · 강준구 · 박지현 · 박현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장호 · 최유정 · 김범환 · 임수호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 · 정영식 · 김경훈 · 강은정

19-11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 ·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 · 강구상 · 권혁주 · 문성만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박정호 · 정민현 · 강부균 · 정동연 · 김초롱 · 제성훈 · 세르게이 루코닌 · 예카테리나 자클랴즈민스카야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 · 윤여준 · 권혁주 · 정민철 · 김유리 · 황운중 · 김경훈 · 김원기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정영식 · 김정곤 · 한형민 · 정재완 · 이정미 · 김제국 · 윤지현

19-15-1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
김규판 · 강구상 · 김종혁 · 오태현 · 이현진 · 손원주

19-15-2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 김현수 · 강민지 · 이정은 · 이용규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구경현 · 오수현 · 박혜리 · 김민성 · 황운중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조문희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엄준현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이상훈 · 김홍원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정형곤 · 이철원 · 박민숙 · 전봉걸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현상백 · 이효진 · 조고운 · 오윤미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윤덕룡 · 이동은 · 이진희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안성배 · 한민수 · 김수빈 · 이진희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한민수 · 김혁황 · 최혜린 · 박단비 · 김지수

■ 2018년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남시훈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윤종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곽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종혁 · 김홍종 · 문성만 · 윤여준 · 임유진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 · 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범환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 · 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18-19 한 · 중 · 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 전자상거래 ·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태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꽃비 · 김지수 · 장희수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제국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윤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es 19-19

Determinants of FDI in Transition Economie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yung-Gon Jeong, Cheolwon Lee, Minsuk Park, and Bong Geul Chun

이 연구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94320
9 788932 217529

ISBN 978-89-322-1752-9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